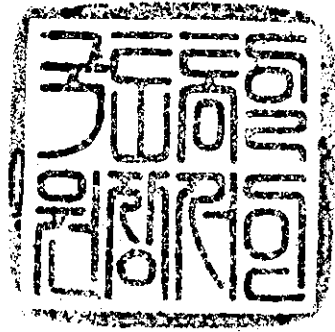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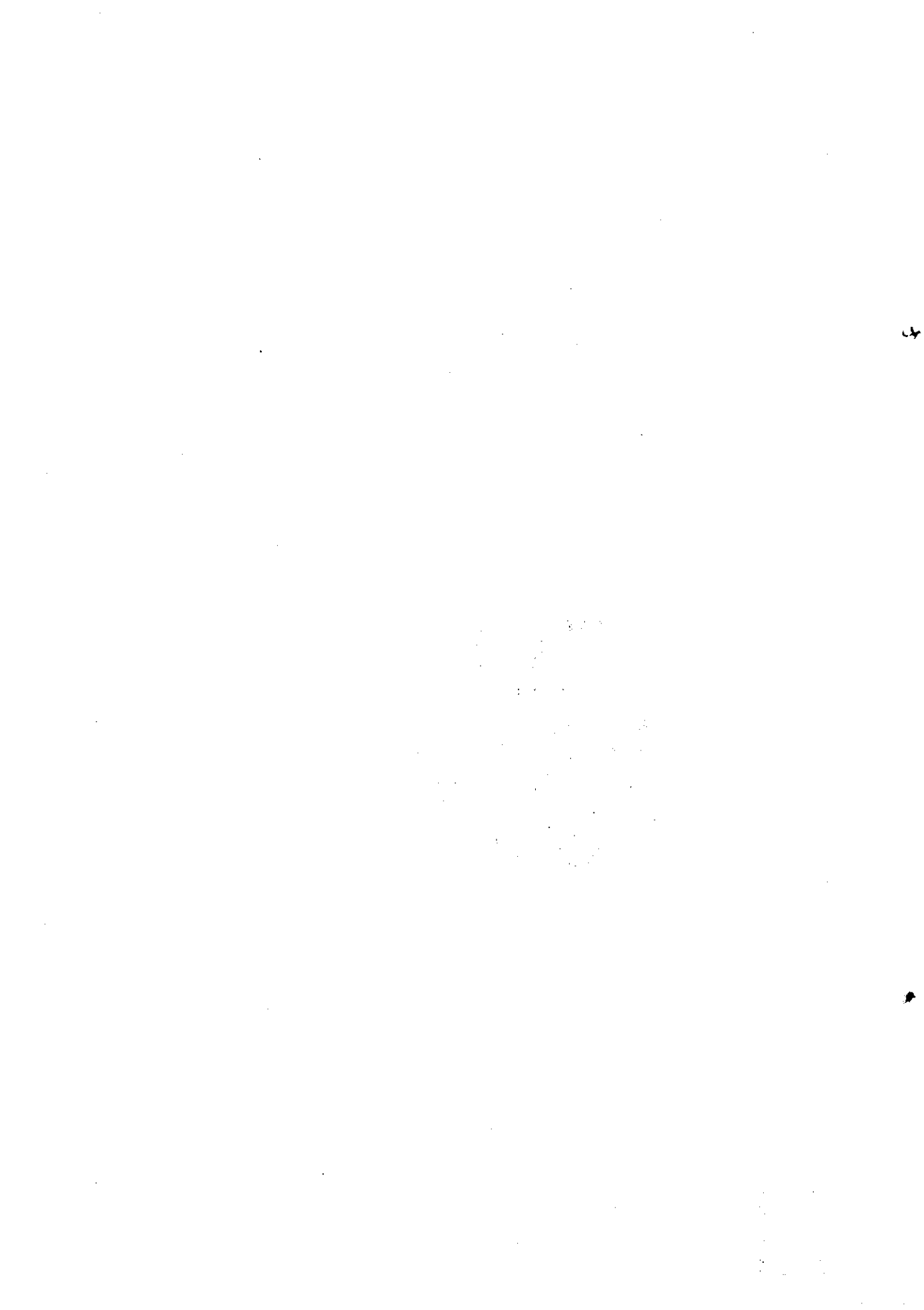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 發表記念세미나 및
第 4 回 統一問題 綜合심포지움 結果報告書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理念과 實踐

1990



國 土 統 一 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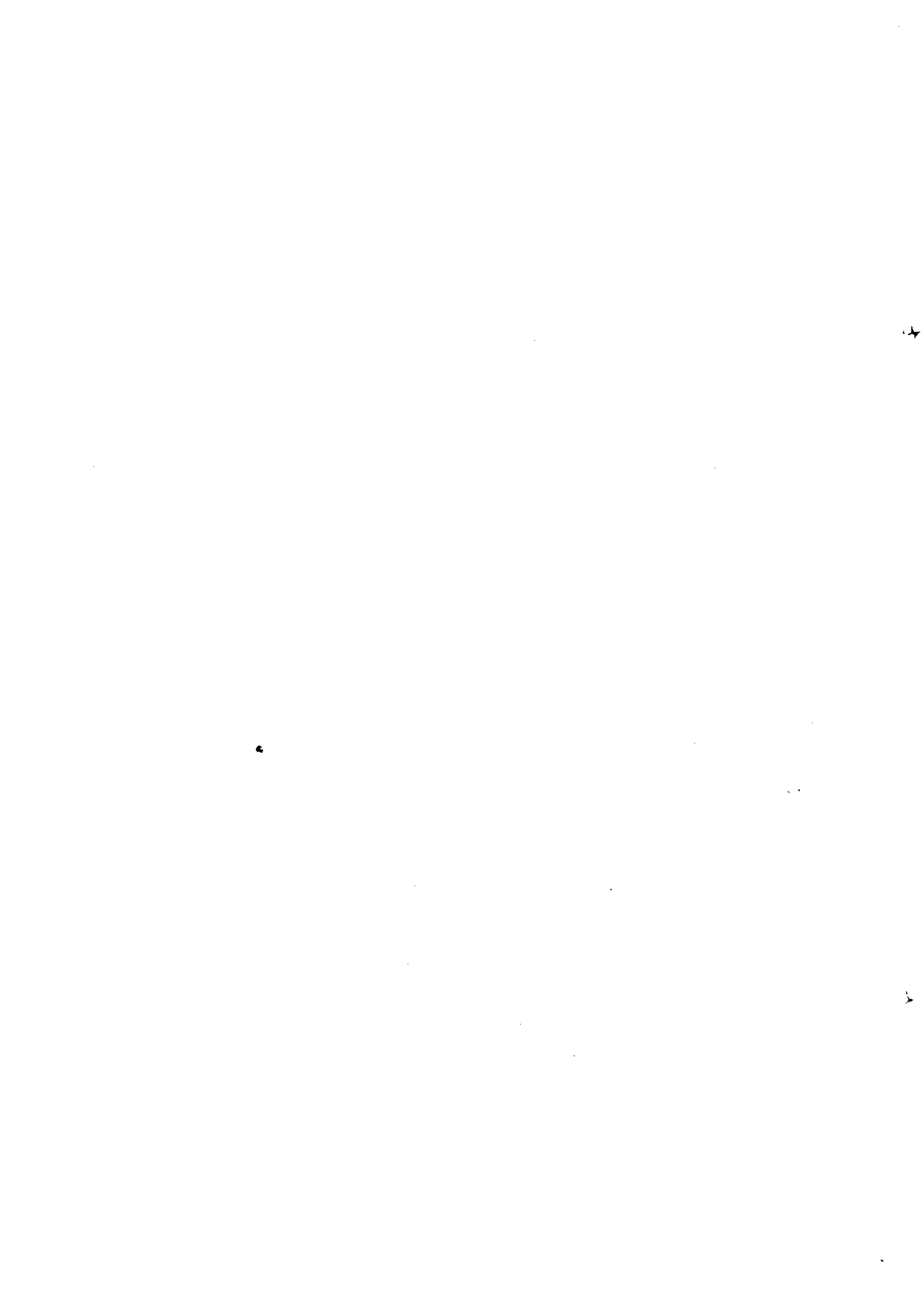
이 論文集은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理論
的 體系化 및 政策的 課題의 導出을 위하여 當
院 統一政策室이 主管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
案 發表記念세미나」('89.12.1)와 「第4回 統一問
題 綜合심포지움」('89.12.2)에서 發表된 論文과
討論內容을 整理한 것입니다.

이 冊子가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理解하
고 研究하는데 一助가 될 것으로 期待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論文의 內容과 討論者
들의 主張이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은 아
님을 밝혀드립니다.

1990. 1.

統 一 政 策 室



目 次

I.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 發表記念세미나	1
1.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理念的 側面	全寅永 ···· 3
2.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政策的 側面	金甲喆 ···· 31
3. 統一論議와 國民的 合意基盤의 擴充	徐鎮英 ···· 61
附錄：討論內容	79
II. 第4回 統一問題 綜合심포지움	135
1. 南北韓 平和定着과 信賴造成을 위한 當面課題 ···	吳寬治 ···· 137
2. 南北聯合의 制度的·實踐的 課題	金明基 ···· 155
3. 統一憲法草案에 관한 試論	張明奉 ···· 183
附錄：討論內容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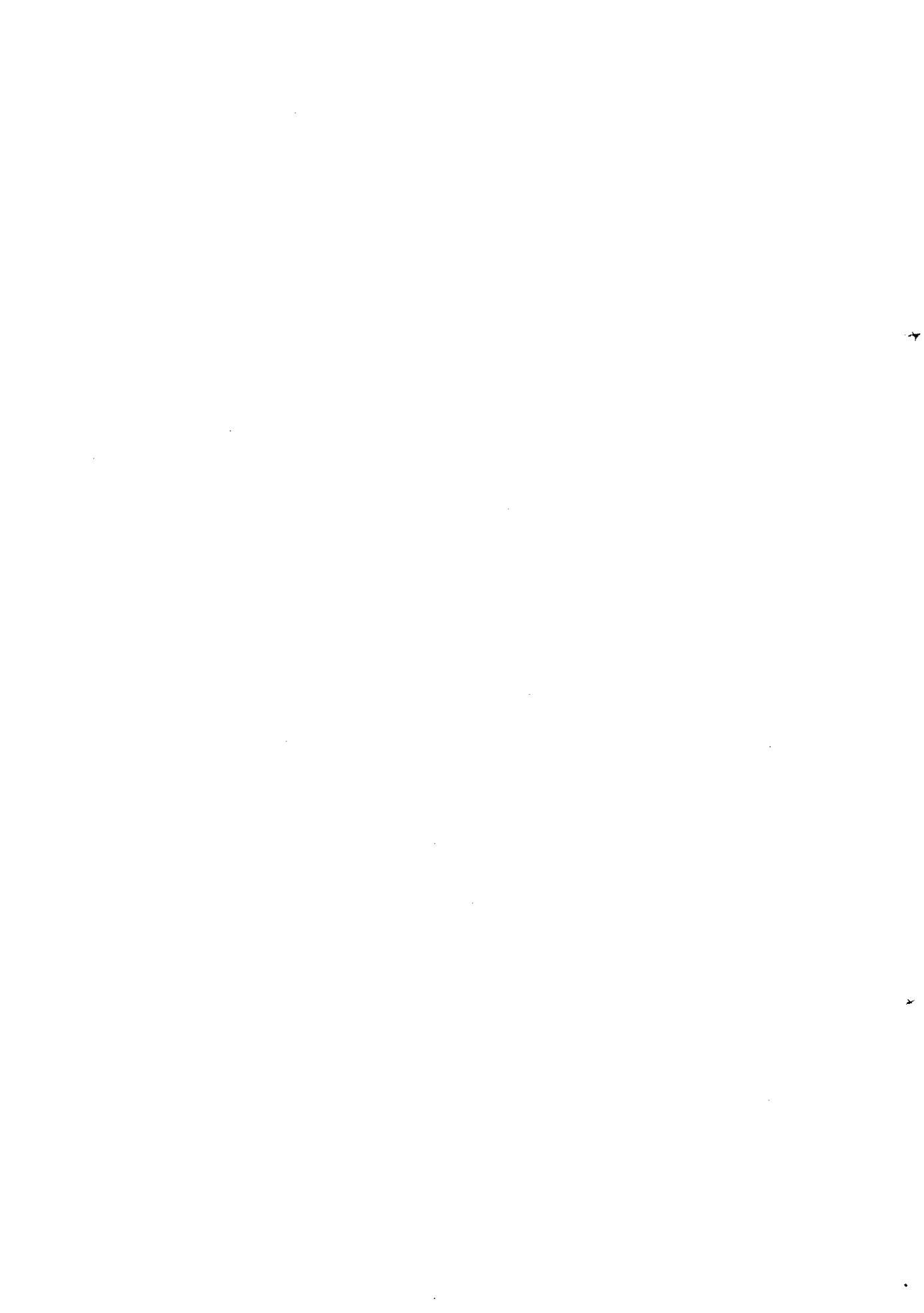


I.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 發表記念세미나

—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理念과 實踐 —

〈發 表 論 文〉

1.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理念的 側面
全寅永 (서울大 教授)
2.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政策的 側面
金甲喆 (建國大 教授)
3. 統一論議와 國民的 合意基盤의 擴充
徐鎮英 (高麗大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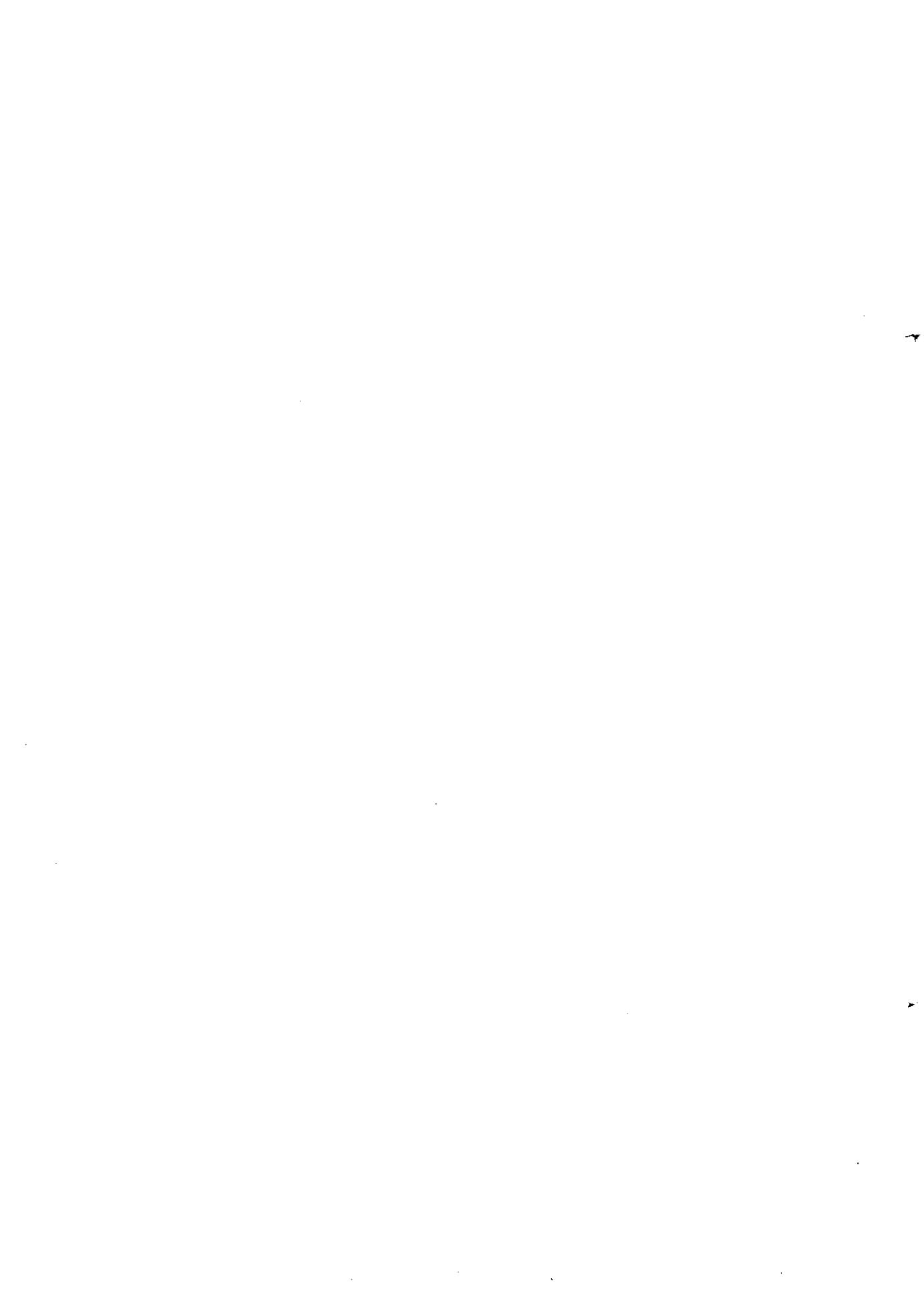
1.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理念的 側面

— 南北韓의 視角 및 認知比較 —

全寅永 (서울大 教授)

目 次

I. 序 論	5
II. 自主와 民族主義	9
III. 平和理念과 正義戰爭	12
IV. 民主理念과 人權政策	14
V. 南北聯合과 聯邦制	21
VI. 結 論	26



I. 序 論

韓半島가 外勢에 의하여 分斷된지 벌써 44년이 넘었지만, 뚜렷한 統一의 展望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統一은 커녕, 南北韓이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하며, 서로 不信하고 敵對視하는 不幸한 관계가 持續되고 있다. 최근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힘입어, 東獨에서 발생한 정치변혁과 충격적인 베를린장벽의 붕괴는 우리들을 한없이 부럽고 부끄럽게 만든다.

물론, 東·西獨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처지와는 크게 다르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겪지도 않았고, 서로를 安保에 對한 위협세력으로 認知하지도 않으며, 현실감과 미래상을 지닌 브란트首相의 東方政策 추진에 힘입어 지난 20년동안 꾸준히 人的 物的 交流 및 協力을 진행시켜 왔다. 1988년도의 人的 交流만 보아도, 우리의 狀況과 完全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작년에 西獨에서 東獨 및 東베를린을 방문한 여행자 수는 522만명이 넘었고, 이들중 227만명은 동베를린을 당일로 다녀온 사람들이었다. 동독인 여행자 수도, 西베를린을 당일로 방문한 연금수혜자들을 제외하고, 230만명에 이르렀다.¹⁾ 지난 11월 9일 과감한 동독의 여행자유화 조치로 인해, 동독인들의 서독방문 기회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성급한 독일통일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몇백명 밖에 안되는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는 남북한의 모습이 비교적으로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인다.

南北韓도 동·독이 기본조약을 체결했던 1972년에 7·4共同聲明이 發表되는 환희와 충격을 경험했건만, 독일과 달리 남북한은 그동안 제자리를 맴돌았었다. 물론, 그동안 한국의 '6·23선언'과 북한의 '5대강령'이 1973년에 발표되

었고, 1980년 10월 10일에는 북측의 구체적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한국도 1982년 1월 22일 처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을 發表하였다. 또한, 1984년 9월 북한의 우리 수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제공 제의를 한국측이 수락함으로써, 1985년에는 3차의 적십자 회담과 151명으로 구성되는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환방문등이 실현되는 기쁨을 맛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문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86년 1월에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대화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대화가 중단되었던 지난 4년간 국제정세가 크게 변했으며, 한국내의 사정도 크게 달라졌다. 특히, 소련 및 동구국가들의 개혁정치는 알타체제의 동요, 미·소관계의 개선, 중·소관계의 정상화,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의 서울올림픽참가, 한국의 헝가리 및 폴란드와의 수교, 천안문 사태 이후의 中·北韓關係의 긴밀화 등과 같은 수많은 변화들을 초래했다. 국제환경의 이같은 變化는 남북한에 대한 機會의 제공과 동시에 挑戰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大統領이 특별선언 형식으로 발표한 남북한관계 개선 및 北方外交에 관한 구상은, 주변정세 및 한반도내의 변화를 감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대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발표되었다는 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었다.

盧大統領은 ‘7·7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民族共同體라는 의식을 등진채 서로를 對決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왔음을 지적한 후, “민족자존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민족구성원 전체가 ‘공동체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관계를 지양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민족공동체가 지향하여야 할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 복지의 4개원칙을 제시하였다.²⁾ ‘7·7선언’은

국내외적으로 좋은 반향과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으나, 북한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분열주의 방안에 지나지 않으며,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 해소와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남북연석회의’의 조속한 소집을 요구했다. ‘7·7선언’에 나타난 인적교류와 交易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도 아니고,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며, 정치·군사문제해결을 회피하는 분열주의적 입장”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북한은 민족공동체를 실현하려면 올림픽을 공동으로 주최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³⁾

올림픽직후인 1988년 10월 18일, 노태우大統領은 유엔총회연설을 통해서, ‘7·7선언’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을 하자고 제의했으며,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 및 번영을 위한 바탕의 구축을 위해, 4강 및 남북한으로 구성되는 ‘동북아평화협의회의’를 열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의 반응은 역시 부정적인 것이었다.

1989년 9월 11일 한국은 ‘7·7선언’ 및 10월의 ‘유엔총회연설’에 반영된 민족공동체의 맥락에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이 통일안은 원칙적으로 ‘自主’와 ‘平和’ 및 ‘民主’를 강조했으며,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1)연방제단계가 새로운 통일안에 포함되어 있는 점, (2)정치·군사문제의 협의 및 해결에 유연성을 보인 점, (3)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 및 상원의 구성을 균등한 권력배분의 원칙에 맞도록 한 점, (4)3대원칙 중에 민주가 강조된 점 등이다.⁴⁾

본 논문의 목적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념(또는 원칙)적인 측면들을 검토·분석하는 데 있다.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기본이념들 외에도, 민족주의와 연방주의가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기본이념들은 7·4공동성명에서 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지만, 현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이 남북한 공동의 최대 관심사이고 이질적 체제간의 문제인 만큼, 기본이념을 검토함에 있어, 남북한의 視角과 認知를 比較하면서 검토·분석하는 것이 이해를 돕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남북한이 크게 강조하는 自主理念 또는 自主原則을 살펴보고, 自主와 민족주의와의 관계도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

II. 自主와 民族主義

국제사회에서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가운데, 국가들의 관계는 갈등을 빚게도 되고 협력을 통해 우호적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특히,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때, 현실정치의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약소국의 입장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自主라는 개념은 자국의 정책결정이나 대외활동을 지나친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체의 의사 및 판단에 따라 스스로 決定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意味한다. 강대국들도 주변환경의 복잡성과 제약때문에 마음대로 政策을 決定하고 行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나친 외부의 영향력이나 간섭을 배제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약소국들은 자국입장을 고수하기가 힘들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강대국의 강요나 간섭을 배제하면서 우리 민족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권존중, 내정불간섭, 영토보존, 평등 및 호혜관계, 평화공존 등을 主張하는 약소국들의 입장은 바로 자주성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1945년 6월 28일의 중국과 인도간의 공동성명에 나타난 평화 5원칙(Panch Sheel)과, 1955년 4월 18~24일의 반둥會議에서 表明된 반둥會議精神, 그리고 1961년 카이로의 비동맹 예비회담에서 뚜렷해진 非同盟運動의 性格을 보면, ‘自主’⁵⁾理念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제3세계국가들이 重視하는 자주이념은 남북한의 통일방안에서도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自主的 立場이란 한반도통일문제는 이해당사자인 남북한의 合意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民族自決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이 우방국과의 선의의 협력관계를 단절하거나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폐쇄는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세계 모든 나라가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고 공산권마저 개방화를 추구하는 마당에 폐쇄적 자세는 가능하지도 않으며 참다운 자주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⁶⁾ 한국은 통일문제해결에 있어서, 자주적 결정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의존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자주통일에 대한 인식은 한국입장과 다르다. 북한은 평등한 모든 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며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신성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자기의 대내외 정책을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권리를 지니며, 이 자주권은 정치적 자주성의 구현이며 민족자결권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자주권이 국내에서는 최고의 권력으로 나타나며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주성 및 자결권과 관련하여, 북한은 미군을 축출하여 외세의 간섭을 저지 파탄시키고, 한국의 외세의 존정책 및 외세를 끌어들이는 세력을 배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⁷⁾ 북한은 이렇듯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한미군 문제를 자주성 및 통일문제와 직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

북한의 입장은 민족주의와 민족문제에 관한 시각을 검토해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북한은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며 완전한 정치적 自決을 실현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민족이 최대한 자유로운 발전을 이룩하며 민족적 온갖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제를 민족문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

란 계급이익을 전민족적 이익으로 가장하는 브르쥬아적 성격을 띠고, 민족내부의 계급적 대립을 감추고 노동계급의 독자적 이익을 위한 투쟁을 방해하며 나아가 침략전쟁과 식민주의정책을 합理化하는데 봉사한다고 '계급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브르쥬아 민족주의'는 '프롤레타리아國際主義'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대적되는 반동적 사상이라는 것이다.⁸⁾ 이러한 계급관이 반미투쟁을 강조하고 한국지도층을 반민족적이라고 규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이 '자주'를 표방하면서도 주한미군문제를 포함한 대외의존 및 협력을 증대할 때, 이를 반민족적으로 규정하는 북한의 입장과 충돌하게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쉬운 문제가 아니다.

Ⅲ. 平和理念과 正義戰爭

남북한은 自主的이고도 '平和的'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한국은 1960년 자유당정권의 붕괴와 함께 실현성이 희박한 '북진통일론'을 포기했으며, 북한도 6·25남침이 실패로 돌아간 후 전후복구에 전력을 쏟았으며 1960년에 연방제를 제의하기에 이르렀었다. 1972년 7·4공동성명은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公約한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평화이념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보다 앞서 나온 1988년 10월 19일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에서도 우리가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평화가 더욱 확실해 질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의 평화적 입장은 아무리 統一이 지상과제라 하더라도, 무력사용을 수단으로 하는 목적달성은 생각해서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강한 불신과 적대감이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저해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또 다른 무력대결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도 일관성 있게 平和的 方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평화적 방법이란 '전쟁이 없는 協商의 方法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평화적 해결원칙이 자주성 및 민주주의원칙과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주장한다. 즉,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이 공담이 되며, 민주주의 원칙이 유린되는 조건에서는 평화적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자유의사에 의한 총선거가 있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 한 평화통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對南觀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은 ‘反帝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통일의 기본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전민족투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북한의 평화적 통일방침에는 “미제와 앞잡이들이 전쟁을 강요하였을 때, 나라의 통일독점과 진보를 위하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正義의 혁명전쟁을 수행할 데 관한 혁명적 입장이 관통되어 있다”는 正義戰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⁹⁾ 이렇듯, 북한의 平和的 統一에서는 민족해방을 위한 正義로운 戰爭까지를 否認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正義戰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學者들은,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서의 침략은 생각할 수 없더라도, 효과적인 국제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나 장치가 없을 경우 도덕적 권리마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방어전 및 침략의 희생자에 대한 원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正義戰을 옹호하는 이론가들은 전쟁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서는 안되며, 승리를 위해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사용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인한다.¹⁰⁾ 만일, 김일성이 1975년 4월 18일 鄧小平이 베푼 연회석상에서 밝혔듯이,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는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¹¹⁾ 남북한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고 계속 긴장될 것이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내정간섭이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正義戰爭에서 말하는 ‘방어전’에 임해야 하며, 따라서 한국이 선언한 ‘무력불사용’은 빛을 잃게 되고 만다. 이렇듯, 남북한의 平和的 統一은 양측의 視角 및 認知의 엄연한 差異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IV. 民主理念과 人權政策

民主와 平和뿐만 아니라, 民主理念에서도 南北韓은 顯격한 差異點을 露呈시킨다. 서로 自國은 民主的인데 相對方은 非民主的이라고 '2중준거'에 의하여 인지하고 평가하는 것이다.¹²⁾ 南北韓關係는 '거울 이미지(Mirror Image)'와 '敵이미지' 이론을 적용해서 살펴 볼 때, 理解가 잘 되는 면이 있다. 불딩(Kenneth E. Boulding)교수는 일국이 타국에 대해 응수할 때, 사실은 객관적인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이미지'에 대해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¹³⁾ 이러한 경향은 '敵이미지'를 지니고 있을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적에게 유리한 정보를 왜곡시키거나 거부함으로써, 부정적인 '敵이미지'는 지속되고 강화된다.¹⁴⁾

남북한은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경향이 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나 관점은 잘못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거나 이해하는 일이 생기기 쉽다.¹⁵⁾ 民主의 이념과 인권에 관한 문제는 남북한의 대조적 시각 및 認知를 충분히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民主主義를 重視하지만, 어느쪽도 납득할 만한 개념정립의 바탕위에서 이야기 하지 않는다. 양측이 민주의 개념을 규범적인 입장에서 지향해야 할 좋은 가치나 질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점은 같지만, 상대방 사회가 민주적인가 하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사실상, 민주주의에 관하여 자신 있게 정의를 내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의가 다양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은 내스(Arne Nasse)등이 플라톤의 시대로부터 1950년대까지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¹⁶⁾ 311가지나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에

관하여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들에 대하여 ‘민주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사르토리(Giovanni Sartori)는 民主主義의 개념이 산만하고 여러 면모를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가 민주주의가 文明 또는 西歐文明의 產物로 동일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⁷⁾ 민주주의를 규정하기가 힘든 것은 남북한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쌍방이 ‘민주적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민주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 든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할 경우, 대개는 ‘다수에 의한 統治’, ‘法 앞에서의 平等’, ‘主權在民’, ‘平等한 權利’, ‘個人的 존엄성’, ‘소수의 권리 보호’, ‘인도주의’, ‘인간능력의 자유로운 개발’등을 생각하게 된다.¹⁸⁾ 민주주의 개념이 애매하지만, 압축 한다면 ‘개인의 自由 및 존엄성 존중’, ‘多數에 의한 統治’, ‘소수의 권리 존중’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통치이고, 귀족통치와 과두체제는 소수에 의한 지배이며, 군주제나 독재체제는 1인에 의한 통치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낫다는 것이 西方世界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통치는 언제나 소수에 의해서 행해진다. 국민들 多數는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독재자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기가 힘들어 보좌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¹⁹⁾ 이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제가 유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정책결정자는 언제나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西歐式 自由民主主義는 개인의 자유, 정부의 억압 및 횡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통치자 선출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들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중시한다. 공산주

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보다 자기네가 자유와 평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정치·경제적인 ‘平等이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自由民主主義의 관점에서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우 政治 및 市民들의 자유가 결여되었다고 비판하지만, 반대로 공산주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평등없는 정치적 자유란 무의미하다고 믿는다.²⁰⁾ 자기의 人生 및 정부에 대해서 어느쪽 국민들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양체제를 비교해 봄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민주주의 사회도 공산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사회는 아니다. 主權在民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항상 多數가 원하는 方向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라 하더라도, 무력이나 폭력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소수의 권리(Minority Rights)까지 보호하는 정부는 없다.²¹⁾ 단, 선진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훨씬 체제나 정권비판에 대하여 인내심과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산주의국가들도 다수의 지지를 과시하고 일부 국가들은 反體制政策을 어느정도 용인하지만, 선거시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多數의 支配’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며, 反政府勢力에 대한 통제 및 감시활동이 엄격하다.

이번에 한국정부가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비교할 때, 북한은 ‘민족대단결’을 원칙으로 강조한 반면에, 한국은 ‘민주’를 강조한 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안은 통일실현 과정에서 민족성원 전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나 방법’을 중시하며, 통일된 후에도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가 되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도 민족대단결을 역시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하지만,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한 민족으로서의 전체적인 단결을 강조하며,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족대단결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다.²²⁾

북한도 통일이 民主主義的 기초위에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한은 민주주의 기초위에서의 통일실현이란 “북과 남의 광범위한 각계 각종 인민들을 통일위업 실현을 위한 애국사업에 참가시켜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意思와 要求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민주주의적 원칙이란 전국적 판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여 온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점도 강조한다. 또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선거는 一般的, 平等的, 直接的 원칙에 의한 비밀투표여야 한다는 점도 밝히고 있으며,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²³⁾

그러나, 통일에 있어 민주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基本要求는 ‘南朝鮮社會의 民主化’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단서를 붙인다. 자유의사를 저해하는 테러 정치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인민의 眞正한 自由와 民主主義的 權利가 철저히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한국에서 제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 人士들의 정치활동의 완전한 자유와, 언론, 출판, 결사,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며, 정치범들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요약해서, 북한은 소위 ‘파쇼통치제도’를 청산하고, ‘남조선의 민주화’를 보장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한다.²⁴⁾

북한이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숨은 의도가 人民民主主義革命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관계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한국 ‘민주화’에 만족할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국정부가 과연 북한의 요구하는 상태의 민주화를 허용할 수

있겠는가를 자문해 볼 때, 그 대답이 분명해진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결코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며, 불신감 및 경계심만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북한이 대화를 통한 통일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내의 정치변동을 통한 적화통일의 기회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한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북한지도층이 수락하기 힘든 문제들을提起하고 있다. 즉, 통일된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각자의 자유와人權과幸福이 보장되는 民主國家’여야 하며, ‘민족성원 모두의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대변되는 민주공화체제가 통일된 나라의 유일한 선택일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다. 북한에서 통용되는 민족주의 및 민주주의에는 강한 계급적 입장이 내포되어 있으며, 계급의 적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또한,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 및 행복은 2차적인 것이 되고 만다. 북한에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라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측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와 인권의 존엄성’을 강요하거나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批判한다면 南北韓關係의 개선은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북한이 이를 간섭 또는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카터行政府의 人權政策이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정부의 對內的 政策이나 행위에 대하여 介入하게 되면 ‘主權侵害’是非가 일어나게 된다. 유엔헌장 제55조(C)항은 “인종, 성별, 언어 및 宗教에 구별없이, 人權과 基本的 自由의 보편적 존중 및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56조는 “모든 회원국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별 또는 합동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기되어 있다.²⁵⁾ 1948년12월10일 유엔총회가 48:0으로 채택한 ‘世界人權宣言’(U.N. Doc. A/811)은 모든 사람 및 모든 국가가 人權 및 자유를 존중할 것을 더욱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²⁶⁾

그러나, 인권유린국가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카터大統領의 人權政策추진으로 미·소관계가 미묘해진데 대하여, 사임즈(Dimitri Simes)는 “소련내의 반체제 인사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경찰국가의 특성을 폐지하는 것과 같으며, 공개적으로 소련지도층의 人權侵害를 공격함으로써 카터는 현정권을 守勢로 몰아 넣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 ‘곰’의 분노를 어떻게 다룰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책이란 의도보다 성과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소련의 인권탄압만 더욱 강화시킨 셈이 되었다고 미국의 인권정책을 평했다.²⁷⁾ 키신저도 카터행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소련사회가 수십년간 또는 수세기간 행하여 온 관례를 갑자기 변경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人權外交는 은밀히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며, 政治的이고 戰略的인次元에서 신중히 다루지 않는다면 미국의 고립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 바 있다.²⁸⁾

카터의 人權政策을 비판한 사임즈나 키신저의 견해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그들의 견해와 대외관계에서 의도보다는 성과를 중시하여야 된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示唆하는 바가 크다. 북한에서의 엄격한 주민통제정책과 김일성 個人崇拜를 생각할 때, 인권유린을 직접·간접으로 지적할 경우 북한의 반발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같은 개방사회와는 달리, 북한의 경우 인권유린에 관한 구체적인 증

거를 제시하기 힘든 점이 있다. 미국무성이 議會에 제출한 '1988년도 人權報告書'를 보면 김일성 정권이 人民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신뢰도에 따라 등급을 매기며, 개인의 권리는 국가와 당의 권리에 종속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살인, 실종, 고문, 체포 및 망명 등에 관한 자료가 극히 희소함을 同報告書는 지적하고 있다. 人權問題가 제시되면, 북한은 오히려 한국내의 정치적 탄압을 비난할 것이며, 사회주의 국가이며 주체의 나라인 북한에는 인권 유린이 없다고 간단히 부인해 버릴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통일문제의 해결을 진정으로 희망한다면, 상대방을 반발하게 하고 수세로 몰아버리는 행위를 자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서로 어느정도 이해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이 구축된 후는 몰라도, 지금과 같이 강한 '敵이미지'가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정공법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그동안 북한의 대남선전이나 한국의 反共政策이 과연 얼마나 성공을 거두어 왔는지를 재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南北聯合과 聯邦制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중요한 특색은 완전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적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남북연합이 발족되면 남북한은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아래 ‘연합’의 형태로 손을 잡고 민족의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기구로는 ‘남북정상회의’, 10명 내외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각료회의’, 그리고 南北의 국회의원중에서 同數를 뽑아 구성되는 100명 내외의 ‘남북평의회’를 두어 통일업무를 관장하며, 이를 비무장지역내의 ‘평화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남북연합’이 이루어지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각종 교류·협력문제와 함께 정치·군사문제까지도 폭넓게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새 통일안은 강조하고 있다. 남북연합이 발족하면 남과 북은 잠정적으로 ‘국가관계가 아닌 民族內部的 特殊關係’를 가지며, 안으로는 상호간의 관계를 협의·조절하고 밖으로는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민족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근본 뜻에 담겨 있다. 한국측은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 하나의 생활공간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지향하는 ‘유럽 공동체’나 ‘노르딕 연합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다.³⁰⁾

‘남북연합’은 통일의 조기실현이 어렵다는 점과, 통일실현을 위해서는 교류·협력을 통한 충실한 기반조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연방제 형태라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설득력을 지닌 과도기적 통일체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대

남정책으로 전환할 경우, ‘남북연합’안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은 서로 절충되고 타협될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다. 즉, 양측안 모두가 국가연합(Confederation)형태의 체제를 보여주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측 案이 보다 이완된(독립적인) 형태의 연합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유럽공동체나 연방의 구성원들은 각국이 ‘완전한 주권국가’로서 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실현 등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연합체를 형성하여 협력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1931년의 ‘웨스트민스터 法’에 의하여 공식화된 영연방(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은 영국을 중심으로 구성국들간의 유대감 및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합체이다. 1931년에는 영국,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및 뉴질랜드만이 연방구성원이었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는 47개국이 加入되어 있고 2개의 특별회원국이 추가된다. 초기의 19세기 중엽에는 ‘자발적 협회’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신생국들의 등장으로 영국과의 관계가 재정립 되었다. 1931년의 웨스트민스턴 法은 “모든 회원국은 지위가 동등하며, 영국왕실에 대한 충성에 의해서 단결되어 있지만,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초창기 회원국 가운데서, 뉴 파운드랜드는 1949년 캐나다의 省으로 되었으며, 아일랜드共和國은 영연방을 벗어난 독립국가가 되었고, 남아프리카는 1961년 共和國이 되면서 회원국 지위가 끝났고, 파키스탄은 1972년에 영연방으로부터 탈퇴하였다. 차츰 구성원들의 성격이 복잡해지면서, 많은 신생국들은 영국왕실에 대한 충성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었다. 1949년 인도가 공화국이 되면서 영연방제의 ‘상징’으로서만 영국왕실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선언하게 되고, 다른 나라들도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1982년에는 일련의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절차에 관한 개혁이 제의되기도 했다.³¹⁾

영연방은 구조적으로 보아, 가장 제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정부간의 기구이다. 1965년 사무국을 설치할 때까지는 거의 지속적인 장치가 없었던 것이다. 정부수뇌들의 회합은 2년마다 열리게 되어 있으며, 외무, 국방, 재무장관들은 전문분야 별로 정기적인 협의를 갖는다. 사무국의 임무는 회의나 회합을 조직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며, 집단적인 결정들을 집행하는 것이다. 사무국내에 '영연방 기술협력기금(CFTC)'을 개발도상국들에게 기술제공을 하기도 한다. 경제분야의 협력은 가장 중요사로서, IMF 및 세계은행의 가을 회의 전에 모여서 경제·화폐문제 등을 논의한다. 그외에도, '국제경제 자문그룹' '영연방 경기연맹', '영연방 저명인 그룹' 등이 조직되어 있다.³²⁾

영연방의 특징은 주권국가의 지위를 누리면서, 상호협력을 통해 경제·기술 분야 등의 발전을 도모하며, 영국 여왕을 상징적으로 받드는 외에는 특별한 책임도 없고, 탈퇴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도적으로 중앙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탈퇴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영연방제가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를 주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이완된 연방제라 남북한이 통일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限界가 있을 수도 있다. 북한이 '남북연합'에 비판적인 이유중의 하나도 아마 한국의 案이 '강력한 통일의지'를 결여하고 있어, 통일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불만과 불확실성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남북한이 모두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방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여 연방제(Federation)案을 내 놓았다는 것은 상당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³³⁾ 연방주의원칙의 적용없이, 양보할 수 없는 고유의 이익을 지닌 나라나 지역들이 연합체를 형성하기가 힘들 것이다. 인종, 종교, 문화, 사상

적으로 이질적인 나라나 지역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연방제의 도입일 것 같다. 연방주의와 연방제야 말로 정치통합에 있어 위계적인 중심-주변 또는 상-하관계를 대치할 수 있는 代案이며, 구성원들의 특수한 이익이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공동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훌륭한 이념이며 제도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연방주의 원칙은 自治와 分散統治(self-rule and shared-rule) 양쪽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³⁴⁾ 통일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이 존중되는(diversity in unity) 연방제는 西方世界나 共產主義國家나 第3世界國家들 어느 곳에서나 발견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익하고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말해 준다. 연방주의가 통일과 다양성, 수단과 목적, 구조와 과정, 정치현상과 사회·문화적 현상, 제한된 목표와 포괄적인 목표들을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³⁵⁾

남북한이 연방주의에 기초한 상대방의 통일방안을 연구하여 공통점과 합의 가능점들을 찾아내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거나 절충하여 나간다면, 통일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서로 '고려연방제'나 '남북연합'을 거부하기 앞서, 좀더 폭넓은 시각으로 올바르게 인지하려고 노력하여야 하겠다.

VI. 結 論

지난 9월 11일 한국정부가 오랜 논의와 진통 끝에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중간과정으로서의 ‘남북연합’ 발족을 제의했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며, 북한과 마찬가지로 정치통합을 指向하는데 있어 융통성 있는 ‘연방주의 원칙’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끈다. 한 민족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기능주의적 접근방법과 연방주의 원칙들이 반영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2년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보다도 세련되어 있고 남북한의 통일안을 크게 접근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한이 모두 自主와 平和를 통일을 위한 기본이념(또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북한은 ‘민족 대단결’을 그리고 한국은 ‘민주’를 강조하고 있다. 각각의 3대원칙 개념은 시각과 인지의 차이때문에 조화를 이루기 힘든 면도 있으나, 앞으로 남북한에, 특히 북한에 보다 큰 변화가 오고 적대감이 감소되면 상대방의 시각이나 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유연성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 다양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연방제는 중앙의 권력을 강화하는 경우(Centralist Federalism)에, 권력을 분산시키는 경우(Decentralist Federalism) 및 균형있게 권력을 배분하는 경우(Federalist Balance)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³⁶⁾ 처음부터 중앙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연방제는 실현이 힘들 것이다. 따라서, 한국안의 ‘국가연합’이 너무 이완되어 ‘2개 조선을 추구하는 제2의 분열방안’이라는 북한의 비난은 너무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한국의 ‘연방주의’ 접근과 정치·군사문제논의 수락등 기뻐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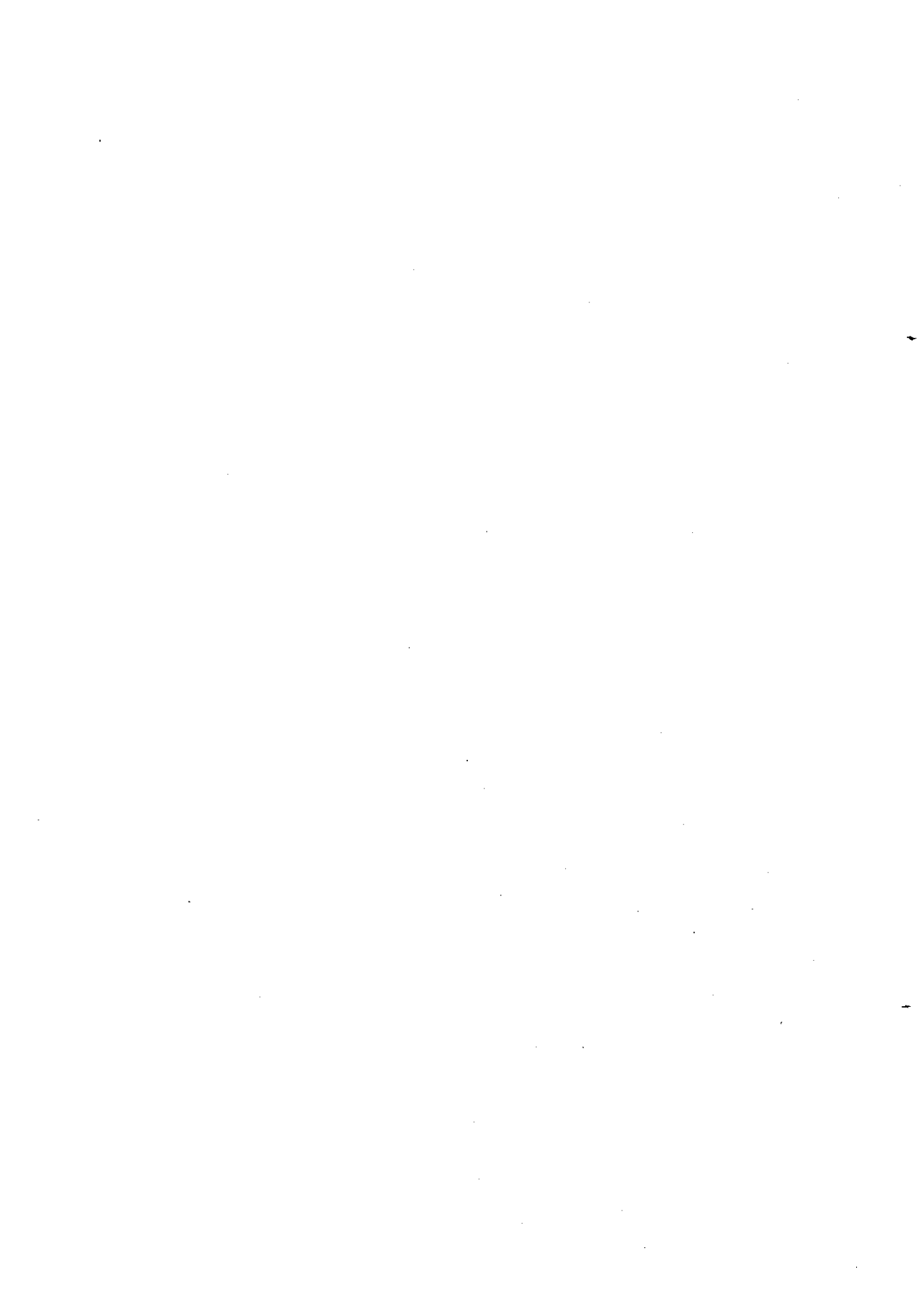
한편, 한국의 통일방안도 더욱 보완하거나 신경을 쓸 부분이 있다. 원래 연방제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 많은 국가들이 연방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지방자치를 위해 연방주의 원칙을 원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개념정립이 없이 연방주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안의 '남북연합'에 대해서도 보완적인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며, 특히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할 것인가도 생각하여야 하겠다. 또한, 민주, 자유, 인권등을 너무 강하게 부각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한국사회를 비난하고 나오게 만드는 것도 북한 특성으로 보아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양측이 서로 비교할 수 있고 절충할 수 있는 연방주의 원칙을 활용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통일목표를 향하여 그 만큼 다가선 것으로 볼 수 있다.

- 1) Frankfurt Allgemeine Zeitung, No.199, 199, August 29, 1989, p.5, quoted in Lothar Altman, Inter-German Framework for the Exchange of People and Goods, presented at the Sixth Korean-German Conference on "Divided Nations and East-West Relations in the Threshold of the 1990s," sponsored by the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October 10~11, 1989, pp.9~10.
- 2) 國土統一院, '7·7특별선언' 1년 통일정책보고(1989.7), pp.13~14.
- 3) 內外通信(綜合版), 第38卷(1988.7.1~12.31), pp.491~92.
- 4) 한국의 통일방안이 나온지 3일후인 9월 14일자 로동신문은 '2개노선을 추구하는 제2의 분열방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북연합'은 "제도적으로 2개의 국가를 합법화하고 남북관계를 공식적인 국가간의 관계로 전환시켜 남남처럼 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內外通信, 제658호(89.9.22), pp.1~4.
- 5) Peter Cheng, A Chro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rom October 1, 1949(Totowa : Littlefield, Adams & Co., 1972), p.34 & 44, and Peter Willets, The Non-Aligned Movement : The Origins of a Third World Alliance(London : Francis Pinter Ltd., 1978), pp.18~19.
- 6) 國土統一院,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9), pp.19~20.
- 7) 허중호, 主體思想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祖國統一理論(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200~205 ;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p.427.
- 8) 정치사전, 前掲書 pp.430~31.
- 9) 허중호, 前掲書, pp.208~210.
- 10)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2nd ed.(New York : Harper and Row, Publishers, 1981), p.204~205.
- 11) 로동신문, 1975년 4월 19일, p.3.
- 12) Ole R. Holsti, "Cognitive Dynamics and Images of the Enemy," in Samuel A.

- Kirkpatrick and Lawrence K. Pettit(eds.), The Social Psychology of Political Life (Belmont : Duxbury Press, 1972), p.227 ; Ralph K. White, Nobody Wanted War : Misperceptions in Vietnam and Other Wars(Garden City : Doubleday & Company, Inc., 1968), p.245.
- 13) Kenneth E. Boulding,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 i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Ⅲ, No.2(June, 1959), p.120.
 - 14) Robert S. Siegal, "Effects of Partisanship on the Perception of Attitude Change," in Kirkpatrick and Pettit, *op.cit.*, p.218.
 - 15) White, *op.cit.*, p.245.
 - 16) Arne Nasse, Jens A. Christopherson, and Kjell Kvals, Democracy, Ideology and Objectivity(Oxford : Basil Blackwell, 1956), requoted from Frank Cunningham, Democratic Theory and Socialism(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25.
 - 17) Giovanni Sartori, The Theory of Democracy Revisited, Part One : The Contemporary Debate(Chatham, N.J. :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7), p.3.
 - 18) J.Roland Pennock, Democratic Political Theory(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p.3~7.
 - 19) Marian D. Irish and James W. Prothro, The Politics of American Democracy, 4th ed.(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Inc., 1968), p.66.
 - 20) Pennock, *op.cit.*, pp.12~13.
 - 21) Irish and Prothro, *op.cit.*, p.67.
 - 2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통일원, 1989.9), pp.21~22.
 - 23) 허중호, 前掲書, pp.205~207.
 - 24) 同, p.208.
 - 25) Leland M. Goodrich and Edvard Hambro,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Commentary and Documents, Revised ed.(Boston : World Peace Foundation, 1949),

pp.319~24

- 26) Lan Brownlie(ed.), Basic Documents on Human Rights, 2nd.ed.(Oxford : Clarendon Press, 1981), pp.21~27.
- 27) Dimitri K. Simes, "Détente, Russian Style," in Foreign Policy, No.32(Fall, 1978), pp.58~59.
- 28) Henry A. Kissinger, American Foreign Policy, 3rd ed.(New York : W.W. Norton & Company, Inc., 1977), pp.171~173, and Henry A. Kissinger, "Continuity and Change in American Foreign Policy," in Society, Vol.XV, No.1(November/December, 1977), pp.100~102.
- 29) 例外로서는, 1967~74년동안 북한에서 체포되어 구금생활을 했던 베네주엘라 시인 Ail Lameda가 석방되어 진술한 'Lameda Report'가 있고, 최근에는 '미네소타주 변호사 국제위원회'와 워싱턴의 'Asia Watch'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
- 30)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통일원, 1989.9), pp.24~25.
- 31) Arthur S. Banks(ed.), Political Handbook of the World, 1986(Binghamton : CSA Publications, 1986), p.668.
- 32) Ibid., pp.668~69.
- 33) 이데올로기로서의 연방주의와 제도로서의 연방제에 관해서는, Preston King, Federalism and Federation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참조.
- 34) See Daniel J.Elazer(ed.), Federalism and Political Intergration(Lanham, MD ; University of America, Inc., 1984), pp.1~3.
- 35) Ibid., p.16.
- 36) King, op.cit., part 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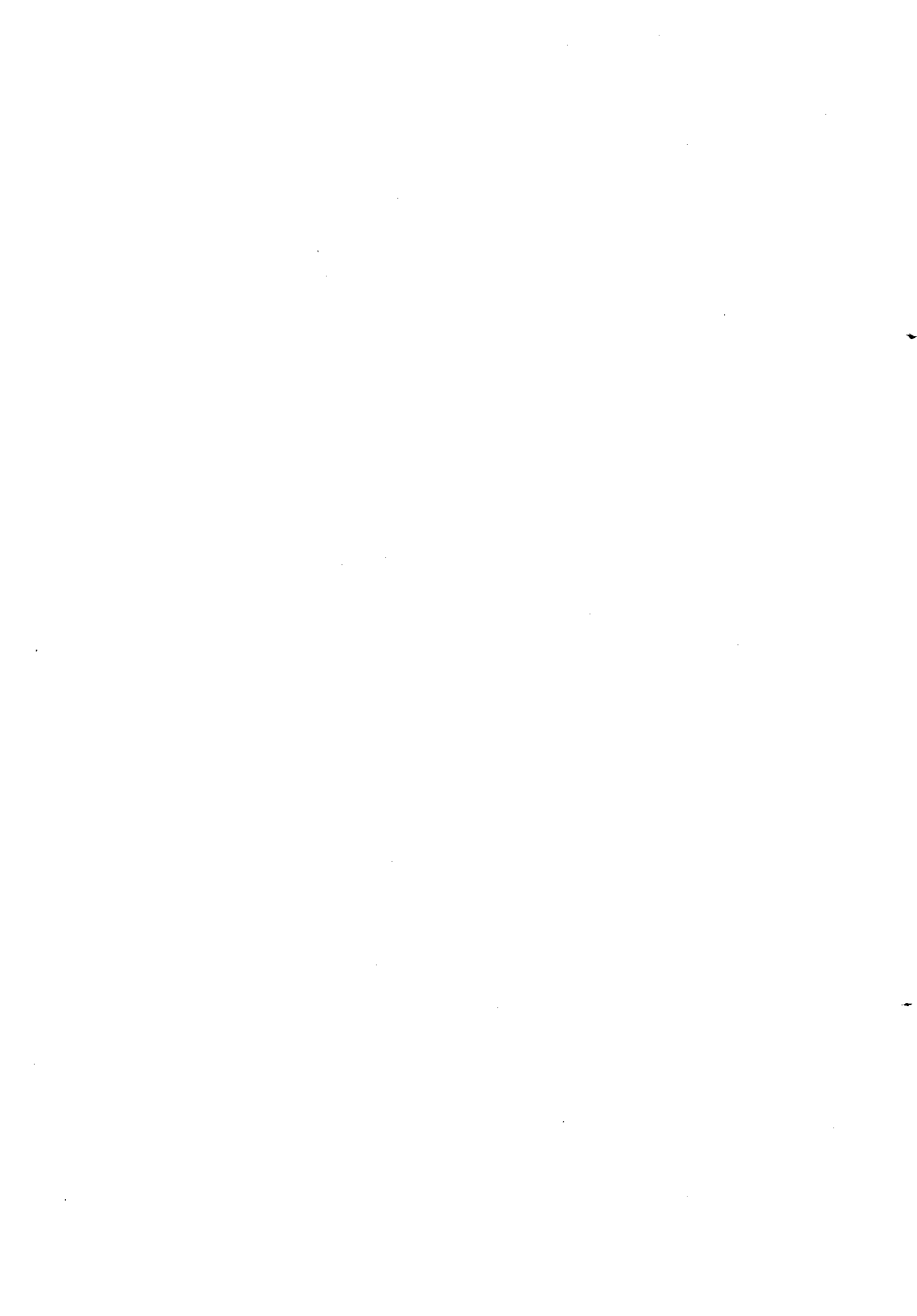


2.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政策的 側面

金 甲 喆 (建國大 教授)

目 次

I. 問題의 提起	33
II.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概念的 構圖	36
III. 金日成의 「祖國統一」論과 戰略 持續과 變化	44
IV. 民族共同體 實現戰略	54
V. 맺는 말	58



I. 問題의 提起

노태우 대통령은 금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적대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의 겨레는 생활방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르게 회복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북한 노동당의 한 대변인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두개의 조선」으로 분열을 고착화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한정없이 끌려는 제2의 분열방안이다¹⁾”라고 비판하고 이를 거부했다. 또한 그는 중간단계로서의 ‘南北聯合’을 “두개 국가의 존재를 합리화하고 남북관계를 공식적인 국가간의 관계로 전환시키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南北聯合(南北韓 體制聯合)에 대하여 ‘대립하는 두 당국사이의 협의기구’로서 “남과 북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와 참여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단일성’을 찾을 수 없다²⁾”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9월 29일 김영남(정치국위원, 부총리겸 외교부장)은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소집하여 조국통일 방도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이룩하자”고 하면서 원탁회의 형식의 60명 정도의 “남과 북의 당국자, 정당, 단체대표들이 참가하는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을 남조선당국과 각 정당·단체에 정중히 제의한다³⁾”고 하였다.

이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요 내용과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남북체제사이에 不信과 對立이 엄존하며 雙方間의 의사전달의 통로가 닫혀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리하여 平和統一 成就를 위해 남한은 북한의 '혁명적 통일노선'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그들대로 駐韓美軍 撤收와 國家保安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民族統一문제가 일차적으로 南北民族과 南北體制사이에 어떠한 형식이든 合意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실마리가 풀릴 것임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고 있다.

이 글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實現可能한 政策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방책이 구비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익히 아는 바와 같이 政策分析(policy analysis)은 目標文化(normative analysis)의 설정과 現實狀態의 설명(empirical analysis), 그리고 現實과 目標文化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政策手段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行動指針을 體系化함을 말한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目標文化는 남북민족 전구성원의 自由, 人權, 幸福이 보장되는 '統一民主共和國'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묘사(남북한 사회와 체제사이의 관계)는 노태우 대통령이 분석한 것처럼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긴장과 대결은 늦추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南北이 군사적 대치, 긴장 및 대결상황(현실)에서 벗어나서 남북연합(중간목표)에 접근하며, 나아가 최종목표인 統一民族國家 수립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들과 행동주체들의 政策代案들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것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기본구도가 될 것이고 이 글의

주요 분석 초점이기도 한다.

여기에는 文化的(理念的) 接近方法, 커뮤니케이션 이론, 수렴이론, 신기능주의 이론 등의 다양한 분석 개념들이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개념적 구도

새 통일방안의 이론적 구조는 ① 現實描寫, ② 현실을 발생시킨 原因說明 ③ 民族統一과 政治統一의 當爲性 ④ 통일조국의 目標文化 ⑤ 현실에서 출발하여 政策目標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과 기본 접근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과 ②는 경험적 설명(causal analysis) 즉 40여년간의 민족분단이 조성한 징후군의 진단이며 ③과 ④는 平和統一의 當爲性(sollen)과 통일조국의 未來像의 敘述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⑤는 정책적 설계에 해당된다.

1. 민족분열의 원인을 설명한 부분

미·소에 의한 국토분단(38선을 경계로 한 미·소군의 진주)은 민족내부에서의 좌·우익간의 유혈투쟁, 대립하는 두 체제의 탄생, 6·25남침으로 인한 동족간의 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분열로 심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은 적대하는 두 체제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면서 반세기동안 남과 북의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사회화함으로써 이제 남북의 겨레는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이질화되어 있다고 분석하였다.

제 6공화국의 새로운 통일방안이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처방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분열을 낳게한 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論理的 先決問題라고 제기하였는데 이는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여기서 盧大統領이 설명하는 민족분열의 심화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소의 국토 분할진주→민족내부 정치세력의 분열
 →두개의 정권수립→북한의 무력통일 감행
 →두 체제 사이의 적대관계 심화→反共과 反帝의 정치교육
 →문화적 이질화→민족분열의 심화고착

이상의 설명에서 우리는 민족분열의 심화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政治社會化 이론을 分析概念으로 원용하였음을 읽을 수 있겠다.

2. 민족분열이 가져온 결과로서의 한반도 현실상황

盧大統領의 현실상황 인식은 다음과 같다.

-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긴장과 대결이 지속되고 있다.
- 분단 40여년간 남과 북사이에는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적대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 북한의 적화통일의 기본 전략과 모든 것이 통제된 북한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세계를 바꾸어 놓은 변화에 적응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고 있다.
- 이제 우리는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조국의 통일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당당한 힘을 쌓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추었다.
- 우리는 거래의 뜻과 열망을 한 데 모아 민족통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특별연설에서 民族分斷의 現實을 政治的 敵對關係, 군사적 대치상황, 남과 북사이의 누적된 불신상황으로 서술하고, 이러한 민족분단의 아픔과 민족적 역량소모를 지속시키는 일차적 원인은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체제의 경직성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남한은 크게 변화·발전한 데 비하여 북한은 변화에 저항하고 있는데 이것이 民族共同體 회복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盧大統領은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 지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끝내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하여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어 남북연합을 추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統一民主共和國이라는 政治的 統一體를 창설하겠다는 통일방안과 정책을 합리화하였다.

3. 통일조국의 目標文化와 民族統一의 當爲性을 서술한 부분

새 통일방안에서는 통일된 조국이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집단이나 계급의 전횡이 없는 민주공화정을 우리 민족의 유일한 선택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좌·우익 독재체제나 소위 계급적 민주주의를 분명히 거부하고 있다. 이와함께 새 통일방안의 두 체제의 공존을 영구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중간단계 성격의 미완성형 통일(즉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국가는 반드시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약속하고 인류의 복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민족전통과 남북관계의 현실 및 통일국가수립의 기본 취지 등을 고려하여 통일국가의 국가형태와 국회의 구성방법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상을 밝히고 있다.

그 다음으로 새통일방안은 민족통일의 당위성에 관하여 크게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4. 통일조국의 目標文化에 도달하기 위한 過程과 戰略(政策)을 설계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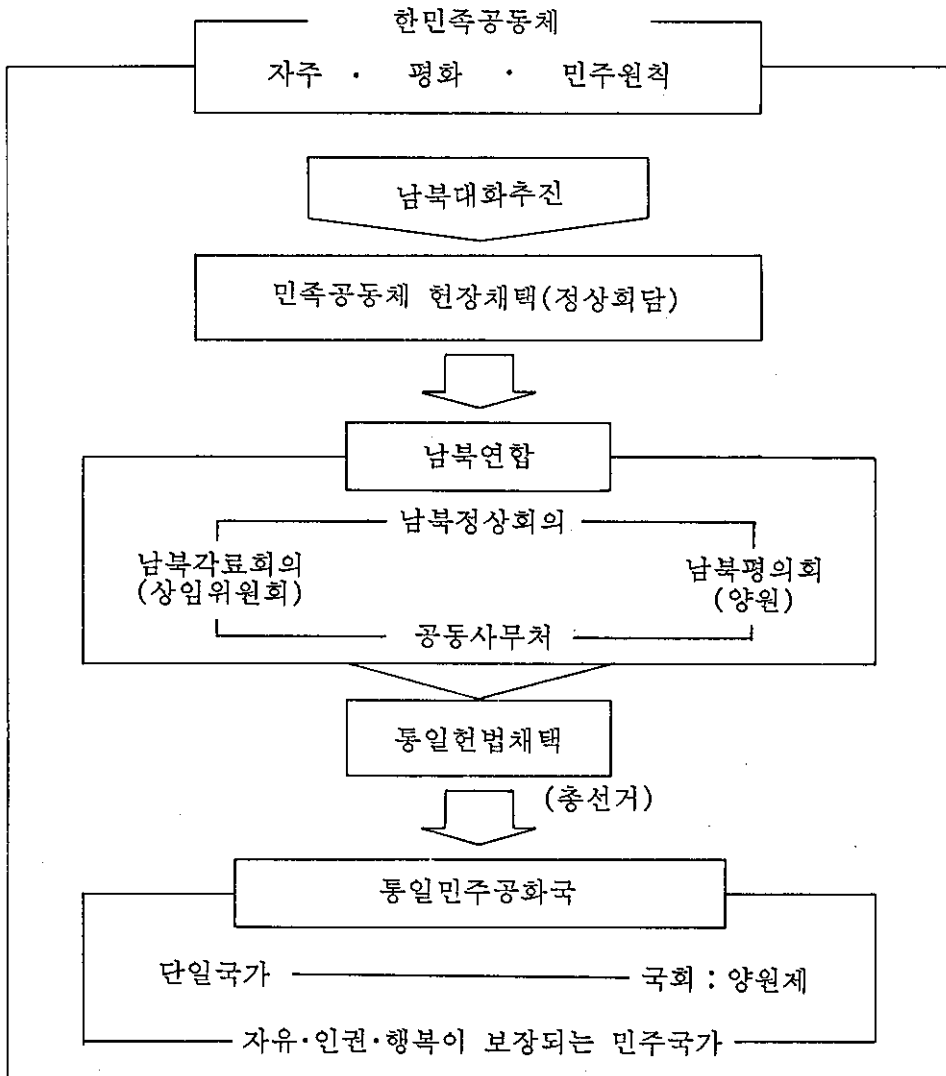
새 통일방안은 民族分斷의 현실을 개선·극복하고 궁극적으로 그 目標文化에 이르게 하는 정책과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核心을 이룬다. 새 통일방안의 기본구도(그림1)를 보면 目標文化에 이르는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단계는 다변적인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민족공동체 현장을 채택하는 남북연합체제 준비단계, 즉 하부구조를 만드는 단계이다.

2 단계는 통일국가 실현에 이르는 중간단계로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적 통일체를 세우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통일국가에 이르는 중간단계로서 自主, 平和, 民主의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연합」(남북한 체제연합)을 상징하고 있다. 盧大統領은 이것을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라고 정의하였다. 이 과도적 통일체가 수행해야 할 주요 기능은 분단국가의 하부구조, 즉 남북겨레의 生活樣式 및 價値觀 등 민족공동체 문화의 훼손 또는 이질화를 방지하고 극복함으로써 민족공동체를 올바르게 회복·발전시키는 길을 개척하는데 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그 임무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구도(그림1)



면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서 신뢰를 쌓아올림으로써 통일민족국가의 바탕을 만들어가는 노력 바로 그것이다.

이와같이 하부구조에서의 동질화 즉,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

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결국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통일을 촉진할 과도적 통일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합의하는 현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南北聯合案에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 쌍방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여 앞에서 언급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5.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미와 특징

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미

첫째, 정부가 새 통일방안을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발표하기 앞서 각 정당, 사회단체 및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民主化時代에 걸맞는 정책과정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 분단조국의 현실을 경험적으로 분석·설명함으로써 하부구조의 통합을 거쳐 상부구조(정치적 통합)의 통일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統一方案에

비하여 實踐可能性을 높였다고 본다.

세째, 민족통일에 대한 열의와 자신감을 보임으로써 ‘통일기피’ 또는 ‘통일문제의 정치적 악용’이라는 비판세력의 논리가 더 이상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다.

네째, 이상의 의미부여에도 불구하고 「남북연합」이 法的 概念이나, 政治的 概念이나의 문제, 그리고 체제연합이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중간위치라고 할 때 체제연합의 바로 다음 단계는 연방국가라 할 수 있을지언정 곧바로 單一民族國家로 뛰어넘을 수 있느냐의 論爭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

첫째 특징은 새 통일방안은 완전한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전단계로서 과도적 통일체로서 남북체제연합의 설치를 제외한 점이다. 이것은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에 대한 실천적 대안의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두번째 특징은 統一國家의 未來像(즉 目標文化)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연하고자 하는 것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족공동체안에서 각자의 自由, 人權, 幸福이 보장되는 民主國家라는 目標文化는 먼 장래의 이상이 아니고 民族統一 이전이라도 남한체제가 혼자서라도 이를 앞당기는 政策的 實踐意志를 可視化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 특징은 새 통일방안은 남한의 주장과 입장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북한측이 주장해 온 방안과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남북각료회의(정치·군사상임위원회), 남북평의회, 남북평의회 기능가운데에는 북한이 강조해 온 정치·군사회담, 민족통일협상회의의 임무를 포괄하는 부분이 있다.

신·구 통일 방안의 비교

(그림2)

구 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통일원칙	자유, 평화, 민주	민족자결, 민주, 평화
과도체제	남북 연합	없 음
과도 기구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없 음
통일국가 실현 절차	남북평의회→통일헌법기초→민주적 방법·절차→총선거 실시 →통일정부·통일국회 수립	민족통일협의회의→통일헌법기초→국민투표로 확정공포→총선실시→통일정부·통일국회 수립
통일국가 기 구	국회는 양원제	없 음
통일국가 정책기초	민주공화체제,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증진, 민족의 항구적 안전보장, 대외선린우호 관계	통일헌법 기초과정에서 협의·결정
통일국가 미 래 상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민족, 민주, 자유, 복지

Ⅲ. 김일성의 「조국통일」論과 戰略—지속과 변화

우리가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金日成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의 상당부분을 포용하는 신축성을 보인다 할 지라도 金日成이 ‘남조선혁명’을 통한 ‘조국통일’론 (이하 革命的 統一論)과 전략을 고수하는 경직성을 지속한다면 牛耳讀經,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제안 설명에서 노태우대통령이 강조한 바 있는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겠다”는 간절한 소망도 可視化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우리의 민족통일예의 노력은 북한의 體制變化와 그로 인한 경직된 혁명적 통일전략의 수정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라진다고 보겠다.

그렇다면 북한의 革命的 統一戰略은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먼저 金日成의 革命的 統一論의 개념적 구도를 서술하고 다음으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해보기로 한다.

1. 革命的 統一論의 개념적 구도

金日成의 남조선 혁명전략(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조국통일이론(조국통일 3대원칙, 5대강령)의 기본구도는 ①3대혁명역량강화→②남조선혁명→③조국통일→④전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네가지 차원의 ‘계속혁명’론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계속혁명이란 三大革命運動(사상, 기술, 문화혁명)에 입각하여 한단계 혁명이 성공하면 곧이어 다음 단계의 혁명을 계

속추진하여 최종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혁명투쟁을 쉬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혁명의 일환으로 金日成이 추진하는 革命的 統一戰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金日成의 남한사회현실을 보는 인식과 해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革命的 統一戰略의 理論的 根據가 되는 金日成의 對南韓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金日成은 한반도에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를 제기시킨 “歷史的 根源”을 한마디로 ‘미군의 남한점령’에서 찾고 있다. 金日成에 의하면 남한에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과 自主的 平和統一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①해방 후 미군의 남한점령으로 조국이 분단되었다는 점 ②남한은 미국의 오랜 新植民地政策으로 인하여 그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었다는 점 ③미국은 남한을 전조선강점을 위한 兵站基地로 삼고있다는 점 ④전조선의 민주발전과 조국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 다분히 我田引水格인 정세 평가에서 찾고 있다.¹⁾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식민지통치는 남조선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기본장애입니다.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몰아내며 그의 식민지통치를 분쇄하지 않고는 남조선인민들이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²⁾

다음으로 金日成이 평가하는 남한에서의 미제의 역할을 「김일성 저작선집」에서 찾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金日成에 의하면 해방후 미국은 그 군대의 남한주둔을 통해서 좌익세력을 탄압하고 우익세력을 규합함으로써 「조선민족」을 이념적으로 분열시켰

는데 이는 모두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둘째로 미제는 미소공동위원회 사업을 파탄시킴으로써 「통일적 임시정부수립」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金日成은 미군의 남한주둔과 그 식민지통치가 조국통일의 근본장애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넷째, 미제는 남한을 북한 강점을 위한 병참기지로, 아시아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전략기지로 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와같이 金日成은 미군의 남한점령 및 그 식민지정책의 결과로 생겨난 오늘날의 한반도정세로 인하여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문제를 새삼스럽게 제기하게 한 유일한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만일 미제가 남한을 식민지화하지도 않고 민족분열책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혁명과 통일문제는 애당초 제기되지 않을 것이며 “남조선의 전체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통일적인 民主主義 獨立國家를 건설하고 세상에 부러움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려왔을 것이다”³⁾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이것이 1945~48년까지 해방직후 한반도에서 두개의 政體가 수립된 歷史的 事實에 대한 북한의 역사해석이다. 金日成의 이러한 역사해석은 전한반도에 걸쳐 金日成 영도하의 ‘人民民主主義’정권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黨派性이론에 입각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미제가 이러한 적화통일 정부수립을 방해했기 때문에 金日成 영도하에 북한의 혁명기지를 강화하여 혁명과 통일을 기필코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金日成의 역사해석이 얼마만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할 것이나 역사적 기록으로 보면, 金日成이

中央人民委員長으로 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소위 人民政權)가 1946년 2월에 수립되었다는 사실에서 그에 대한 논의는 명약관화하게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승만박사의 單政樹立主張(井邑 發言)발표가 1946년 6월로 그보다 4개월뒤의 일이며, 1947년 2월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공식화됨으로써 명실상부한 人民政權이 사실상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위 ‘미제’와 ‘남조선의 반동’이 UN감시하의 고정화하는 單政樹立은 실상 소련과 金日成이 먼저 착수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만일 金日成의 한국정부와 사회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스탈린주의적 혁명관에 입각하고 있거나 黨派性理論(공산당의 일당지배는 참민주주의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독재체제라는 兩分論)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닌 가공의 현실인식으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을 전개하면서 이에따라 전략전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된다.

金日成의 현실진단과 그 처방

(그림3)

A. 현실사회 (記述)

- 남한체제
 -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
 - 대한민국은 반통일 괴뢰정권
 - 민족적 애국자와 민주적 인민대중을 탄압하는 독재정권
- 북한체제 (혁명기지)
 - 人民大衆이 主人이 되는 주체의 나라
 - 세계에서 으뜸가는 사회주의

B. 원인분석(說明)

- 미제의 신식민주의 정책

C. 타개방법(戰略戰術)

1) 3대혁명역량강화

2) 남조선혁명 •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추진(미군철수, 현정권 타도)

3) 조국통일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북한으로의 병합·흡수통일)

D. 최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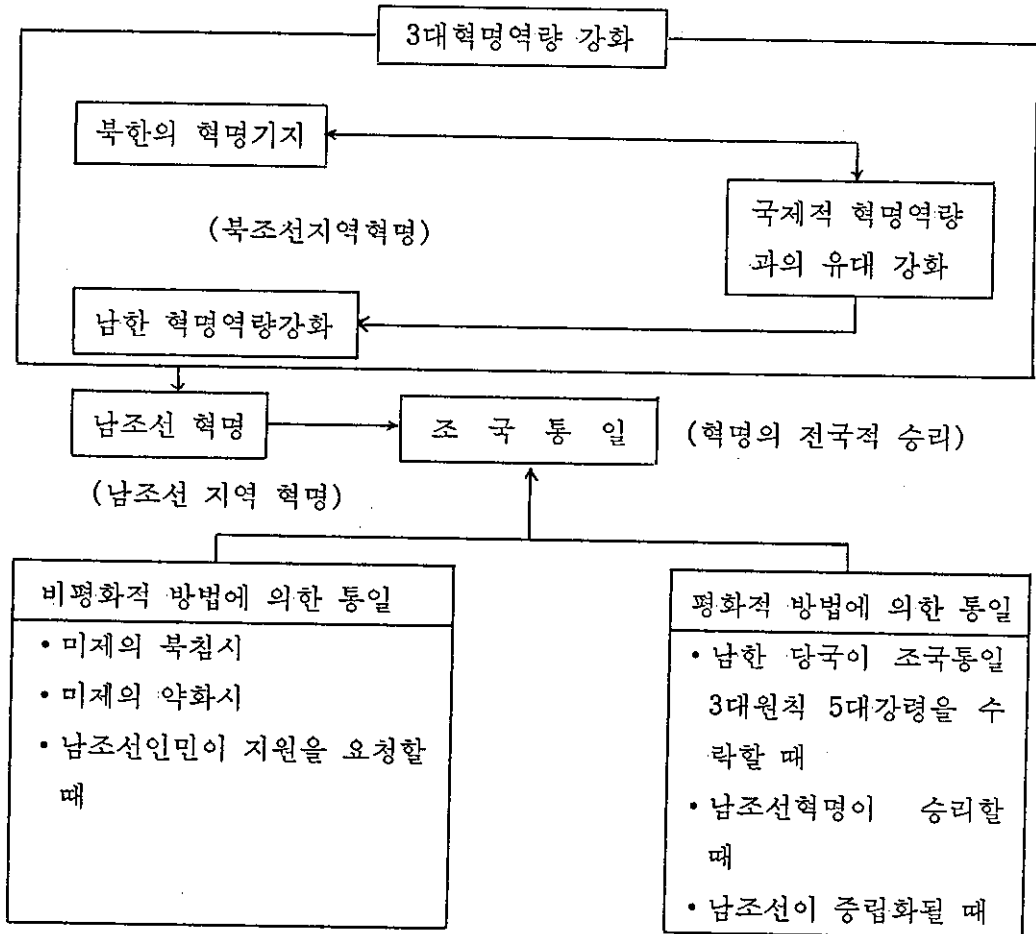
• 전 한반도에서 공산사회건설

그렇다면 金日成의 혁명적 통일론과 그 기본구도는 국제정치체계의 변화(알타체계의 와해와 신데탕트조류)와 소련 및 동구의 自由化, 民主化가 던진 충격으로 인하여 변질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金日成의 주체사상체계가 존재하는 동안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主體思想은 북한의 모든 정책(‘革命과 建設’)의 지도원칙이 되고 있으므로 金日成이 말하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이론 및 전략·전술도 당연히 주체사상의 기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金日成은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혁명 과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金日成은 3대원칙과 5대강령을 조국통일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金日成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시한 독창적인 이론이며 이로 인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식민지·반식민지국가들이 사회주의에 이행하는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이 개척되었으며 따라서 이 이론은 식민지·반식민주국가들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

혁명적 통일론의 기본구도 (그림 4)



※ 出處: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263~284

서 강령적 지침이 된다”⁴⁾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노동당은 金日成의 자주적 통일이론은 ‘조선의 현실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이론’ 또는 ‘과학적 평가에 기초한 전략·전술적 방침’⁵⁾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主體思想과 남조선혁명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 인민대중을 더욱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워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게 하는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이다.”⁶⁾

여기에서 혁명과 건설의 주인(곧 주체)은 人民大衆인데 主人다운 태도는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계급해방’(人民民主主義革命)과 ‘민족해방’의 추진은 主人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즉, 人民大衆이 主人이 되기 위해서는 수령과 당의 명령에 따라 북한에다 혁명기지를 완성하고 남한에서 ‘계급해방·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서는 남조선혁명은 남조선인민들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어 전국적 판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사회혁명과 우리시대 민족문제의 성격에 대한 전혀 새로운 과학적 규정을 내렸다.”⁷⁾

다시 말하면 주체사상은 金日成式 社會主義(즉 金日成 個人崇拜, 권력세습, 계속혁명, 명령경제-시장경제체제 채택거부, 폐쇄사회, 반수정주의투쟁)를 설명하고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金日成 格下運動이 승리하지 않는 한 그것은 건재할 것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이 神聖不可侵의 教條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는 한 그것에 기초한 革命的 統一論의 기본구도는 결코 수정되지 않을 것이다.

2. 北韓體制的 變化可能性 分析

일반적으로 社會主義體制的 變化可能性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事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으로부터의 變化'인가 하는 變化의 概念問題이다. 우리가 社會主義體制的 變化를 운위할 때 그것은 대개 '스탈린主義'로부터의 變化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個人崇拜, 人民의 意思에 의거하지 못한 지도자의 도그마에 의존, 강력한 물리력에 의한 주민통제, 중앙계획적 명령경제, 그리고 各 社會主義國家의 獨自性 制限 및 蘇聯의 社會主義的 大國主義 強調等으로부터의 變化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두번째 고려해야 할 점은 누구에 의한 變化인가 다시 말해서 變化의 動因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하는 變化의 主體問題이다. 이 問題는 各國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①政治的 리더쉽의 필요에 의해 變化하는 위로부터의 變化로서 소련의 개방, 개혁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하며 中國의 경우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②人民들의 要求를 政治的 리더쉽에 수용하여 일어나는 아래로부터의 變化인데 최근 동유럽 여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양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③옆으로부터의 變化로서 고프바츨프의 개방·개혁의 물결이 동유럽 여러나라들의 變化를 유도하거나 폴란드·헝가리의 變化가 인접 社會主義國家의 變化를 자극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세번째 고려해야 할 점은 變化의 方向問題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變化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양상은 政治體制에 있어 1人支配 體制로부터 政治的 多元主義로의 變化, 經濟構造에 있어 종래 中央計劃經濟로부터 市場메커니즘을 가미한 이른바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로의 變

化, 社會統制에 있어서는 공포에 의한 강압통제에서 검열의 완화 내지 폐지 등으로 變化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北韓體制의 變化可能性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北韓의 경우 상기 一般的인 社會主義體制 變化와 分析들이 정확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다고 보여진다.

북한은 정권출범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타 社會主義國家들에 비해 아마도 가장 變化하지 않는 體制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이 그동안 큰 變化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는 나름대로 여러 次元에서 分析이 可能하겠지만 그렇다고 變化의 機會(外部環境의 變化와 관련하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北韓體制가 對外的인 環境變化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향후 北韓體制의 變化可能性을 재보기로 하자.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路線 및 스탈린 批判은 당시 스탈린의 통제하에 있던 북한체제에 있어 훌륭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러한 외부환경변화에 당면하여 그것을 당내 정적을 숙청하고 자신의 권력기반확립을 위한 계기로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기보다 變化를 거슬르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한편 1970年代의 美·中 修交와 國際데탕트분위기는 북한체제가 변화할 수 있는 또하나의 좋은 장을 마련하였다. 당시 북한은 이러한 외부환경변화에 고무된 듯 남북대화에 적극성을 보여 7·4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얼마간의 변화의 몸짓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72년 남한에 유신체제가 들어서자 이를 구실로 헌법을 개정(사회주의헌법 채택), 主席制를 신설하고 金日成의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또다시 변화의 기회를 방기해 버렸다.

이제 1980년대 후반의 이른바 ‘사회주의 대지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체제가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은 이 역사적인 변화의 대세를 선뜻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대외적으로 중국이나 루마니아, 쿠바 등 변화에 소극적인 몇 안되는 국가들과 공동전선을 형성, 세계적 추세에 반발하려는 듯 보이며, 내부적으로 사상학습을 강화하고 있어 종래의 자세를 답습하려는 조짐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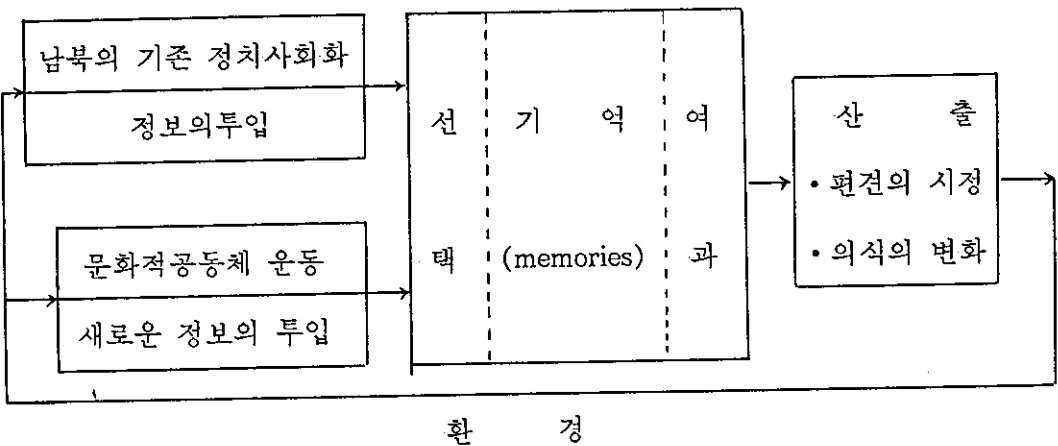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변화는 필연적이라 보여지는데 내외적 변화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시기와 범위가 문제인데 시기적으로는 1990年(盧大統領의 남북평화와 통일의지 표명)에서 1995年(김일성의 조국통일 호언)까지가 하나의 고비로 보여지며 변화의 모습(범위)은 아마도 중국의 그것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아래로부터 요구는 차단하면서 위로부터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개혁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IV. 民族共同體 實現戰略

1. 民族共同體文化的 形成을 위한 概念的 틀

南北의 겨레가 각기 다른 世界觀, 政治意識 또는 政治文化를 形成하게 된 원인을 分析해 보면 40여년간 體制的·理念的 葛藤構造 안에서 生活하면서 民族葛藤을 深化시키는 過程을 경험하였다. 그렇다면 南北韓間에 존재하고 있는 不信과 葛藤의 저변에 흐르는 文化的 異質性을 어떻게 克服할 수 있겠는가. 그 解答은 다소 抽象的이기는 하나 南北韓 社會에 아직도 잔류할 것으로 생각되는 傳統的 民族文化를 회복함과 동시에 南北間에 多方面的인 交流와 協力을 계기로 文化的 共同體意識이 싹트고 이것이 深化됨으로써 民族共同體文化的 形成運動이 展開되고 이것이 촉진제가 되어 南北間에 情報交換시스템이 기능을 발휘할 때 새로운 情報가 投入될 것이다. 이로써 一方的 이데올로기 教育의 結果로 생긴 黨派의 思考方式이나 文化的 偏見이 점진적으로 시정될 것이다. (그림4참조)

〈그림4〉 文化的 同質性 提高過程



이러한 文化的 同質性의 形成은 두 政治體系의 環境(對內的 環境)의 變化와 더불어 政治指導者의 交替(또는 金日成의 死亡)가 시기적으로 相合作用을 일으킬 경우 기하급수적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스탈린死後의 蘇聯, 毛澤東 死亡後의 中國社會의 變化가 이를 경험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2. 民族共同體文化 形成努力의 先行條件

南北韓의 異質化된 下位文化의 폭을 축소하고 文化的 共通性을 擴大하기 위해서 몇가지 갖추어야 할 條件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南北韓이 각기 政治體制의 改革이 필요하다. 南韓은 작게는 현재 진행중인 民主改革이 成功的으로 추진됨과 동시에 社會的 葛藤(地域間, 階層間, 世代間의 葛藤)의 평화적 해결이 制度化되어야 하고, 크게는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이 제시한 目標文化에 접근하는 政治體制的, 社會的 改編이 진척되어야 한다. 北韓은 住民의 生活水準 向上을 통하여 政治的 正統性을 확립하고 社會統制를 점진적으로 完화하는 改革政策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人權을 점차 伸장시키는 改革共產主義를 制度化해야 한다. 그리하여 南北韓體制의 리더쉽이 각기 對內的으로 安定을 확보함으로써 南北間의 다각적인 對話와 協力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意識構造上의 變化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둘째로 南北韓의 政府가 民族統一政策의 推進主體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이것은 交流와 協力이 내정교란이나 革命輸出의 工作手段이 아니라는 相互信賴를 造成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民族統一問題를 政治的으로 惡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共同體文化의 形成을 위한 세번째의 조치는 南北의 教育, 文化, 文藝, 歷史 部門의 專門家나 從事者들이 共同研究나 學問的 세미나를 통하여 南北韓間의 文化的 異質性和 同質性を 相互 確認하고 이를 認定하는 過程을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하여 南北韓 사이에는 政治文化나 政治意識, 學問的 方法論上의 차이점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 事實로서 존재함을 認定하는 것이 共同體文化形成의 出發點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民族的 同質性 擴大에의 길

盧大統領은 7·7特別宣言에서 “自主·平和·民主·福祉의 原則에 입각하여 民族構成員 全體가 참여하는 社會·文化·經濟·政治共同體를 이룩함으로써 民族自存과 統一繁榮의 새 時代를 열어 나갈 것”을 약속하고 6개항의 政策推進을 宣言하였다.

이 6개항의 政策提示와 後續措置는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한 결과 생긴 일시적 社會的 不安要因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後續措置發表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따라서 統一外交政策의 착상이 아무리 좋아도 政治的 安定이 동요될 징후가 야기되면 그것은 좌초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로서의 統合은 집안단속(I)이 된 후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自由民主主義體制를 民主福祉主義 社會體制로 轉換(II)의 비전을 가지고 北韓의 要求를 포용하는 政治的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政治的 리더십이란, “北韓은 40年間の 先革命 後統一政策을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만 양보해서는 百害無益”이라는 保守勢力을 설득함과 동시에 성급한 民衆統一論者들의 위장된 統一運動의 自制를 보장받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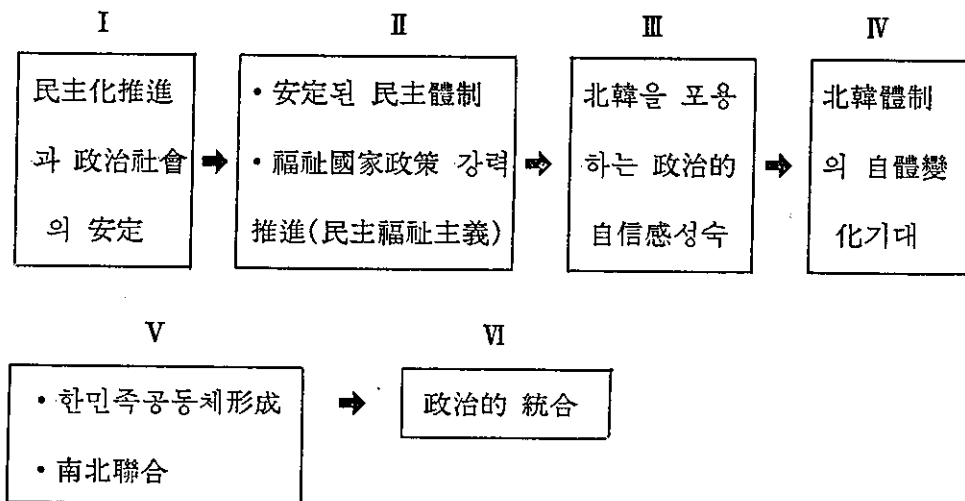
한다. 北韓을 포용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自信感(Ⅲ)은 당연히 北韓體制의 自體變化(Ⅳ)가 틀림없이 일어날 것을 확신한 事前政策提示임을 국민들에 說得할 수 있을 때 그 推進力을 加速시킬 수 있다고 본다.

北韓體制의 變化는 金日成死後에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며, 그 이전이라도 北韓의 對外的 環境變化와 對內的 要求로 인하여 “위로부터의 改革”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南韓이 民主社會로의 方向定立을 하고 北韓이 改革共產主義로 발전될 경우 相互信賴構築 → 平和定着 → 民族共同體文化의 形成에 대한 장애물이 크게 축소될 것이다.

이리하여 南北韓 사이의 記者交流, 매스미디어 교환, 經濟交流 및 協力, 學術交流, 多角的인 對話와 協商은 새로운 情報을 北韓社會와 體制에 投入시켜 文化的 異質性을 形成한 黨派의이나 이데올로기적 偏見을 시정하는 일대 轉換點을 조성할 것이다.

(그림5) 民族共同體로의 過程



V. 맺는 말

盧大統領의 7·7특별성명에 대하여 북한은 4일후인 88년 7월 11일에 “미국 의 각본에 따라 선임자가 내놓았던 영구분열안을 문구와 단어들은 바꾸어 각 색한 낱은 문서의 변종” 또는 “두개 조선을 위한 분열주의적 단계론”으로 규정하고 남한측이 통일을 원한다면 ‘남북연석회의’에 호응하고 ‘8·15학생회담’ 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 7·7선언과 후속조치는 남한 의 보수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금년 9월 11일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하여 북한의 노동 당은 3일후에 ①두개 조선으로의 분열고정 ②나라의 통일을 한없이 끌려는 제2의 분열방안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자는 7·7특별성명시의 반응과 같은 것이며 후자는 민족통일을 통한 정치적 통일개념이다. 南北聯合 → 統一國家 의 수립이라는 개념적 틀을 거부하는 논평이라 볼 수 있다. 민족통일문제를 북측과 협상하려면 먼저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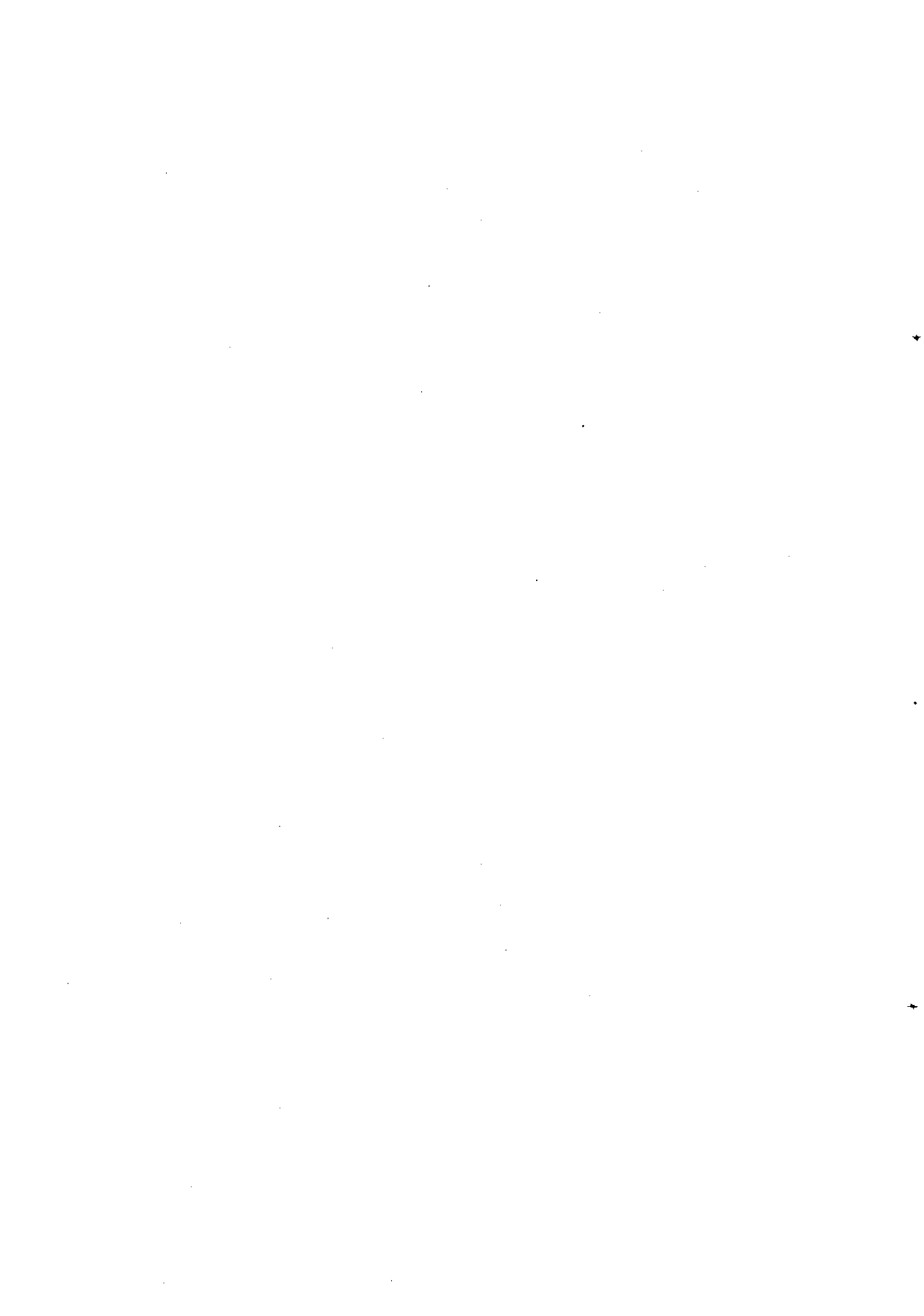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실한 통일외지에 기초하여 북과 힘을 합쳐 나라의 분 열을 끝장내고 민족통일위업을 이룩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통일의 근 본 장애로 되고있는 남조선강점 미군문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반통일 적인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해야 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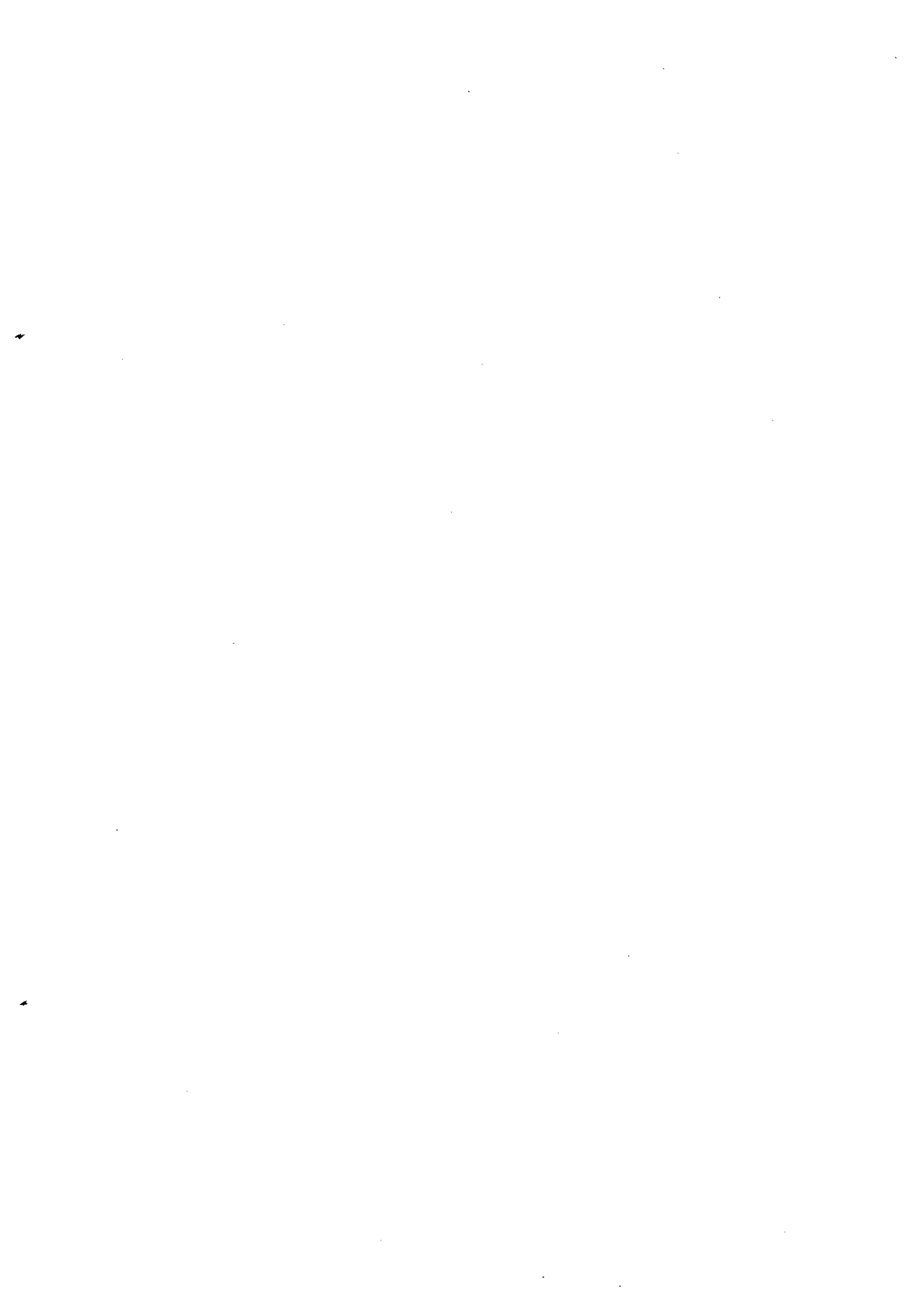
그들은 南北聯合은 “두 당국사이 협의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다면서 “통일민족협상회의 소집”을 要求하고 나섰다. 이러한 北韓이 보인 일련의 反應은 金日成은 여전히 革命的 統一戰略을 고수하고 있음을 立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政府는 安定된 民主體制를 制度化함과 동시에 民族統一을 위한 努力을 꾸준히 경주하게 할 것이다. 盧大統領이 7·7聲명의 六個項을 可視化하는 것과 새롭게 발전시킨 韓民族공동체 統一方案을 野黨들과 社會勢力의 同意를 얻어 具體化하는 것, 또한 統一祖國의 目標文化—自由·人權·幸福이 保障되는 民主國家—를 指向하는 설계를 國政目標로 定하여 國民들에게 統一의 未來像이 實現될 수 있다는 希望과 自信感을 심어주는 것 등의 努力이 진지하게 本軌道에 進入할 때, 그리고 이것이 北韓의 自體變化(“위로부터의 改革”)와 맞물려 進行될 때 民族共同體文化의 形成에 一大轉機를 이룩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함은 南北雙方은 相對方 社會內에서 “아래로부터의 民主化” 運動이나 自由化運動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거나 부추겨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40年間 누적된 相互不信을 조장할 뿐 民族共同體 확산심화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南北韓은 각기 自己體制에 대한 正統性 確保와 信賴感의 획득이 두개의 韓國 固定化가 아니라, 民族統一을 위한 多角的 接觸과 交流의 出發點이 된다는 것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條件이 구비된 후에야 南北韓間의 人的, 文化的 交流擴大가 可能하고 이것은 民族共同體文化를 形成하여 과도적 통일체로서의 南北聯合創設에 寄與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일찌기 金九先生은 “우리 民族의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지고 나서야 땅위의 38선도 撤廢될 수 있다”는 경험적 事實을 밝힌 바 있다. 이 말은 南北統一의 成就是 體制와 理念을 초월한 民族共同體文化의 形成 즉 民族의 마음이 하나로 될 때 비로소 可能하다는 敎訓이 된다.





3. 統一論議와 國民的 合意基盤의 擴充

徐 鎮 英 (高麗大 教授)

目 次

I. 問題의 提起	63
II. 왜 政府의 統一政策은 不信이 되는가	65
III. 第6共和國에서 統一論議의 性格과 問題點은 무엇인가	69
IV. 統一論議의 統一은 可能한가	72
V. 結 言	77

I. 問題의 提起

지난 9월 11일 盧泰愚大統領은 國會에서의 특별연설을 통하여 第6共和國이 추진해 나가야 할 구체적인 統一方案을 제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第6共和國의 統一方案의 특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統一의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의 統一政策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評價를 받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 北韓은 일찍부터 「高麗民主聯邦共和國 統一方案」이라는 포괄적이고 완결된 형태의 統一政策을 제시해 왔는데 비하여, 우리 政府는 나름대로 완결된 統一政策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第5共和國 당시에 제안했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경우도 統一國家의 이상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중간과정을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統一方案으로서 강조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이와 같은 기존의 統一方案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통일의 전 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일단 기존의 統一方案과 비교해 본다면 자기 완결적이고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성격과 내용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韓半島와 世界情勢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여 통일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려고 했다는 평가도 받을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우리 社會一角에서는 「한민족공

동체 統一方案」이 과거의 政府案과 마찬가지로 두개의 韓國을 고착시키는 것이며, 광범위한 국민들의 意見收斂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적 평가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은 9월 14일 勞動新聞의 논평을 통해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분단고착적인 것으로 매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남한을 대표하는 유일한 統一方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南北韓 당국자뿐만 아니라, 政黨, 社會團體, 개별적 人士들과의 폭넓은 政治協商會議를 통해서 다양한 統一方案이 토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北韓의 주장에는 「高麗民主聯邦共和國 統一方案」은 북한을 대표하는 유일한 統一方案이지만,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南韓社會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은 再言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北韓의 비판은 거의 예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北韓뿐만 아니라 우리 社會 一部에서도 政府의 統一方案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에 대하여 회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정책에 대한 國民的 合意의 창출이란 문제는 간단히 넘겨 버릴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첫째, 왜 政府의 統一政策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둘째, 第6共和國에서 통일논의의 성격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진단한 다음, 셋째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的 合意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떻게 이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II. 왜 政府의 統一政策은 不信이 되는가

왜 政府의 統一方案에 대하여 국민들이 不信과 懷疑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된 바와같이 과거의 政權들이 統一問題에 대하여 억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統一問題를 政權的 次元에서 이용한다는 의혹을 줄만한 행동을 취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解放以後 지금까지 歷代 政權의 擔當者들은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제라고 선언하면서도 민간차원에서의 統一論議를 엄격하게 금지해 왔었다고 하겠다. 사실 각종 法律的·政治的 裝置를 통하여 政府는 모든 정보를 독점해 왔을 뿐만 아니라, 民間次元에서 統一問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도 불온시하기까지 하였다. 다시 말해서 統一政策을 政府의 독점적인 영역으로 설정하고 政府의 統一方案에 반대하거나, 그것을 비판하는 개인이나 정치세력을 과도하게 억압·배제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통일논의가 자연스럽게 표출되면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밟지 못하고, 폭발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제로 잠복해 있다가 政權의 이행기에 폭발하는 경향을 보여 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4·19 직후와 第6共和國의 出帆과 더불어 한꺼번에 噴出된 통일논의는 이와 같이 억압되었던 국민적 관심영역이 일시에 표면화된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統一問題가 政府의 獨占的인 領域으로 禁忌視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政府의 統一政策은 비공개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었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항상 突出的인 事件으로 공개되었다. 이를테면 1972년의 南北韓間의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南北共同聲明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나, 또한 그것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에 대하여 國民들이 충분히 納得할 수 없었기 때문에 統一問題를 정권적 편의주의에 의하여 소수의 정권담당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겠다. 물론 統一政策의 성격상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統一政策의 기본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지 않고 최고정책자의 통치권에 의존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統一政策의 정치적 이용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켜 왔다고 하겠다.

세째, 지금까지 정부의 統一政策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민족문제의 해결을 실현하겠다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갖춘 것이었다기 보다는 「북진통일론」과 같이 비현실적인 것이었거나, 또는 「선건설·후통일론」과 같이 현상유지를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1970년대 이전까지 우리政府의 統一政策은 심하게 말하자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自由黨時代의 北進統一論이나 또는 民主黨과 共和黨시대의 「유엔감시하의 南北韓 總選舉方案」과 같은 것을 제안했지만, 그것은 國內外的인 情勢를 전혀 반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統一政策이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反統一政策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국내외적 狀況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政府도 과거와 같이 統一問題에 대하여 더 이상 수구적인 자세를 고집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先平和·後統一의 論理를 開發하였다. 즉 1973년 6월 23일에 發表한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에서부터 1982년 1월에 공포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이르기까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政府의 統一方案의 基調는 「韓半

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남북한의 내정불간섭과 상호 불가침협정의 체결, 단계적인 南北交流의 擴大등을 주축으로 구상됨으로써 과거의 단순한 勝共統一論이나 先建設·後統一論에 비하여 진전된 것이라는 評價도 받았다. 특히 北韓을 괴뢰정권이라고 규정하고 大韓民國의 唯一合法政府論만을 고집하던 과거의 도식적 사고에서 벗어나 北韓政府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南北韓의 共存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이고 점진적 접근의 또 다른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政府의 統一方案에 반영된 진의가 의심받게 되었다. 즉 統一政府를 樹立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남북한의 공존만을 강조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政府의 統一方案은 사실상 분단의 고착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政府의 統一政策은 지금까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억압적이었기 때문에 統一問題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확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統一問題에 대한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가 충분히 전개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기대한다는 것은 緣木求魚와 같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더구나 統一政策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지간에 관계없이 政權의 道德性和 正統性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統一政策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強調해야 할 것은 政權의 正統性和 道德性이 回復되어야 비로소 政府의 統一政策에 대한 신뢰와 國民的 合意도 獲得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政府가 아무리 훌륭한 統一方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안하는 주체인 政權의 道德性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이다.

이런 點에서 볼 때 第6共和國은 과거의 政權과 비교하여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창출하기에 유리한 조건과 상황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은 第6共和國은 維新政權이나 第5共和國과는 달리 正統性의 위기요인을 비교적 덜 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第6共和國이 第5共和國의 연장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 國民들의 자유로운 總選舉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차원에서 正統性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각 분야에서 自由化와 民主化를 부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第6共和國의 統一政策은 과거와 같은 不信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Ⅲ. 第6共和國에서 統一論議의 性格과 問題點은 무엇인가

第6共和國에 들어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統一問題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民間次元에서의 統一論議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와같이 統一問題에 대한 폭발적인 國民의 關心이 표출하게 된 데에는 政府의 主導的이고 주체적인 노력의 결과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政府次元에서도 과거와 같이 統一論議를 무조건 금기시하지 않고 그것을 중요한 時代的 使命으로 인식함으로써 우리 사회 내부에서 내연화되었던 각종 統一論議가 공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따라서 第6共和國에 들어와 統一論議는 百花濟放·百家爭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은 또다른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즉 統一論議가 公開化되면서 그동안 民主化過程에서 숨겨져 있었던 계층적·계급적 갈등구조가 표면화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 統一을 至上課題라고 인정하면서도 어떤 統一을 어떻게 이룩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층적·계급적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衝突할 수 밖에 없으며, 이데올로기적인 차별성이 명백하게 들어 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구태어 강조하려고 들지 않았다. 이점에 대한 강조를 政府는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統一問題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다시 말해 政府는 統一問題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다를 수 있음을 認定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統一이란 어떤 형식으로도든 現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급격한 현상의 변혁을 함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統一論議는 必

然的으로 현실과 체제에 대한 認識의 差別性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第6共和國에 들어와 나타난 統一問題에 대한 날카로운 認識의 差異는, 그것이 단순히 統一의 方法과 方策에 대한 견해차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現代史와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리사회의 균열구조를 표출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統一問題에 대한 國民的 合意는 더욱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우리사회에서 우리의 歷史와 現實認識에 대한 합의를 확충해야 한다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지난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간에 걸쳐 열렸던 國會의 統一政策特別委員會가 주최한 統一政策 公聽會는 이런점에서 두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아마도 우리나라 憲政史上 처음으로 國會라는 공개적인 제도권 정치의 장에서 統一方案과 관련한 다양한 견해들이 개진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안에 존재하는 모든 세력들의 統一論議가 전부 대표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統一方案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거의 망라되었다고 할 수 있다. 4개의 政黨, 7개 社會團體, 그리고 2명의 言論人이 참석하여 개최된 公聽會는 「統一에 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意見을 收斂하며 國民的 合意를 도출하고 統一政策樹立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와 방식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번 公聽會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최소한 統一을 명백히 거부하는 세력은 없지만, 統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公聽會에 참석한 13인의 대표자들은 모두 統一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統一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統一은 제각기 다른 現實認識과 歷史認識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창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번 公聽會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는 統一問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兩極化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한쪽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勝共統一論의 연장선상에서 「감상적이고 이상주의적인 統一지상주의」를 경계하면서 自由民族主義를 바탕으로 한 大韓民國主導下의 統一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같은 體制優越論과 같은 統一觀은 실질적으로 反統一論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면서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의 原則」에 입각하여 民主主義의 統一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統一問題에 대한 날카로운 의견대립은 統一의 方策에 대한 단순한 견해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民族의 分斷에 대한 역사적 인식에 있어서, 그리고 統一問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北韓과 南韓社會, 그리고 美國의 役割에 대한 認識에 存在하는 심각한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확충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책적 의견수렴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現代史에 대한 認識의 統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IV. 統一論議의 統一은 가능한가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統一論議가 전개됨으로써 統一政策에서의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이처럼 각계각층에 의하여 제시되는 統一方案을 統一하지 않고서는 統一問題에 대한 國論의 分裂을 심화함으로써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실 北韓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같은 統一政策에 대한 分裂은 우리의 協商力を 弱化시키고 實質的인 南北對話를 진전시키는 데에도 큰 障礙要因으로 작용할 것이란 점은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統一論議의 統一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과거와 같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견해의 표출을 봉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統一論議를 人爲的으로 봉쇄한다고 해서 統一問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政府가 제시하는 統一方案을 무비판적으로 受容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다. 사실 統一論議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표출을 억압함으로써 오히려 統一論議의 폭발성과 갈등의 정도가 심화되었고 政府의 統一政策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었다는 진단이 옳다면, 앞으로 統一問題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統一論議의 개방화, 공개화,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사회의 各界各層의 다양한 견해가 자유롭게 표출되고 토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國民的 合意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統一論議에 대하여 政府가 自由放任政策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실

統一問題는 모든 국민의 關心事이지만, 또한 모든 국민의 安危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政府로서 統一問題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무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政府의 立場에서 統一問題를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도록 放任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統一問題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창출하는 것도 政府의 責任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多樣性속에서의 統一性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各界各層에서 表출되는 多樣한 見解를 收斂하여 통일된 統一政策을 수립·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창출한다고 해서 모든 國民, 모든 階層과 階級의 見解를 다 受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贊成할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政府의 統一政策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中心的 勢力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政治·社會勢力의 주장도 수립할 수 있는 유연하고도 전향적인 統一方案과 統一論理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第6共和國의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과거의 政府案과 비교하면 훨씬 포괄적이고 유연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몇가지 문제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즉 北韓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세력으로 보는 北韓觀과 民族共同體로 인식하는 北韓觀의 논리적 모순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한반도의 緊張緩和와 직접 관계가 있는 軍事問題의 해결에 대한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은 앞으로 더욱 보완해

야 할 부문이라고 하겠다.

둘째, 各界各層에서 開陳되는 多様な 統一論議를 어떻게 수렴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統一問題에 대한 國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政治人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확인하기 위하여 國民投票方案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統一政策이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하겠다. 그보다는 國民의 의견을 대변하는 제도적 장치인 國會의 機能과 役割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國會는 거의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점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간에 대단히 비정상적인 것이었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의 최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統一政策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國會가 배제되고, 行政府에 의하여 專斷되어 온 관행은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창출하려는 政治圈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第6共和國에 들어와 國會統一政策特別委員會를 설치하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公聽會를 개최하여 다양한 統一論議를 공개적이고 政治的인 場으로 이끌어 내려고 한 것은 높이 評價할 만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國會에서 統一政策과 관련하여 公聽會를 개최한다고 일찍부터 합의해 놓고서도 막상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우리 社會의 여론이 비등해지던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여름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다가 政府의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발표하기 직전에서 서둘러 公聽會를 개최한 것은 統一論議를 적극적으로 주도·수렴하려는 자세라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國民의 견해를 수렴했다는 명분만을 찾으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統一政策의 正當性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國會次元에서 다양한 토론이 전개되고 統一政策의 基本方向이 제시될 수 있도록 政治圈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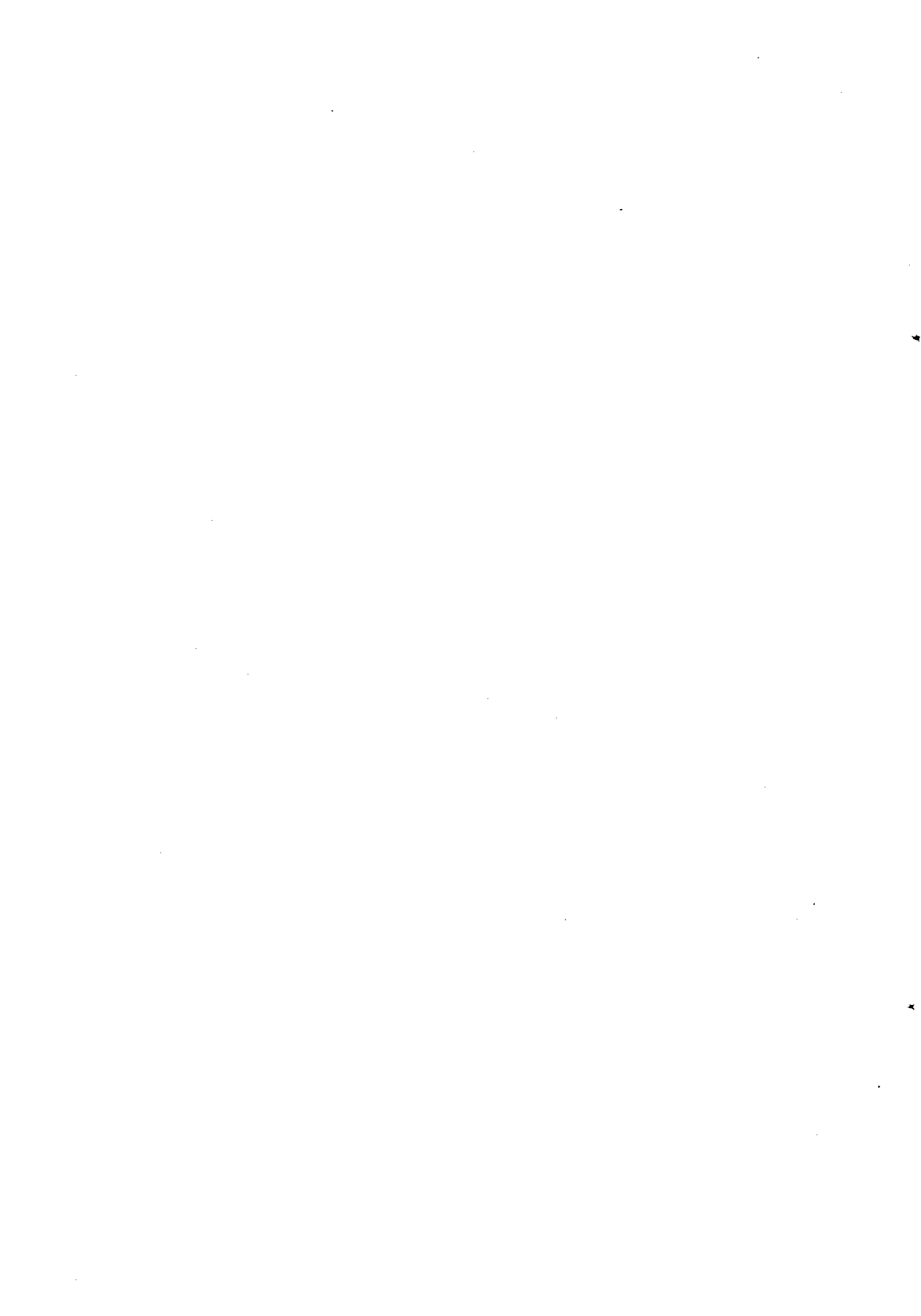
세째, 政府의 統一政策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國土統一院의 위상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 政府의 조직체계내에서 統一院은 예산이나 인원, 그리고 政治的인 役割에 있어서도 가장 허약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統一政策의 기본골격은 統一院이 주도하여 수립했다기 보다는 國家安全企劃部라든가 또는 國防部와 같은 소위 권력기관의 영향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하겠다. 물론 이와 같은 情報機關 및 國家安保와 관련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政府의 統一政策이 情報的·安保的 次元에서 결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統一院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統一問題는 단순한 대북한 전략전술이라기 보다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고, 또한 체제적인 차원에서 우리사회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계급적 연합을 구축하고 政治的 체계모니를 형성하는 작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統一院의 政治的 役割은 대단히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끝으로 民間次元에서 統一論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政府는 각종 자료의 공개와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第6共和國에 들어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北韓 및 社會主義圈의 國家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法律的·制度的인 차원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공개와 토론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國家保安法과 같은 것을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 개정해야 하고 南北關係 및 社會主義國家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法律的 장치의 마련등을 시급히 수행함으로써 民間次元에서의 統一論議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法律的·制度的 장치를 개혁하여 민간차원에서 統一論議가 정확한 情報과 判斷에 기초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더불어, 政府는 民間次元의 각종 專門機關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統一論議가 그야말로 감상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統一問題는 누구나 제각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또한 그것은 高度의 專門性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政府는 민간의 전문적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統一論議가 피상적인 次元에서 진행되는 것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統一問題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계층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政治的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政府의 책임있는 역할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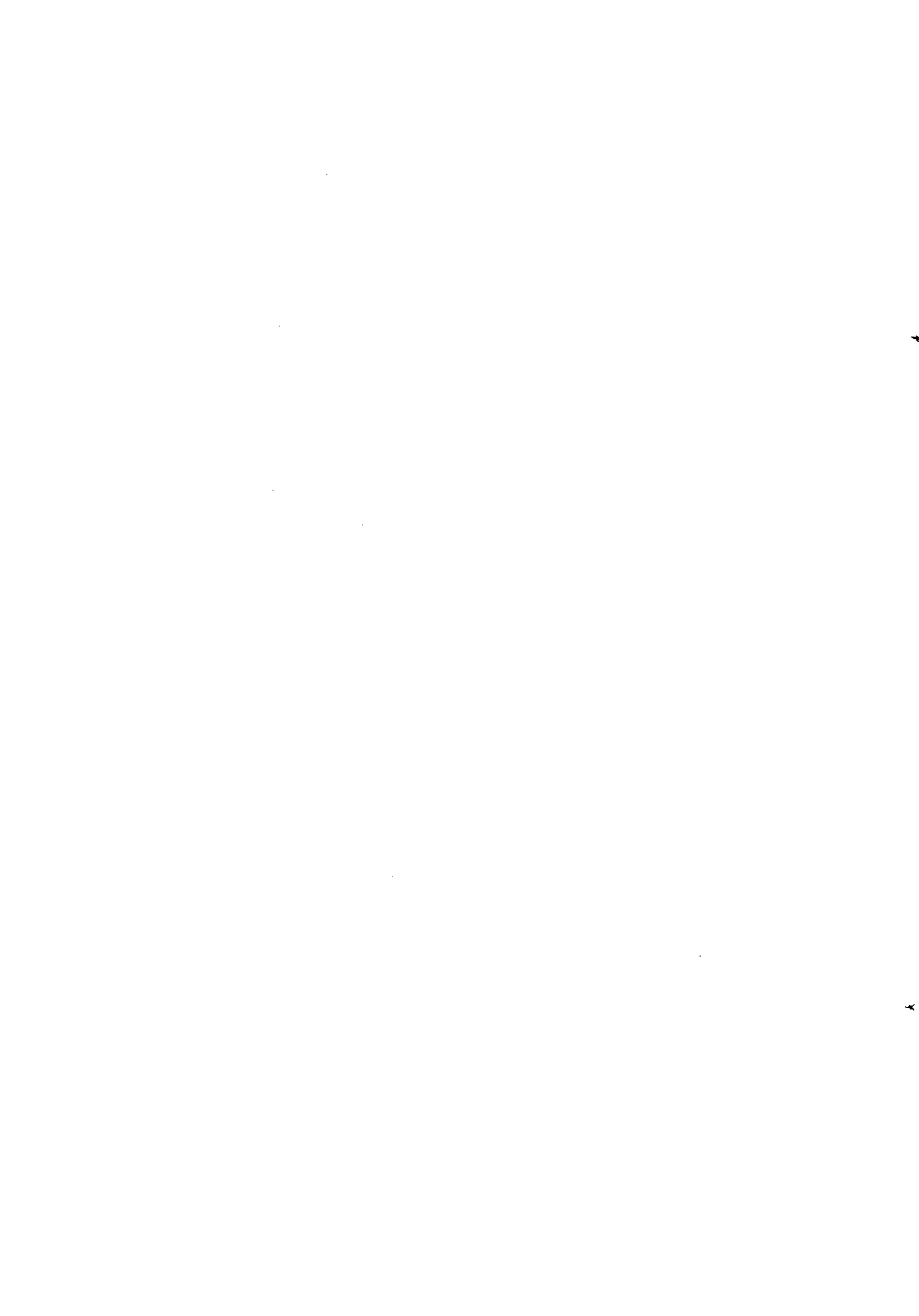
V. 結 言

政府의 統一政策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이 글에서 주장하려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즉 統一問題에 대한 國民的 合意는 홍보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第6共和國의 正統성을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대두하는 두가지 문제, 즉 民主化와 統一民族國家의 建設이란 역사적 인식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政府의 統一政策은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야 하지만, 그것은 모든 국민의 모든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第6共和國이 지향하는 民主的 社會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계급과 계층들의 이데올로기의·政治的 체계모니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樹立·執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政策은 단순한 對北韓 政策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구상을 제시해 주는 것이어야만 하고, 統一政策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民族이 당면하고 있는 歷史的 課題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충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統一政策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해야 한다고 하겠다.



討 論 內 容

- 司會：尹炳益(統一研修院)
討論：高性俊(濟州大)
金恒元(濟州大)
孫基祥(中央日報)
申正鉉(慶熙大)
梁好民(國土統一顧問)
呂永茂(東亞日報)
尹璟泰(南北對話事務局)
尹謹植(成均館大)
李三悅(崇實大)
李容弼(서울大)
鄭大圭(統一研修院)
鄭用吉(東國大)
河龍出(서울大)



尹炳益(司會): 지금부터 討論을 시작하겠습니다. 討論은 한 분이 10분 내외로 해주시고 주제발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南北關係의 상황등을 고려하셔서 타개책이라고 그럴까 그런 관점에 역점을 두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발언하실 순서는 편의대로 해주시고 일단 한 분씩 말씀이 된 다음에는 시간여유를 봐서 自由討論 形式으로 활발한 논쟁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尹謹植: 먼저 말씀하신 바를 듣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論議의 초점에서 탈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全寅永教授님의 발표는 南北韓의 視角 및 認知의 비교인데, 그 차이점들이 구체적으로 基本概念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東西獨의 경우에도 그러한 차이점들이 있었던 것이고 현재에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차이점들이 없으면 이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東西獨의 경우 그러한 견해의 相異性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基本條約에 署名하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다음 순서대로 말하여 金甲喆教授님의 발표에 관해서 말하겠습니다. 金교수님의 해석대로 徐鎭英教授님의 글과도 연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北韓의 경우 '民族革命論'에 입각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民族革命論'은 '南朝鮮 革命論'이라고도 표현되고 있지요. 이처럼 北韓의 경우에는 '革命論'에 입각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개념은 무엇인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까 李長官님께서도 東西獨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의 차이점을 지적했는데 그 차이점들을 인

정하는 경우에도 제기되는 문제는 本質的으로 차이점이 없을 것 같아요.

즉, 北韓이 ‘民族革命論’을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自決權概念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그 경우 자결권의 문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北韓이 요사이 제기하고 있는—金甲喆教授님의 발표에서 얘기하고 계신—“民族統一協商會議” 소집요구에 대해 民族自決權을 내세우면서 그러한 회의 자체가 민족의 자결권을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결권 개념을 재검토해 볼 필요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自由’, ‘人權’, ‘民主’라는 개념들을 자결권이라는 개념에 연결시킴으로써 냉전적인 이데올로기로서 ‘自由’개념이나 이른바 “主體思想”의 선전적 작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統一方案에는 ‘統一’ 개념 유지를 위한 개념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自決權 개념은 북한의 ‘民族革命論’에 대한 民族自決權 또는 ‘民主化’라는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를린장벽이 개방된 후 유럽을 방문했었는데, 그 때 서독 정치가들과의 대화들에서도 그들은 원래 브란트의 기본개념인 自決權의 문제를 제기하더군요. 그런 점에서도 그 개념을 생각해 볼만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自決權과 관련되는 것으로 ‘自由往來’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南北韓間의 대화관계의 전개과정에서 보면 北韓측이 한때 ‘自由往來’ 개념을 들고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南韓은 그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사정은 역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韓國側이 ‘自由往來’ 개념을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표현하여 北韓에 제의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개념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제안들을 할 때 北韓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東歐에서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 ‘自由往來措置’, 어떻게 보면 ‘民主化’다 뭐다 합니다마는 西方과의 관계면에서 보면 완전히 왕래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원칙면에서는 ‘自由往來’가 허용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西方側으로 여행할 수 있는 조건이 旅費에 해당하는 달러를 가졌느냐 안가졌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旅費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통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自由往來’ 개념을 기초로 하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특히 정부레벨에서의 協定締結을 가능케 함에 초점을 맞추어 제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徐教授님의 발표를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徐教授님의 결론 부분에서는 아주 示唆的인 언급들이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경우 統一論議와 國民的 合意 基盤의 확충이 그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徐教授님의 논의는 통일논의의 兩極化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입장에서의 접근인 것 같아요.

그 경우에 국민적 합의 기반의 확충-물론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 다마는-은 너무 어려운 표현인 것 같고, 통일논의의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통일논의의 통일은 가능한가 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상당히 徐教授님의 다른 진술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통일논의가 오늘날 양극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세계적인 긴장완화 과정에 따라 겪어야만 하는 역사적 과정이라고 볼 것 같으면, 그것을 ‘分裂’이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이므로 그 과정을 어떻게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徐教授님의 경우 애매한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7페이지를 보면 第6共和國이 지향하는 民主的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계급과 계층들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헤게모니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도리어 통일논의가 개방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매체들의 문제라고 봐요.

대중매체들에서 요사이 주도하고 있는 기사들을 볼 것 같으면, 그 기사들은 주로 ‘脫이데올로기論’과 ‘體制收斂論’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과연 그런 것인지? 현재 社會主義 사회들에 있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平和共存’ 정책이 과연 ‘이데올로기적 공존’ 정책이냐의 질문이 그것이지요. 이데올로기적 공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변화들을 우리는 두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른 바 西方側에서 크게 말하고 있는 ‘社會主義의 危機’로서 해석할 수 있는 측면과 또 하나는 도전으로서의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변화’의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도리어 ‘脫冷戰化’ 경향, ‘脫冷戰化 強化’ 경향이라는 표현들이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함에 알맞은 표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마치 체제의 상이성을 초월한 ‘脫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강한 민족적인 감정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지나친 감정이 도리어 지배적으로 나타날 때 현실을 의식할 수 없는 위험성이 강

화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점은 徐教授님의 글에서도 간접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겪게 될 문제는 오히려 體制收斂論이나 이데올로기의 終末論이 그들의 이론을 실증하기 위해서 인용되는 사실들과 경향들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정치가 문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西獨의 브란트는 70년대의 그의 정책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 즉 “당산은 體制收斂論에 입각해서 당신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體制收斂論과 같은 그러한 이론에 따라서 정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이론이 그 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인용되는 사실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창출할 수 있을까 라는 시각에서 政治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이론에 따라서 政治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現實主義的’인 정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리어 우리나라에서 요사이 大衆媒體들에서 지배하고 있는 ‘脫이데올로기論’ 또는 ‘體制收斂論’적 보도나 해설들은 그 자체가 궁지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론들이 주장하는 사실들을 표현하려면 ‘緊張緩和’라든가, ‘平和共存’이라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러니까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평화공존 개념과 西方側에서 그것에 대응하는 하나의 긴장완화 정책의 기본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개념들이 맞물리어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民主化 과정이나 北韓에 있어서 民主化 과정이 동시에 요청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개념 또는 그러한 것에 대한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교육등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 徐教授님의 글에서 示唆的인 것은 페이지 13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을 볼 것 같으면 아래에서 네번째 줄에 北韓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敵對的이고 競爭的인 세력으로 보는 北韓觀과 民族共同體로 인식하는 北韓觀의 論理的 모순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직접 관계가 있는 軍事問題 해결에 대한 입장이 명백히 정리되지 않는 점등은 앞으로 더욱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지적에 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겠습니까마는 李長官이 지적한 바 대로 그것을 보완할 시기가 아직 아니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입장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될 수 있는 것은 社會主義 사회들에 있어서의 오늘날의 변화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전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카알 포퍼가 얘기하는 ‘開放社會의 理論’은 서방사회에만 있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그 이론은 反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와 同一化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東歐 共產主義 국가들에 있어서의 변화들은 도리어 그 사회들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開放社會化’되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 점에 유의하면서 우리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또는 河教授님이 앞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시나리오 같은 것을 구상함에 있어 상당히 배려하여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입장이 굉장히 積極的이고 攻勢的인 입장을 취함에 있어 우리의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國內 政治的인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西獨의 경우 통일개념을 유지하기 위해 自決概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東獨의 경우는 그에 대한 얘기가 부분적으로 東獨안의 일부 세력에 의해 서만 논의되고 있을 뿐 집권층에서는 아직 그것이 논의될 단계가 아니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甲喆教授님의 발표에 있어 매우 示唆的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北韓體制도 변화할 수 있다는 명제입니다. 北韓의 정책적 입장이 현실적으로 변화할 수 없다는 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그 체제를 전복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경우에만 우리의 적극적인 개념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식사시간에 말씀드렸습시다마는 폴란드의 정치가들이나 폴란드 外務部次官도 그 가능성을 긍정했고 폴란드 前 人民代表會議 議長도 길게 잡아 北韓이 세계적인 東西 긴장완화 과정에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데에는 5~6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示唆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시다마는 그 전에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측에서 헝가리의 경우를 예를 들어 질문했거든요. 우리나라와 헝가리간에 外交關係가 체결되었을 때 北韓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폴란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그것은 벌써 北韓측이 변화를 認知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더군요. 그 점에서 北韓이 東歐에서의 변화에 당황하고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변화를 배려하고 있든가 그 두가지중의 하나를 뜻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共產主義 국가의 정치가들의 표현이니까 100%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尹炳益：申正鉉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申正鉉：저는 되도록 10분 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말

씀을 들으면 결국 우리의 統一方案이나 政策問題가 두가지 수준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국내의 정치의 수준이며 또 하나는 對北關係, 南北關係에서의 문제인데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국내정치문제와 연관시켜서 우리 통일정책을 생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로 대북관계와 연관시켜서 우리 통일정책을 얘기할 때 어차피 저쪽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또 저쪽에서 자기들이 이제까지 고수했던 통일정책의 목표라든지 방향을 수정할 리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대북관계에서 實現性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회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 南韓내에서의 국내정치와 연결되어서 어떻게 國民的인 합의를 끌어내고 여기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것으로는 북한이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협상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때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통일정책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合意點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통일정책에 대한 政治化라고 해도 좋고 통일정책에 대한 국내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두가지 얘기를 드리면 6共和國에 들어서 이제 새 통일방안이 나왔는데 지금 발표하신대로 여러가지 具體性을 띠고 提示가 됐다고 보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개념상의 애매모호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민들이 새로운 통일방안을 접할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혼돈을 일으킬 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촉구하기가 매우 힘들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對內的으로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라든지 支持를 어떻게 끌어내겠는가? 물론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방

향이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과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인가? 더군다나 통일문제가 政治化되어 세력간 또는 계층간의 계급간의 여러가지 다른 방안들이 제시되고 거기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고 다른 전략이 나오는 상황에서 새 통일방안이 갖고 있는 개념상의 애매성이 오히려 혼돈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내부에 통일문제를 둘러싼 분열이라든지 갈등을 더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새 통일방안이라고 할 때 과거의 통일방안하고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돼야 될 것 같아요. 새 통일방안이 내세우고 있는 한민족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의 성격이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理想的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사회내에서 자유로이 토론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南北聯合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南北聯合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들의 견해를 보면 이것이 北韓의 聯邦主義 요소도 포괄하고 있는 것 같고 英國의 英聯邦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특히 北韓의 聯邦制 통일방안을 많이 수용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왜 이것이 南韓에서 특별한 것으로 제기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聯邦制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처럼 중요한 개념들을 막연하게 해놓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남북연합 체제 형성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종래의 우

리 통일 방안이 고수했던 段階論的, 漸進的 接近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非政治的인 영역에서부터 정치적 영역으로 가는 漸進主義, 機能主義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까 金甲喆教授께서도 文化目的을 실현하는 그런 文化共同體에서부터 政治共同體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종래에 있었던 우리의 입장을 말만 바꿔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어떤 文化的, 非政治的, 非軍事的 측면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군사적, 정치적 문제어로 접근하는 것이 물론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닌데 과거의 것과 비교해서 새롭다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오히려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더욱 더 중요한 문제는 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후 可視的인 실천적 조치들이 하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第6共和國에 들어서 새로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일방적인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의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아무런 法的, 制度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통일방안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는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새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國家保安法」등과 같은 냉전적 체제하에서 형성되었던 법체계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正當化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새로운 통일방안은 더욱 더 혼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방안을 생각할 때 그러한 것을 정부 차원

에서 좀 더 분명하게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그러한 틀속에서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국내 政治狀況과 관련해서 문제를 접근해 볼 때 앞에 徐教授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유도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상당한 정도로 구조적인 分化와 구조적인 갈등 현상을 露呈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이 어떻게 해서 국민적인 支持와 合意를 도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徐教授님의 경우에는 결국 사회중심 세력의 支持와 이들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통일정책을 구성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 밖에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 경우에 과연 사회중심 세력의 지지를 받고 거기에 기반을 둔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정당간에 공개적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제시되거나 혹은 政綱, 政策으로서 제시되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政權을 형성하게 되면 그것이 통일정책이나 방안에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政權을 잡은 다음에 정권형성 초기에 새 통일방안이라고 해서 내놓게 되는 경우인데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비판이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 이제까지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를 어렵게 한 것이라고 봅니다.

第6共和國의 통일정책도 부분적으로 과거와 달리 公聽會라든지 國會 統一特委會에서의 논의라든지 그런 것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意思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중심 세력에 바탕을 둔 통일정책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이 사회중심 세력의 이데올로기나 이익을 반영하고 그것에 바탕을 둔 政權이 통일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할 때 이것은 결국 政權勢力의 이익을 반영하는 통일정책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말하자면 사회중심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애매합니다마는 그것에 바탕을 둔 政權이 통일 정책을 만들어서 그러한 세력의 지지를 받아 통일정책을 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런 政權勢力이 얼마만큼 사회에서 正當性을 갖는 그런 세력으로 인정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와 또 아니면 그런 政權勢力이 어떠한 편협한 이해관계 같은 것을 정당화시키는 방법으로서 통일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는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중심 세력이 그의 이데올로기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형성시키고 그 정권이 그러한 세력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통일정책을 끌어 나간다고 할 때 상당히 正當性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바꾸어 얘기하면 그 정권의 正當性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일정책이 사용된다고 할 때 과거의 경험과 어떤 점에서 크게 다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 는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입니다마는 南北聯合의 개념상의 문제와 더불어 南北聯合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全教授님이 말씀하신 英聯邦의 경우 독립된 국가가 연방형성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金甲喆教授님의 마지막 부분에서 聯合의 출발점으로 별개의 體制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體制의 출발점이라면 1민족 2체제라고 하는 中國式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국가가 출발점으로 상정된다면 北韓에서 얘기하는 分斷의 永久化라든지 2개국가 음모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어도 논리적으로 명백하게 설명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司會者께서 代案이 없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하면 역시 국내정치면에서 앞으로 통일정책을 좀 더 통일성있게 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대통령 밑에 실질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어떤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와 같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당이나 사회단체 같은 것을 대표하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政策諮問委員會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행하고 있는 對北協商이라든지 통일문제 논의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체적인 방향의 設定이나 부문별 조정, 통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赤十字會談이라든지 體育會談이라든지 또는 當局者會談 및 國會會談 등이 분야별로 별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전략적 구도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행 政府機構내에서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는 對北協商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統合機構 같은 것이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徐教授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統一院의 역할이나 지위를 강화시켜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분히 행정기구로서의 統一院의 위상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편협한 黨派性이라든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 방향에서 통일문제를 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천명씩 모여서 하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고 소규모로 구성되어 실제로 大統領의 통일정책의 결정이나 對北協商에 대한 중요한 諮問이나 調整을 행할 수 있는 諮問機構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尹炳益 : 자연스럽게 바톤을 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容弼教授님 부탁드립니다.

李容弼 : 세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다기보다 제가 느낀 바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漸進的이고 機能統合的인 관점에서 考案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70년대 전반에 우리의 통일방안을 처음 보았을 적에 소위 西歐社會에서 등장한 기능통합론적인 발상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접어들면서 共產圈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특히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한반도의 문제해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도 간헐적이거나 꾸준하게 진전되어 왔고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감이 다소라도 완화되어 간다면 역시 기능통합론적 접근의 妥當性이나 適實性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더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라고 한다면 東西獨관제의 문제해결방식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브란트 전 서독수상은 동서독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 주변강대국들에게 우회적으로 접근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접근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統一院에서 제의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냉전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구상된 것이라고 보겠으며 이와 같은 발상 자체가 역시 기능통합론적 관점에서 남북문제를 투시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남북관계가 제로섬상황(zero-sum situation)에 놓여 있었으나 앞으로는 넌 제로섬 상황(non-zero-sum situation)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갈등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체제 자체의 변화에도 관련이 있지만 역시 우리 체제내적인 안정과도 함수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金寅永教授가 우리 통일방안의 理念的 측면을 다룰 때 간간히 연결되는 명제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남북관계와 관련된 갈등구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주변국가들의 우리 통일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가를 새롭게 평가해 볼 필

요가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전되고 있는데 이러한 진전상황이 남북관계 또는 통일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체제가 더 이상 閉鎖的으로 나갈 수는 없는 이상 언젠가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간에 지금부터라도 기능통합적인 측면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假定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東西獨 관계에서 볼 수 있고 또한 EC에서 발전되어온 과정을 보더라도 전반적 추세는 기능통합적 추세가 지배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5년이 될지 5년이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간 갈등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통일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탐색, 모색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統一院長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의 태도와 내용에 따라서 신축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에치오니와 같은 기능통합론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통합에는 抑壓的인 측면, 公利的인 측면 그리고 規範的인 측면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제들을 우리의 남북한 관계에 적용시킨다면 매우 흥미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 관계를 슬기롭게 다룰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남북관계의 문제는 북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체제 자체에 대한 안정기조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또 동시에 체제수행능력을 얼마만큼 강화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통일의 방안을 構築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10년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훨씬 북한도

신축성있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 北韓이 3일후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동구라파나 소련에 있어서는 우리의 통일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논평하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남북한 事情에 정통한 사람들은 우리의 통일방안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評價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해결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서 統一院長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名分에만 집착할 뿐 協商의 테크닉이라든지 기교적인 면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李長官께서도 얘기했지만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는데만 시간을 보내고 실질적인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는 노력이 덜 집중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統一院에서는 이런 협상이라고 할까 흥정에 대한 테크닉 그 자체도 연구 개발해서 그것을 남북대화나 협상에서 응용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結論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시 남북문제는 우리 체제내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체제내적인 문제가 어려울 때는 북쪽이 그렇게 진지하게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尹炳益 : 고맙습니다. 그러면 옆에 李三悅教授님께서 바톤을 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李三悅 : 미리 말씀해주신 분들하고 좀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세가지 정도로 문제점과 또 생각해야 할 그런 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한 試案으로서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생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름도 괜찮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가지 示唆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과거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보다는 내용이 어쨌던간에 조금 더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명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앞에서 지적됐지만 그런 명칭이 가져오는 여러가지 당위성 때문에 내용이 아직 모호한 것에 대한 비판은 금할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 첫번째 포인트는 徐鎮英教授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이 방안이 작성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논의였고 절차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역시 이번에는 조금 더 절차를 중요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통일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도 환영을 받을 수가 있었고, 긍정적인 면에서 통일얘기도 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정부가 통일방안을 내놓게 되면 굉장한 의미를 갖지만 적어도 작년 특히 7·7 선언 이후의 상황에서 국민적인 통일논의가 이렇게 활발해지고 여러가지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통일방안의 제시나 발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국민적인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상 국민의 無言의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문제를 가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민주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는 정말 북한

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최종의 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급히 통일방안을 내놓을 수가 없고 좀 더 의견수렴과정과 여론의 취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정부의 통일안도 조금 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政府案이 나오기 전에 民正黨案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대로 실현되든 안되든 여러가지 방안들이 在野의 여러 단체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는데 執權與黨으로서의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執權黨의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政府案이 나오고 與黨은 이에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政府案이 제시되기 전에 執權黨案이 제시되어야 하며 政府는 이를 포함해서 在野에서 제기되는 방안 혹은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부의 案을 제시하는 의사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서로 의견의 차이점만을 부각시키게 되고 이것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北韓에서 고려연방제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논의가 된다는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통일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경쟁적인 방안, 저기에 대응하는 방안 이것에만 치중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민족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해서 지금 당장 구체적인 설계가 다 된 방안이 있더라도 방안, 방안 하면서 방안을 내세우기 보다는 통일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생각,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발표만으로도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 완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둘 부분은 남겨 뒀어야만 하지 않느냐, 이것이 너무 완결적으로 돼도 곤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東西獨관계는 우리하고 다르지만 저는 東西獨에서 그렇게 자기 완결적인 통일방안을 내놓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헌법에다 통일은 우리의 최종 목표다라는 목표설정만 해놓았을 뿐입니다.

지금 韓首相이 몇가지 방안을 지금 단계에서 성급하게 내놓았지만 저는 이것을 韓首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基民黨이나 韓의 것이 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독일정부의 방침이라든가 西獨전체의 합의를 이루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議會民主主義 제도니까 예를 들면, 누구의 방안, 할슈타인 원칙, 누구의 원칙해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 중의 하나로서 논의될 것이기는 하지만 절대 정부의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도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방안 방안 하면서 성급하게 완결된 방안을 내놓는 것이 통일정책이나 통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그런 요소는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理念에 관한 부분인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념 부분이 무엇이나 오늘 이런 논의를 하고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이념 부분에 있어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 사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통일 민족국가를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신중하고 여러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통합해서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 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것의 성격을 밝혀 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의 案이고 李長官님께서도 完決的이라기 보다는 開放的이라고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 방안을 눈여겨 보면 수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수정하면 그 방안자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자주, 평화, 민주라는 것을 이념이라고 할 때 물론 방안에서 이것이 이념이다라고 못박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자주, 평화, 민주는 이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용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이념적인 규정이 있지 못하고 대부분 방법적인 성격에 불과합니다. 즉 이념적인 성격이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民族自主라고 할 때도 이것이 우리 민족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 강대국 사이에서 불력권 속에 나누어 있는 우리 현실에서 民族自主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규정되어야만 이념적인 성격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관계속에서, 체제 불력권 속에서, 우리 민족의 存立과 利益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분단 극복을 위해서 불력권의 해체, 中立化의길 같은 것도 생각하는 民族自主나 이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이 방안은 어떤 언급이나 혹은 내용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平和 뿐 아니라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平和를 실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平和의 共同體를 어떻게 만드느냐, 平和의 共同體를 가지고 우리의 통일방안이 지향하는 것이 이념적으로 나와야 할텐데 평화라는 말, 선언 혹은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말만 있지 우리의 敵對關係나 갈등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면서 하나의 平和共同體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

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民主라는 것도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이념이지만 여기에서는 민주적인 방식이라는 의미가 대단히 짙은 것 같습니다.

남북의 異質的인 체제와 이념들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통일시키느냐 하는 그런 통일의 이념으로서의 민주, 그 이념적인 성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일방적으로 自由民主主義 體制다 하는 것으로서 해석이 되고 규정이 된다면 이것은 남북 모두에게 하나의 이데올로기나 체제를 강요하는 성격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대단히 좁게 의미된 민주라는 의미가 되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民族大團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휘할 수도 없는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나, 인권 혹은 행복이라는 것이 한민족공동체의 이념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미에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민주적인 통일국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自由, 人權, 幸福 이것이 민주주의 이념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과거에는 民族, 自由, 福祉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理念으로 이것이 남북을 다 같이 包括할 수 있는가 남북의 이념들이 합의될 수 있는 그런 민주 통일국가의 이념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 것을 일방적으로 한번 試案으로 내놔 본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실 幸福이라는 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科學的인 얘기도 아니고 어떤 歷史的인 의미를 가진 용어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것을 내놓고 볼 때 이것 역시 우리가 西方 資本主義 體制의 가치이며 이념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한쪽

의 이데올로기만 강조했다는 비판을 막을 길이 없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공산권이나 저쪽에 대해서 자유나 인권을 강조해야죠. 그러나 저쪽에서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하겠느냐, 즉 그 이념속에서 왜 민족 자주성은 빠졌는가, 왜正義나 平等의 이념 혹은 참여의 이념은 빠졌는가, 또 국내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표현들이 왜 빠졌는가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李長官님께서 이제는 이쪽에서도 재야나 혹은 기독교에서도 자유나 인권 같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것은 가령 우리가 NCC선언의 다섯가지 원칙 차원에서도 民族自主 原則이나 혹은 人道主義 原則, 平和, 信賴, 交流 그리고 民主的 參與 原則 이 속에서 통일논의의 자유화라든가 민중의 자유와 복지라든가 혹은 人權이 체제나 이념보다 우선적으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이런 주장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 포괄적으로 소개가 안되고 일방적으로만 美軍撤收 얘기나 平和協定이나 이런 것만 자꾸만 얘기가 되어서 조금 오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통일방안에 있어서 기능주의적인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능성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혹은 그것이 잘 못 되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기능적이라면 혹은 기능주의가 아니라 기능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기능적일 수 있는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거기에는 역시 구체적인 과정이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기능적이라고 할 때 무엇을 위해 기능적인가 하는 것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통일을 이루는 기능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통일은 먼 장래로 미루고 현상을 고정시키고 현상을 안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능적인 방법인가, 이 모델이 정말 동서독에서처럼 이제까지의 분단의 안정화라든가 평화적 관계의 수립이라는 면에서의 기능적인 방법인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까지 나온 정부의 통일방안 논의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개선이나 거기에 대한 반성이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東西獨의 예를 든다 하더라도 東西獨은 나름대로 그 시기에 할 수 없이 1민족 2국가의 모델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분단고착의 그런 모델을 이룩했고 평화정착이라는 의미에서의 기능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가령 오늘날처럼 東歐의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東西獨의 통일가능성의 문제가 논의되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모델이라는 것은 逆機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崙首相이 저렇게 얘기하지만 저것은 基本條約에 위배되는 얘기고 저렇게 고정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통일의 기회가 와도 통일을 못하는 오히려 逆機能적인 것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지향하는 이 기능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逆機能이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南北聯合問題인데 이것이 지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하나의 중간 과정으로서 상당히 오래 가야 할 과도적인 단계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1민족 2국가의 南北聯合이라는 단제가 거의 半永久的인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정말 두개의 국가 두개의 체제가 거의 외국의 관계처럼 半永久的인 관계로 된다고 할 때에 제3단계에서 논의되는 1민

즉 1국가 1체제라는 것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선언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의 이 履行關係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아니면 구호로만 내용은 얘기인지 도대체 이 방안 자체를 가지고서는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國會을 兩院制로 하고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통일민주공화국이라는 최종 단계의 통일국가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신있게 보여 줘야 합니다. 정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남북연합에서 통일 헌법으로까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이 기능적인 모델 전체의 과정에서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모순은 2단계와 3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금의 현단계에서 두번째 단계로 가는데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현실성있는 방안이 되려고 하면 현재의 分斷構造와 敵對的인 관계, 우리의 상태는 사실 냉전적인 정도가 아니라 준 전쟁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南北聯合의 관계로까지 나가느냐 여기에서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선언 혹은 남북교류의 상당한 부분이 남북연합 이전에 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합이 돼야만 가능한 것인지 이것의 위치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조금이나마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비중을 가지고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내용은 것인지 의심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현 단계에서 이 軍事問題와 南北交流問題가 어느 정도로 실현되어야 남북 연합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과

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결국 과정상의 문제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自己完結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自己矛盾的인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尹炳益: 고맙습니다. 동아일보에 계신 呂永茂先生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呂永茂: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李三悅교수님과 앞서 여러 선생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全寅永教授님, 金甲喆教授님, 徐鎭英教授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내용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생님의 논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나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독후감이라 할까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 수렴문제가 앞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식이 아니고 統一特委에서 토론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결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국회에 報告, 통과하는 그런 정도라도 국회라는 기능 장치를 여과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李洪九 統一院長官께서도 지적을 했고 또 여기에 金甲喆교수님, 全寅永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남북연합문제에 관해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Commonwealth라고 번역을 한다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역시 Confede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Commonwealth라는 것은 영국여왕의 왕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6개국이라는 많은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국들은 다양하게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大小低開發國과 선진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적으로나 이데올로기면에서도 광범하고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의 통일문제라는 것은 1:1의 두개의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Commonwealth라고 번역하는 것이 개념 혼동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장치 또는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에서 내세우는 고려연방제에 근접한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북한 통일방안에 가깝게 다가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체제가 완전 통일국가로 나아감에 있어서 남북연합이라는 것이 미발달의 A단계로 본다면 좀 더 통합된 단계가 高麗聯邦制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방안은 과거에 비해 좀 더 연방제 수용여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여지를 발휘할 때에 북한과의 절충 가능성이라고 할까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련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왔을 때 이것을 한번 토론해 볼 만한 것이라고 북한에 권유했다는 보도를 보더라도 聯邦制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총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과 절차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군데 논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역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人權思想이라든지, 情報, 通信思想 이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徐教授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북한 자료 및 이데올로기에 관한 자료 즉 禁斷의 자료라고 할까 이런 것의 보다 과감한 개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써 적절한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론 수렴도 수월하지 않을까, 우리가 북한이라든가 북방을 알아야만 우리의 통일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자세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南北赤十字會談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마는 「꽃피는 처녀」 공연 문제까지 우리쪽에서 양보하면서 회담을 성사시킬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데올로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방의 브라운관을 통해서 방영할 수 있겠느냐 등등 그런 예민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것이 안된 것으로 압니다.

한편에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북한자료 소지라든지 利用을 國家保安法이라는 이름으로 구속하고 처벌을 하는 기사가 요즘 자주 신문지면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꽃피는 처녀」 공연 즉 북한의 선전 문예물은 공연까지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학생들은 잡아 가둔다는 이런 이중기간, 즉 國家保安法의 존재, 이것이 南北對話를 진전시키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한계랄까 걸림돌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합니다. 南北對話를 보다 진전시키고 북한을 폐쇄와 고립, 혹은 개방의 공포로부터 탈출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걸림돌인 이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개혁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國家保安法을 다 없애자는 그런 얘기를 안합니다. 다만 남북통일 문제를 푸는 남북대화 분위기나 긴장의 해소를 도와주기 위해 不告知罪라든가 고무찬양이라든가 이런 조항만은 삭제하는 제도적 개혁이 선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金甲喆教授나 徐鎭英教授님께서도 통일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이 중요하며 이것은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제시했습니다. 통일의 미래상과 관련해서 북한이라는 것은 폐쇄와 고립속에서 끄떡도 않고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만

이라도,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自由와 人權, 平等, 福祉 이런 것이 먼저 보장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실천의지를 정부와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부의 통일외지나 통일방안이 신뢰성을 갖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국가의 미래상 즉, 미래의 새로운 「체제모델」의 실현은 북한보다 남한이 먼저 시범을 보여 줌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7선언 정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國民輿論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수렴을 하고 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과감하게 開放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지금 서울 교보문고에 가보면 이데올로기 문제, 북한서적 같은 것 이런 것이 웬만한 것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더러 사봅니다마는 그런데 걸어서는 북한관계 서적들이 공개적으로 다 나돌아 다니는데 법적으로는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북한자료를 소지하거나 읽는 사람들이 구속되고 감옥에 간다면 진정한 통일논의의 활성화나 정부 통일방안의 신뢰성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7·7선언과 이에 따른 통일방안의 선언과 실천외지 사이에 커다란 乘離와 矛盾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다시 요약한다면 統一問題는 단순한 對北韓政策이나 手段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統一은 自由, 民主, 平等, 福祉실현의 對北韓지역에로의 연장이며 확대라고 볼 때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南北내에서만이라도 우선 먼저 自由, 民主, 平等, 福祉를 실현하도록 모든 방법과 정책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통일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 내부에서 각종 부조리와 모순을 없애는 體制改革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단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정부의 통일의지는 그만큼 신뢰를 얻게 되며 北韓住民들을 우리쪽으로 끌어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體制改革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해방시켜 주며 더불어 현실적인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統一接近方式을 모색하는 것이 최상의 현실적 통일정책의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남한의 체제개혁은 正統性的의 확보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정적 과거의 청산, 分配正義 실현을 위한 제반조치의 과감한 채택,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만성적 토지투기와 아파트투기가 제도적으로 조정되는 정책의 講究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전국토지 소유자 가운데 상위 5%가 전국 사유지의 65%를 차지하는 가운데 임야의 경우 84%, 그리고 대지의 경우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제일 먼저 시정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財閥所有株式에 이른바 「물타기」를 해서 공개하는 바람에 일순간에 一族이 2,000억원의 천문학적 蓄財를 하는 賤民資本主義도 개혁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 체제의 이런 부조리와 각종 모순이 改革되는 前提위에서 南北統一 접근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東歐의 改革바람을 보고 우리체제의 「우월성」 운운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 아직도 이른 것 같습니다. 미래 南北統一에 대비하는 이상적이고도 현실적인 새로운 「체제 모형」을 개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부동산투기, 부익부, 빈익빈, 경제력의 집중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사회, 그리고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改革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의 도래를 위해 각종 改革을 서두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통일의 목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尹炳益 : 고맙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 계신 孫基祥先生님 말씀하십시오.

孫基祥 : 먼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 세미나의 참석을 사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言論에서도 주로 文化分野에만 종사해 이 방면의 연구가 미약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것은 아까 장관께서 지난번 南北赤十字會談에서의 최대의 걸림들은 政治的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文化的인 문제였다는 점을 상기시켰고, 또 發表를 하신 金甲喆教授께서 南北의 文化的 異質性 克服 문제에 있어 정보교환 시스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을 동서베를린문제와 관련시켜 논의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동베를린의 장벽을 허물어뜨린 것은 서독의 전과였다고 여러 매스콤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럽순방중 盧泰愚大統領이 西獨의 崙首相을 만났을 때도 아마 그런 얘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2년 東西獨의 基本條約締結 이후 兩獨이 서로의 방송프로그램시청을 허용 또는 묵인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80년대에 들어와 양쪽의 TV시청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프로그 다양한 西獨TV는 東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東獨시청자들이 西獨

TV프로를 보려면 안테나를 서쪽으로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누가 西獨TV를 보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東獨당국이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도 그대로 묵인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東獨당국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관대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西獨TV프로가 東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비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하면 西獨방송프로의 脫이데올로기적 내용때문에 전파의 상호교류(적어도 東獨 쪽에서 볼 때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최근 金大中 平民黨總裁가 南北 TV시청의 상호교환을 제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채널을 고정시켜 놓고 있는 북쪽의 형편으로 봐서는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방송학자들이 쓴 논문을 보면 우선 南北의 방송교류를 위해서는 제1 단계로 상호 전파방해를 중지해야 하고, 제2 단계로는 상호 비방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서로의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이데올로기」를 배제해야만 비로소 放送交流를 방해하는 두터운 벽이 헐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와 같이 남북이 尖銳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프로의 「이념」제거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봄부터 KBS와 MBC에서 「남북의 창」, 「통일전망대」 같은 북한소개 프로를 매주 1회 방영하고 있는데 視聽率이 상당히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네요. 북쪽에서는 아직 엄두도 못내는 일을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기왕 내친 걸

음이니 그 프로를 보다 확대하는데 統一院이 앞장 서 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피바다」나 「꽃파는 처녀」나 하는 북한의 革命歌劇이 문제가 되어 결국 회담이 결렬되었는데 이런 革命歌劇의 이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적 측면에서는 거의 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음악·무용을 한데 합친 이른바 總體藝術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혼자 소설로 읽었을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았는데 무대에 올려진 것을 보면 그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은 그 형식과 기능에 따라 수용적 측면에서 감응이 달라집니다. 혁명을 선전, 선동하는 북한의 혁명가극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가 바로 그런 형식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혁명가극의 이념뿐 아니라 예술형식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이쪽의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졌을 때 일시적이나마 감동을 줄 것인가, 아니면 우상숭배에 대한 역겨움을 줄 것인가, 나아가서는 정말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두고 두고 남을 작품인가 하는 것을 각 장르별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統一院에 統一研究院이 생긴다고 하니 이념연구뿐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조사와 연구도 꼭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연구성과와 축적 없이는 앞으로 남북대화나 통일기반 조성에 상당한 애로가 따를 것입니다.

이번 南北赤十字會談에서 예술단 공연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좀 부연하자면 지난 85년의 1차 고향방문 때 우리쪽 예술공연은 실패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것은 주선한 기관의 안목과 수준이 그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남북의 文化藝術交流가 보다 확대될 것은 필

지의 사실입니다.

統一院에서 보다 차원 높은 안목을 가지고 이런 것을 미리 미리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국토와 이념이 합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민중의 삶, 문화가 합치는 것입니다.

尹炳益 : 이어서 濟州大에 계시는 金恒元教授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金恒元 : 저는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간단히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南北韓 統一의 원칙을 보면 北韓쪽은 自主, 平和, 民族 大團結의 그러한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72년에 7·4공동성명의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후에 17년동안에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통일원칙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북한의 통일정책에는 일관성이 있고 계속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받아 들일 수가 있겠으나 우리쪽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다마는 統一政策이라든지 원칙들이 자주 바뀌어 왔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라든지 과거에 교육받은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북한이 그러한 統一政策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특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자주, 평화, 민주가 통일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북한의 민족 대단결, 민주주의 원칙중에 물론 우리의 통일원칙이 現實性이나 適實性이 있겠습니까마는 호소력면에서는 오히려 민족 대단결이 더욱 이념적 호소력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통일정책이라든지 통일이념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남한사회내부의 갈등 해소라든지 남한 내부의 통일문제, 이것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빈부의 격차문제, 요즘 같으면 住宅問題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경우는 전세집들의 규모를 매년 줄여가야 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 평당 25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축해도 1년에 한평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할을 저축한다고 해도 집을 갖기가 힘든 그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절망감이 어떻게 표출될 것인지 이것이 아주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그런 것보다도 우선 衣食住에 있어서의 주택문제 이것 때문에 이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특히 서독같은 경우는 물론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지만 衣食住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동독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尹炳益 : 高性俊教授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高性俊 : 저도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관련시켜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南北聯合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학생들도 많고 결국은 통일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北韓쪽의 이야기에 반응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南北聯合 단계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한다거나 홍보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모델로 얘기를 해보는 것이 EC라든지 우리 全教授님도 英聯邦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EC, 英聯邦 얘기도 비교적 우리 南北聯合에 유사한 경우로 논의가 된다거나 홍보가 될 때 어느 정도의 배경 없이는 오히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오해를 빚

을 수 있는 그래서 남북연합에 관한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얘기는 북한을 변화하게 하는 것이 기본목표인데 北韓의 변화를 유도함에 있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어떤 것일까, 아까 金甲喆教授님도 마지막 결론에 보면 오히려 北韓體制의 正統性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기본이 아니냐 하지만 요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보면 자꾸 주변 국가 또는 다른 나라로 하여금 북한이 開放하도록 변화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 하는 식의 것이 많습니다.

大統領께서 유럽 방문과정에서 보면 相關國 大統領이라든가 首相하고 만났을 때 北韓의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달라 하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제가 보기에 北韓에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여 나가는 가운데에서도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北韓을 변화로 유도하는데 있어서 北韓쪽을 향한 것이든 對國民쪽을 향한 것이든 간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예로 申正鉉教授님이 사석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느낌 같아서 北韓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입장도 좋지만 오히려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 보는 방법이 어떨까요.

구체적으로 中國의 東北 3省에 있는 우리 동포들 또는 연해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 우리 정부라든지 기업 또는 학술단체쪽에서 관심을 자꾸 가져가면서 폭을 넓혀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北韓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을 기대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北韓의 변화를 유도

하는 방안으로, 홍보면에 있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徐鎮英教授님이 문제 제기를 했고 李容弼教授님과 申正鉉教授님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것이 통일이 조금 급하고 그 과제가 막중할수록 우리 체제내부의 개혁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에 있는 金恒元教授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統一院쪽에 한가지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통일기반 조성이란 차원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統一院의 格上을 가져 오는 결과도 되겠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통일문제가 국제 정치적인 성격에서부터 한반도 내부로 왔고 지금도 사실 北韓에 대해서 감 내나라 뭐 내나라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韓國社會 안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성격이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막바로 오고 있어서 統一院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반 통일적 요소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자주 연구를 해나가고 또 개선을 향한 노력을 부처간의 협조로 발전해 나간다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尹炳益 : 그 다음에 東國大에 계신 鄭用吉教授께서 말씀을 이어 주십시오.

鄭用吉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얘기인데 대개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재야나 운동권에서는 이 방안도 반통일지향적이고 그리고 정권 안보적 차원이다 또는 통일에 대한 실천의지도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 방법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통합방식으로 통일이 정말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金甲喆교수님이 그려놓으신 도표를 보니까 남북대화 추진 그리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에서 민족공동체 현장을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신축성있는 통일방안이라고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남북한이 적대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고 민족공동체현장까지 채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이 공동체현장을 채택할 정도라면 이것은 상당한 의미에서 연방주의적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신기능주의적인 접근이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동서독 관계의 예를 보자면 70년 3월 19일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들은 이미 분단된 이후부터 계속교류가 있었거든요. 즉 그들은 인적·물적 교류가 정상회담 전에 상당히 있었고 그때마다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던 데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지금 언뜻보면 기능주의적 접근 같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실현되지도 않았고, 또 되기도 무척 힘든 정상회담이 앞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이 실현된다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난번 7.7선언 같은 것은 실천 의지만 있으면 실천이 가능한 방안들이었는데 비해서 오히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너무 신축성을 두다 보니까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내용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우선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계시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라 하면 그것이 목표에 대한 합의인지 아니면 방안에 대한 합의인지 또는 전략전술에 대한

합의인지 이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 서독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봤느냐고 물으시는데 제 미천한 지식으로는 아직 합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정도밖에는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서독 같은 곳은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공산당도 합법화되어 있고 사회민주당도 있고 그러니까 이익표출 기능들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통일방안이라는 것은 유럽의 평화질서 속에서 동서독이 접근해 보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지요 그 사람들도 통일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역·계층간의 갈등이 심한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사회중심적 세력의 합의라는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사회중심적 세력이 합의를 본다고 하면 그때는 계층간의 갈등이 또 세력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물론 심화되더라도 통일이 지상과제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합의보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반통일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동서독이라든가 EC라든가 하는 나라나 그런 국가간의 통합을 보면 그들은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때문에 통합으로 이끌어지는데 비해서, 우리는 과연 통일 얘기를 정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전이라든가 자신의 정권유지 또는 체제유지의 입장에서만 하고 있는지 한번 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유익한 것으로 보고 자신들이 정말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동서독이나 EC같은 데는 통합을 하더라도, 만약에 통일해가지고 더 분란이 오고 더 상황이 어려워지면 꼭 그렇게 통일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연방주의라고 해서 다 합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 각각의 국가에 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도 연방제란 말이에요. 연방정부란 통합의 기능도 있지만 그반대로 생각하면 각각의 정부에 자치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꾸 통일통일 하는데도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통일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족이 두 국가로 잘 사는 방법 같은 것들이 없느냐 하는 것들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고 해서 꼭 한國家여야 되느냐, 하나의 민족이 두 국가로서 잘 사는 것이 서로 경쟁·대결상태로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들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표출도 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과정을 거쳐 궁극에 가서는 통일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적대 상황속에서 계속 통일만 추구한다는 것이 크게 실현성이 없어서 한번 제기해 본 것입니다.

尹炳益 : 고맙습니다. 河教授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河龍出 : 아까 李容弼教授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역시 말할 것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과연 統一方案과 통일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統一方案의 기능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 그 다음에 統一方案의 전제조건이 무엇이고 統一方案의

평가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에 관하여 몇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두가지 상황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양쪽이 극단적으로 갈라지거나 양쪽이 세력면에서 한쪽이 완전히 상대방에 비해서 약하거나 두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南北韓 사정은 어느 경우도 아닙니다. 그런 構造的인 통일상황의 한계속에서 統一方案이 갖는 여러가지 기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나, 이것은 결국은 저는 統一方案의 기능을 몇가지고 보는데 하나는 정권의 기능, 그 다음에 국내 정치적인 기능, 그 다음에 실제 통일방안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능등이 있는데 현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분명히 현재 남한의 국내 정치의 변화와 정치발전의 단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으로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소위 여러가지 혼돈이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우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노렸던 것은 어떻게 하면 통일방안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느냐 하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전제중의 하나이고 그 다음에 방법론상으로 어떻게 하면 機能主義와 政治的인 接近을 혼합함으로써 機能主義 자체의 順機能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었던 機能主義가 가졌던 이미지를 탈피하는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한국의 소위 정치발전단계가 脫權威主義的인 단계라고 볼 때 이전에 정치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던 통일문제를 어떻게 국내적으로 이끄느냐는 이 문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의 정치 발전의 과도기를 겪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통일방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데올로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현재 우리 남한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로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한의 이데올로기는 뭐냐 이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自由와 平等 問題를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습
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 문제는 흔히들 언급되지 않는 부분
인데 과연 南韓과 北韓이 갖고 있는 民族主義 개념이라는 것이 과연 近代的인
것이냐 이 문제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東歐의
변화같은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앞으로는 전통적인 의미의 民族主義 가지
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 鄭선생님이 1민족 2국가가 얘기되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시 남북한의 地政學的인 위치로 봐서 남북한이 어느 정도의 外交
的인 次元에서 협조가 된다면 그런대로 1민족 2국가가 체제보다는 나은 체제
가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남한도 그
렇고 북한도 그렇고 民族主義의 개념규정이 너무나 방어적이다, 어떻게 하면
이 방어적인 민족주의 개념을 좀 더 융합적인 개념으로 바꾸느냐, 이것이 물
론 동구라파의 문제지만 동시에 한국의 국내 자체의 이데올로기 문제 해결과
동시에 南北韓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을 뛰어 넘는 새로
운 민족주의의 규정문제가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방안의 평가 기준을 저는 몇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는 과정상의 문제이며, 두번째는 통일방안의 내용의 明確性, 融通性, 對應性과
適應性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우선 통일방안이 분
명하다 보면 融通性도 잃는다, 融通性이라는 것은 특히 민주화 사회에서 다양
하게 분출되는 것을 흡수하는 문제, 그 다음에 對應性(responseness) 즉, 對北
關係에서 이북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適應

性 문제는 과연 국제적인 상황과 국내적인 여건에 얼마나 잘 적응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결국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고 하는 방안은 애매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현재 정치발전 단계로 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융통성(flexibility)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모호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對應性(Responsiveness)과 適應性(adaptability)이라는 것은 있느냐, 있다고 볼 때 適應性(adaptability)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李三悅教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너무나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 때문에 未來指向的인 면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국제사정과 북한의 변화를 통해서 과연 한민족공동체 방안이 어떻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적응력에 대해서 機能主義와 정치적인 접근을 너무 공개적으로 그것을 결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은 徐鎮英教授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統一案은 어떠한 계층을 중심세력을 보고 있느냐는 것인데, 이 문제는 사실상 韓國社會를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사실상 엘리트간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韓國社會의 政黨構造는 어느 세력을 대변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더욱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과연 한국사회에 현재 어떤 분명한 계급구조가 나타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현재 한국 정치구조는 이제서 어떤 계급의 구조가 형성되는 단계에서 있으며 지금까지는 상당히 혼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한민족공동체 방안의 모

호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삼는 것은 이런 적응성 문제,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남한이 저항해야 될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定義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통일방안은 별개로 구분되어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통일방안이 마치 北韓도 개방하고 또 통일도 추진하고 이러한 多角的인 목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 유도적인 전제조건이 통일방안하고는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지적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현재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북한이 개방을 한다면 北韓의 개방의 내용이 무엇인가 과연 北韓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방이 된다면 통일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등 北韓이 우리의 논의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전제조건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개방이란 말만가지고는 사실상 의미가 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北韓의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서, 北韓과의 협상의 출발점으로서 北韓의 개방과 궁극적으로 양 체제로 어느 정도 존립한다면 北韓이 변화할 수 있는 체제변화는 무엇이나, 더 나아가서 東歐의 변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과연 北韓이 취할 수 있는 변화의 모델은 무엇이나 물론 金甲喆先生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여러가지 모델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北韓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의 가능성은 뭐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전제됐을 때 과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北韓의 어떠한 상황을 상정하고 이 모델을 구성했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尹炳益 : 그 다음에 梁好民先生님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리겸 결론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梁好民 : 전체적으로 다 읽어 보았습니다. 세분의 논문을 읽어 보았는데 당면한 문제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토론하신 분들도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내 세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볼 것 같으면, 기구를 보면 대체로 北韓에서 1960년대에 나왔던 統一聯邦制하고 비슷합니다. 가령 聯合, 여기는 南北聯合이라고 그랬는데 그 때 거기에서 聯邦制를 만들 것 같으면 關係로서 政治委員會를 만든다고 했던 것이 그렇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北韓에서도 이것은 과도기적인 조치라고 하였고 그리고 총선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한데 北韓은 이를 수정하여 高麗聯邦制로 되면서 과도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총선거라는 것도 다 없어지고 또 바뀝니다. 그래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聯邦制의 원형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과연 北韓이 받아줄 것인가 여러분들 분석한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金甲喆先生이 후반에 전반은 남쪽의 통일 방안, 후반은 북쪽의 통일방안을 썼는데 후반의 통일방안을 보면 전혀 우리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저쪽에는 역시 남조선 혁명, 즉 3대혁명역량의 구축, 이런 것이 당적으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내세우느냐 하면 統一院에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내세우고 특히 北韓과 경쟁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북에서 3대원칙, 5대강령, 그 다음에 1980년대 들어와서 10大 施政方針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세우니까 여기도 대응책으로서 이것을 내 세웠다고

됩니다. 이것이 自主다, 平和다, 民主原則 이것을 마주 앉아서 10년을 토론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입장이 다르니까, 自主 이것은 北韓에서 다 알다시피 美國帝國主義를 내 쫓는 것이 自主입니다.

그 다음에 平和, 이것도 그렇습니다. 남조선 혁명을 해서 인민의 政權이 들어서면 그것하고 北韓하고는 평화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民主原則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는 다 되었죠. 北韓은 철저히 레닌주의적입니다.

金日成이 수 없는 연설에서 여러번 민주주의는 계급의 敵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말하자면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이것만이 진짜 民主主義이며 부르조아 민주주의라는 것 이것은 帝國主義者들의 선전이다. 부르조아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안에서 노동계급은 굶어 죽는 자유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주 앉아서 10년 대화해도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基本條約에 이런 원칙의 제시가 없어요. 이것은 암만해도 해결이 안될 것 같으니까, 싸움 밖에 할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빼버렸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幸福, 이것 역시 北韓에서는 주민들의 아주 행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社會保障制度도 있고 失業者도 없습니다. 金日成의 연설에서 여러번 나옵니다. 이북 것은 더 말할 것이 없고 우리 문제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南北聯合이라는 것 이것이 Confederation이냐 뭐냐 이제 西歐와 관련해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Confederation 이것이 될려면 몇개의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800년대 비스마르크의 독일 또 미국의 독립직후 남쪽에 13개주가 Confederation을 했습니다. 그 이름도 Confederation이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첫째, 문화가 基督教문화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經濟體制가

당시 勃興하고 있던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리고 專制主義 국가지만 정당도 있었어요. 그보다도 개인적인 생활이 상당히 보장됐습니다. 정권이 대체되지 않는 한 개인의 생활은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레닌주의의 도입 이후부터 北韓에서의 基督教文化는 없어지고 主體思想으로 되었습니다. 주체사상 이외는 어떤 사상도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이 金日成이 하는 소리입니다. 주체사상은 절대 진리고 인류가 도달한 마지막 사상의 최고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經濟體制는 다 알다시피 자기들이 말하는 社會主義體制 그리고 개인생활의 영위는 없습니다. 여기는 집단생활입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Confederation 될려면 하나의 공통분모가 생겨야 제기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길게 봐서 희망적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소련의 해석이 바뀌고 있습니다. 요전에 소련 학자들이 왔을 때 물어 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래요. 과거에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다, 부르조아 민주주의다 했는데 이제는 그 구분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소련학자도 그런 말을 하고 또 새로운 외교에서 思考라는 것(new political thinking) 그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平和共存이다, 不可侵이다, 主權保存이다 하기에 그거야 레닌 때부터 나와가지고 스탈린 때도 했는데 고르바초프 발언에서는 무엇이 다르냐니까 딱 지적을 해요. 과거에는 우리는 상대방의 安保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安保만 주장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대방의 安保도 동시에 우리 安保하고 같이 보장하는 것이다 해서 능숙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이데올로기 이론이 달라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엇그제 고르바초프의 연설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푸라우다에 나온 것을 전체는 다 못보고 부분적으로 외국 것을 읽고 우리나라 말로 나온 것도 보았는데 고르바초프는 資本主義國家에서 社會民主主義가 성공한 前例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탈린이라든지 브레즈네프 때만 해도 이런 주장을 하면 감옥으로 가는 것이죠. 아까 어떤 분이 지적했지만 平和共存이라는 것을 후루쉬초프는 명백하게 國際的 階級鬭爭의 한 방식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고르바초프가 불세비키혁명 70년 기념연설에서 전 인류의 가치가 계급투쟁에 앞선다, 국제적 계급투쟁의 상위에 선다고 말한 것은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철저히 반항하는 것이 루마니아와 北韓이라고 봅니다. 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金日成이 살아 있는 한은 대단히 바꾸기 어려운 것입니다. 접근이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 도달하는 것은 가능한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가족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非政治的인 교류라든지 한글맞춤법에서부터 시작해서 公害問題, 이런데부터 접근을 해야지 대뜸 思想問題라든지 制度問題를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金日成이 후대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조금 변화하리라고 봅니다. 蘇聯도 달라지고 동구라파도 달라지고 하는데 미래는 누구나 예언을 못합니다마는 그때 쯤에 가서 우선 하나의 계기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北韓에서 黨內 民主主義가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100% 투표장에 나가서 동일 입후보에다 100% 찬성투표 던지는 이런 全體主義 사회에서 民主主義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도 토론은 합니다. 그리고 다수결로 하는데 北韓은 다수결이 없어요. 만장일치이고 모든 토론은 지지토론일 뿐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

안에 내부에서부터 우선 당내 민주주의를 해서 계기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100% 투표, 단일 입후보 이렇게 될 적에는 이데올로기적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한도 안에서 이쪽은 이쪽대로 자기 입장을 견지하면서 가능한 것부터 교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金甲喆先生의 논문 25페이지에 보면 여러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을 내 놓았어요. 우선 남쪽에서라도 民主改革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社會葛藤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요즘 統一院에서 北韓 앞으로 기금을 세워가지고 100억, 수백억 만드는데 그거야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헝가리하고 하는데도 借款줘야 돼, 폴란드도 줘야 돼, 유고하고 하면 또 줘야 될 거예요. 무슨 돈이 많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西獨처럼 그 돈 있으면 남쪽의 계층적인 엄청난 격차를 해소하는데 먼저 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북의 문제는 자기들 보고 해결하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 내부분쟁부터 해결해야지 자꾸 걸치레로 하면 하나의허장성세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쪽의 統一論議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문제인데 北韓은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으로 인사를 통해 논의하자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西獨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執權黨이 결국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데 남북한의 경우 이런 형태를 취할 것 같으면 남쪽에서 사회단체가 한 천개는 나올 것이예요. 그러니까 勞動組合이라든가 基督教단체 등 완전히 대표성을 가진 것은 들어와도 괜찮겠지만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것 가지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사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의견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노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되 싸움불이는 것만 하지

절대로 합의는 안한다고 봅니다.

지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야당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비난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항상 레닌이 말한 것처럼 적이 조그만 간격이라도 있을 때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그래요. 政治的 犯罪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직도 레닌주의에 충실하니까 그 점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됩니다.

결국 국민적 합의라는 것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당이 37%밖에 안 된다면 聯合政府를 세우든지 어떻게든지 이렇게 밖에 대변할 길이 없지 않느냐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소위 통일논의의 통일이 것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안에서 통일 논의도 제대로 통일 못하면서 남북통일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것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최대공약수를 도출하는 정치적 능력의 문제입니다.

국회안에서 일단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서 각 당이 적어도 국민대표성을 가지는 국회에서라도 합의를 해야합니다. 이것이 되면 저쪽에서도 상당히 호응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고 내내 싸움만 할 것 같으면 진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尹炳益 : 고맙습니다. 끝으로 발표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사람당 2-3분 내외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全寅永 :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東西獨의 경우와 우리의 경우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왔고 北韓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도 나왔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機能的인 접근방법과 聯邦制와의 관계에 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의 현실문제를 잘 볼 수 있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일일이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또 대부분은 보완적인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金甲喆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질문이나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서 示唆하는 점과 저의 분석의 미비점 같은 것등은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徐鎭英 : 저는 統一問題에 대한 專門家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통일문제에 관하여 토론하게 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당혹감이랄까, 의문이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전에 李長官님도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일문제를 소리 높여 이야기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통일로로의 접근을 하는데 障礙가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독일의 경우는 통일이란 말을 극도로 자제하여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협상과 교류를 증진시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의문은 모든 국민들이 통일을 當爲的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과연 통일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 얼마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일반국민들의 직접적인 관심은 통일문제보다는 民生問題라든가 민주화 문제와 같은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제 생각에는 독일인들에게 있어서 통일문제와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문제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분단은 敗戰의 결과이며 일종의 2차 대전에 대한 刑罰로 초래된 것인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은 人爲的으로 그리고 不道德하게 강요된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국가에 復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1945년 해방 이후 어떻게 보면 南北韓間의 체제경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南韓政府가 그야말로 한민족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려면 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 모든 政派들은 그들이 통일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통일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되고 보니까 통일을 이야기하면서도 통일을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二律背反性도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특히 정부차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國民的 合意를 도출하려고 할 때 저는 두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절차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절차에 대한 문제는 비단 통일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통일문제와 같은 Issue에 대한 民主的 合意를 도출해 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어서, 이미 앞서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와 같은 制度的 裝置를 통하여 통일논의의 開放化와 活性化를 이룩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통일방안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분단 현실에 대한 政權的

차원의 인식의 표출이란 점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통일방안속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적인 定向性이 무엇이고 그것이 대변하려고 하는 政治勢力이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았을 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여러가지 애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애매성, 모호성은 제6공화국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여러가지로 해석·보완되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 내부의 民主化를 확대해 가려는 세력들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속에 담은 民主라든가 自由라든가 또는 人權이란 概念과 理念을 진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尹炳益 : 고맙습니다. 司會者로서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實務的으로 정리가 되고 저희를 啓導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政策 立案 및 통일문제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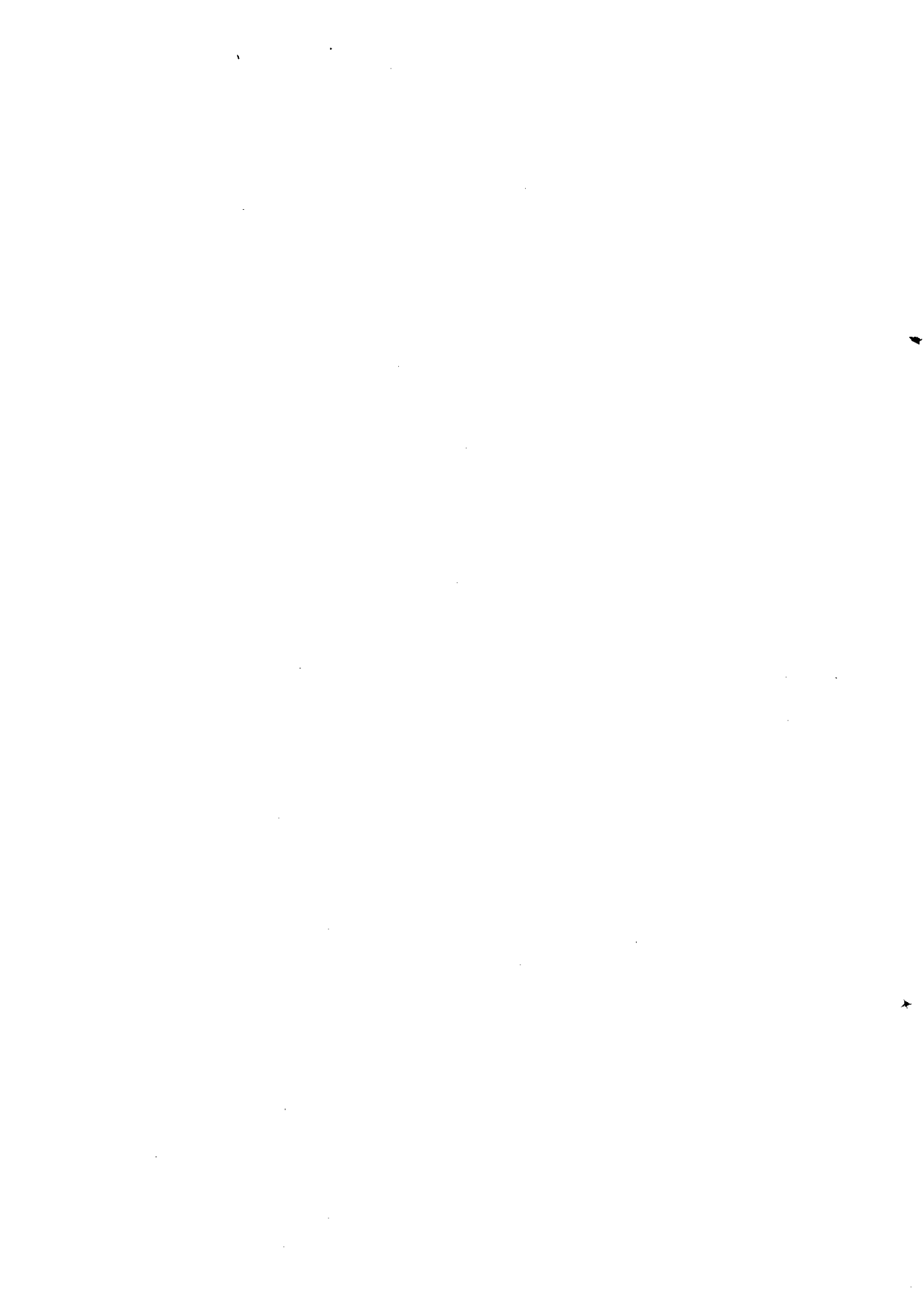


Ⅱ. 第4回 統一問題 綜合심포지움

—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政策的 課題 —

〈發 表 論 文〉

1. 南北韓 平和定着과 信賴造成을 위한 當面課題
吳 寬 治 (國防研究院)
2. 南北聯合의 制度的·實踐的 課題
金 明 基 (明知大 教授)
3. 統一憲法草案에 관한 試論
張 明 奉 (國民大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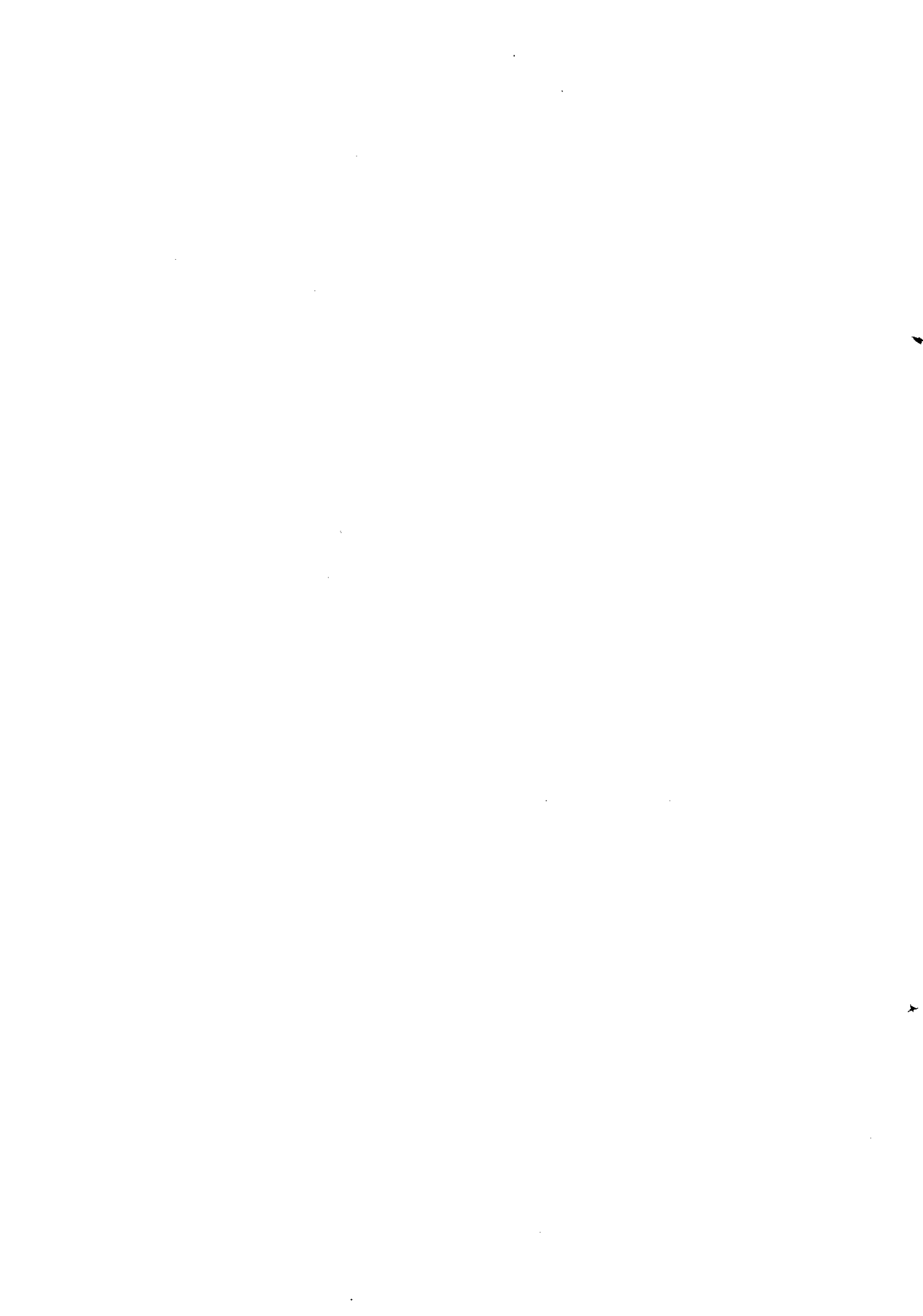


1. 南北韓 平和定着과 信賴造成을 위한 當面課題

吳 寬 治 (國防研究院)

目 次

I. 序 論	139
II. 바람직한 平和定着 段階別 措置 ..	142
III. 當面 課題	150
IV. 맺는 말	153



I. 序 論

南北韓이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7·4南北共同聲明」에 합의한지 17년이 나 지난 지금에 와서도 韓半島에 平和가 定着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東西兩陣營간에 理念的인 對決이 完化되고 蘇聯과 東歐共產國家에서 근본적인 社會變革이 나타나고 또 이러한 변화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확신됨에도 불구하고 南北韓關係에서만 냉전의 첨예화된 對決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北韓이 對南政策을 轉換시키지 않은 데 있다.

北韓은 수 많은 對南提議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들의 對南政策基本路線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의 對北政策과 合致點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南北韓이 추구하는 目標에서 共通의 合致點이 존재하지 않으면 南北對話에 진척이 있을 수 없고 南北韓關係는 결국 「힘에 의한 論理」가 지배한다.

그런데 이 「힘」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強點도 있고 弱點도 있다. 잘 알다시피 綜合的인 國力에 있어서는 우리가 北韓을 능가한다. 또한 長期的으로는 國力뿐만 아니라 軍事力에 있어서도 우리가 北韓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尙後 몇년간은 獨自的인 軍事力에 있어서는 北韓이 우리보다 우월하고 이에 따른 戰力隔着을 美聯合軍支援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南北韓 모두가 잘 인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戰力隔差를 비교적 短期間內 補完할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國家將來를 위해 현명하다고 보지 않는다. 韓·美聯合防衛體制를 活用함으로써 「힘」의 均衡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여 節約된 資源

은 經濟發展과 社會開發에 投資하여야 한다. 따라서 韓·美聯合體制下에서 우리는 「힘」으로 戰爭을 抑制함과 동시에 國力을 增進하는 大戰略을 지금까지 추구해 왔고 향후 상당기간에도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國家大戰略을 추구함에 있어서 한가지 不安한 것은 駐韓美軍에 어떤 變化가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變化가 우리의 意思와는 상관없이 豫測할 수 없는 將來에 일어날 지도 모르며, 혹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러한 變化가 北韓에게 잘못된 信號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北韓이 노리는 점이 바로 이것이며 이를 위해 과거 30여 년간 집요하게 對南煽動 및 革命戰略을 추구해 왔다. 어떠한 對南提議에도 駐韓美軍撤收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가 없고, 韓國內의 民主化 및 統一에 대한 念願을 이용하여 그들의 소위 “反美自主化鬭爭”을 선동해 왔다.

더욱이, 北韓은 우리사회의 反體制勢力을 이용하여 격렬한 反美行動을 교사함으로써 美國內 輿論을 악화시켜 駐韓美軍의 早期撤收를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北韓은 아마도 美國이 경제적 어려움과 新孤立主義的인 국민여론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기대로 고무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만일 北韓이 그들의 軍事的 優位가 존재하는 가까운 장래에 駐韓美軍에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들은 對南政策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며 南北對話는 아무런 진전을 가져 오지 못할 것이다.

長期的인 國力競爭에서도 北韓은 다른 期待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향후 상당기간동안 經濟成長過程에서 제반 사회적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며, 과격한 勞動運動, 農民不滿, 學生騷擾 및 都市低所得層不滿 등을 잘 煽動한다면 우리 社會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脆弱社會라고 판

단할 가능성이 많다. 사실 北韓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도록 조장하는 우리 사회내부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都市無住宅家口의 증가, 勤勞靑少年 福祉問題, 教育機會의 制限, 一部 指導的 社會階層의 不道德性, 民主主義 定着 過程에서의 社會的 無秩序 등은 이러한 우리 社會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일부에 불과하다.

南北韓關係에 있어서 「힘의 論理」가 적용되고 남북한간의 상대적 힘에 대해 北韓이 어떤 고정된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南北對話努力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들의 事實認識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까닭에 對話를 통한 教化過程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北韓의 생각이 무엇이며, 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주의깊게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南北對話는 이를 위해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Ⅱ. 바람직한 平和定着段階別 措置

南北韓간의 平和定着을 위해서는 몇가지 段階가 있고 이러한 段階마다 基本的인 措置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段階는 다음과 같다.

- (1) 一般信賴構築
- (2) 國際的 安全保障體制 構築
- (3) 政治的 信賴構築
- (4) 軍事的 信賴構築
- (5) 經濟協力
- (6) 軍 縮

위에서 제시한 각 단계의 순서는 반드시 그와 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 중 政治的 信賴構築, 軍事的 信賴構築 및 軍縮은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한다. 南北韓이 동일한 政治的 目標을 志向하지 않는 한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혹 그러한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어느 한편은 조만간 합의된 조치를 폐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相對方을 더 이상 欺瞞할 수 없게 되거나 자신이 추구하는 政治的 目標과 相衝突으로써 스스로 기각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예로서, 만일 北韓이 武力에 의한 南侵戰略을 韓半島 變化手段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攻擊型 裝備인 戰車, 裝甲車, 自走砲, 渡河裝備 등의 減縮 및 廢棄하는 軍縮協定에 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러한 攻擊型 裝備減縮에 응해 온다면 이는 그들이 아축을 기만하려는 것이

며, 이러한 기반은 조만간에 탄로나게 되기 마련이다.

1. 一般信賴構築 段階

이 단계는 다른 모든 단계와 병행하여 추진될 수도 있는 일반적인 신뢰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南北赤十字會談에 의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스포츠交流, 文化交流, 제한된 규모의 經濟交流, 雙方定規放送聽取 許容, 郵便交流, 自由往來와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1982년 2월 1일 20個示範實踐事業으로 제의했던 대부분의 조치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非武裝地帶 軍事施設 撤去 및 軍事責任者間 直通電話架設과 같은 조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國際的 安全保障體制構築 段階

이 단계는 한반도에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美·日·中·蘇가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해 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南北韓이 기본적으로 취할 조치는 이들 4개국과의 國交樹立, 유엔同時加入 및 4個國에 의한 韓半島 平和保障宣言이다.

이 단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주장하고 또 적극적으로 推進해야 될 措置이다. 특히 마지막 조치는 이미 政府가 東北亞 平和協議會議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韓半島 平和保障宣言에 포함시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南北韓問題는 平和的으로 當事者간에 해결되어야 하며 美·日·中·蘇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 (2) 美·日·中·蘇는 南北韓간에 어느 一方이 先制 武力을 사용하는 경우 武力使用者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거부한다.
- (3) 美·日·中·蘇는 南北韓간에 어느 一方의 武力侵攻을 받는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被侵國을 지원한다.
- (4) 美·日·中·蘇는 남북한간 어느 一方이 상대방에 대한 테러, 기타 악의의 加害行爲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한다.
- (5) 美·日·中·蘇는 조속한 시일내에 南北韓과 國交를 수립하고 兩國의 유엔加入을 환영한다.
- (6) 美·日·中·蘇는 南北韓의 核武器開發에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 (7) 美·日·中·蘇는 예기치 않은 한반도의 긴장고조상태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위에서 제의한 최소한 7가지 사항이 韓半島平和保障宣言에 포함되면 한반도의 國際的 安全保障體制가 構築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4個國이 南北韓중 먼저 武力을 사용한 자에 대해 일체의 지원을 거부하고 被侵者에게 지원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北韓이 주장해온 駐韓美軍 撤收에 대한 근거가 제거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北韓의 주한미군 철수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韓美相互防衛條約 第2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韓·美兩國은 敵으로부터 被侵時에 적법한 헌법상의 제정차를 밝아 상호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北韓이 武力南侵을 개시하지 않는 한 駐韓美軍은 北韓에게 하등의 위협이 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반도에 민감한 利害關係를 가진 美·日·中·蘇 4個國이 위와 같은 내용의 韓半島 平和保障宣言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南北韓 當事者가 필요한 措置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중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 다음에 논의하는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3. 政治的 信賴構築 段階

南北韓간의 平和定着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인 것은 바로 政治的 信賴構築으로서 南北韓 相互의 現實認定, 平和共存 및 關係正常化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중 핵심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1) 南北韓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 締結
- (2) 平和 및 不可侵協定 締結
- (3) 서울과 평양에 常駐連絡代表部 설치
- (4) 年例 南北韓頂上會談 開催

우리 정부가 1982년 1월 22일에 제의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중에 과도기 조치로서 제시한 「南北韓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 체결 제의는 매우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제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의 잠정협정 제안내용중에 休戰體制의 維持와 軍備競争의 止揚과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措置를 협의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南北韓平和 및 不可侵協定을 통하여 休戰體制를 확고한 平和體制로 代替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休戰協定은 平和 및 不可侵協定으로 대체시킨다. 이 協定을 南北韓간에 체결함으로써 平和的 共存을 확고히 하고 남북한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준

수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美·北韓간의 平和協定提議를 受容해서는 안 된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한이 각각 상주대표부를 설치하여 당국간의 협의채널로 활용하고, 南北韓頂上會談을 年例化함으로써 남북한간의 현안에 대해 國政의 最高責任者가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南北韓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에서 相互體制 및 理念의 인정, 平和共存, 內政不干涉, 모든 분야에서의 交流擴大에 대해 합의하게 되면 政治的 信賴構築의 기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 중요성에 있어서 평화 및 불가침협정이나,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등은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결코 능가할 수 없다.

사실 1972년의 7·4共同聲明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과 같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7·4공동성명에는 (1)상이한 이념 및 체제의 인정, (2)평화적 공존, (3)무력불사용, (4)남북한 교류의 확대, (5)상설위기해소채널의 설치 등이 포함되므로써 원칙적으로 南北韓의 基本關係에 대해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北韓이 일방적으로 이들 합의사항을 폐기함으로써 남북한관계에 합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에 회의를 느끼게 만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合意前例가 있으므로 이를 補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利點도 있다.

4. 軍事的 信賴構築 段階

軍事的 信賴構築段階에서는 敵의 奇襲을 防止하고 偶發事態에 따른 戰爭을 豫防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措置들이 합의되어야 한다.

- (1) 情報交換 措置
- (2) 接觸行動 指針

- (3) 軍事作戰의 透明度增大 措置
- (4) 軍事的 威壓行動의 制限
- (5) 短期警報攻擊에 대한 障礙措置

情報交換措置에서는 Hotline의 설치, 公海 및 空中에서의 事故處理節次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相互不信과 疑心으로 인해 상대방의 행동을 가장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接觸行動指針은 軍部隊가 日常的인 相對側과의 接觸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準則이다. 예로서 公海上에서 피아해군함정이 접촉하게 될 때 戰鬪行爲로 오해될 수 있는 近接攻擊訓練의 禁止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만일 이러한 상호접촉시 지켜야 할 行動準則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를 어긴 자는 攻擊意圖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된다.

軍事作戰의 透明度增大措置는 계획되었거나 실시중인 部隊活動이 혼란인가, 경계태세인가, 공격준비행동인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군사력 신뢰구축조치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事前通報義務, 訓練參觀招請, 檢證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軍事的 威壓行動의 制限은 위기시 大部隊의 機動과 같은 행동에 의해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동제한이다. 이러한 措置중의 대표적인 것은 部隊機動訓練의 事前通報期間을 늘리거나 年中部隊訓練計劃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다.

短期警報攻擊에 대한 障礙措置는 무경고 또는 극히 제한된 경보시간내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部隊機動訓練計劃의 사전 통보의 現場監視등이 여기에 속한다. 접경지역의 일정지대내에서 지상감시

반은 자유로이 활동하면서 사전통보된 내용과 실제 부대기동훈련간에 다른 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 領空의 一部 또는 全部를 상대방의 공중감시에 개방할 수도 있다.

5. 經濟協力 段階

일반적인 商品의 輸出入 등은 일반적인 신뢰구축조치라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대규모의 資本이 所要되는 合作投資事業의 추진은 北韓의 경제기반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므로, 이러한 經濟協力は 政治 및 軍事的 信賴構築이 이루어진 다음에 논의하여야 한다. 정치적 신뢰구축은 北韓의 對南赤化戰略의 포기와 이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정치적 신뢰구축이 없이는 大規模의 對北經濟協力は 주의깊은 검토를 요한다.

6. 軍縮 段階

軍備統制에 속하는 분야에 관한 南北韓간의 협의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대해 합의하고 이의 성실한 준수가 증명된 다음에 추진되어야 한다. 軍縮보다 훨씬 용이한 軍事的 信賴構築措置가 성공적으로 합의되고 준수되지 않고서는 軍縮은 전혀 의미가 없다.

南北韓간의 軍縮은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대략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 地上戰力の 縮小均衡回復
- 地上戰力の 段階別 均衡減縮
- 空·海軍의 縮小均衡回復

• 豫備戰力 上限設定

주한미군문제는 國際的 安全保障體制構築에 의해 그 性格이 規定되었으므로 南北韓 軍縮論議對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韓美兩國간의 문제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단계별 平和定着 및 信賴構築措置는 어디까지나 原則上的의 논의이고 이를 완고하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政治的 信賴構築措置없이 軍事的 信賴構築이 진정한 의미에서 불가능하고 軍縮은 더욱 그러하다. 南北韓간의 상호인정, 평화공존, 관계정상화와 같은 政治적 기반이 구축되지 않으면 對南政策이 豹變될 수 있고 이 경우 軍縮協定이 순간적으로 파기된다. 이와 같이 軍축협정이 파기되면 변화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軍事力增強이 뒤따르게 되는데 단기간내의 軍備競爭에서 軍縮協定을 파기한 측이 사전대비로 인해서 유리하게 된다. 특히 南北韓간에 있어서 命令經濟와 獨裁體制를 유지하는 北韓이 이 점에 있어서 有利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信賴構築措置없이 軍縮은 불가능함으로 政治적 신뢰구축이 軍事적 신뢰구축이나 軍축보다 先行되어야 한다.

Ⅲ. 當面課題

南北韓간에 진정한 平和가 定着되고 信賴가 構築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단계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北韓의 對南政策이 赤化統一로부터 和解로 전환되었다면 위에서 제시한 段階를 따르는 것이 北韓의 立場에서도 위협을 줄이고 자신들의 안전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政治·軍事問題를 해결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여기까지는 合理的이나, 一般的인 信賴措置를 무시하고 있는 점과 그들이 政治·軍事問題에서 主要議題로 제시하고 있는 駐韓美軍 撤收 主張, 3者會談의 主張과 각종 信賴構築措置를 무질서하게 나열하므로써 실질적인 協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北韓이 南北韓간의 平和定着을 위한 合理的이고 能率의인 節次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던 데도 원인이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目前의 利益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南北韓간의 平和定着과 信賴構築에 있어서 根本的인 問題點은 北韓이 南北韓存在의 現實認定, 平和共存 및 關係正常化를 指向하는 근본적인 政治的 妥協을 거부하는 데 있다. 北韓이 이러한 政治的 妥協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要因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北韓의 軍事力優位에 대한 確信
- 北韓當局의 體制開放에 대한 不安
- 北韓社會의 體制開放 및 改革에 대한 內部壓力 不在
- 駐韓美軍將來의 不確實性
- 韓國內 反體制勢力에 대한 過信

- 韓國社會內部的 脆弱點
- 中國의 不分明한 態度

北韓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기 위하여 武力行使와 韓國內部 顛覆戰略을 계속 추진해 왔고 예기되는 앞날에도 이에 집착하고자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北韓은 駐韓美軍減縮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그들은 武力에 의한 統一機會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韓國이 국민들의 福祉向上要求 때문에 대폭적인 國防費支出이 곤란하고, 따라서 南北韓간의 軍事力隔差를 메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南侵機會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北韓은 또한 韓國內의 反體制勢力에 대해 過大評價하고 이들을 선동하고 조종함으로써 體制顛覆의 機會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그들의 기대를 부추키는 것은 일부학생들의 난동과 극렬한 勞動者들의 行動일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 내부의 많은 脆弱點도 그들은 계산에 넣을 것이다. 住居生活의 不安定, 職業의 不安定, 相對的 貧困感, 社會不條理의 存在, 教育機會의 不足 등은 社會基底層을 體制擁護勢力으로 부터 이탈시킬 수 있다고 그들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계산은 향후 상당기간동안에도 韓國의 內部顛覆이 가능하다는 그들의 기대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은 그들 방식대로의 統一機會가 존재한다고 기대하는 한 韓國과의 政治的 妥協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統一에 대한 야망 외에도 南北韓간의 政治的 妥協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北韓內部要因이다. 北韓은 南北韓간의 關係正常化가 필연코 초래할 體制開放과 改革을 감당할 능력

도 없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體制內部로부터의 開放壓力이 크게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北韓當局은 南北韓問題에 대해 住民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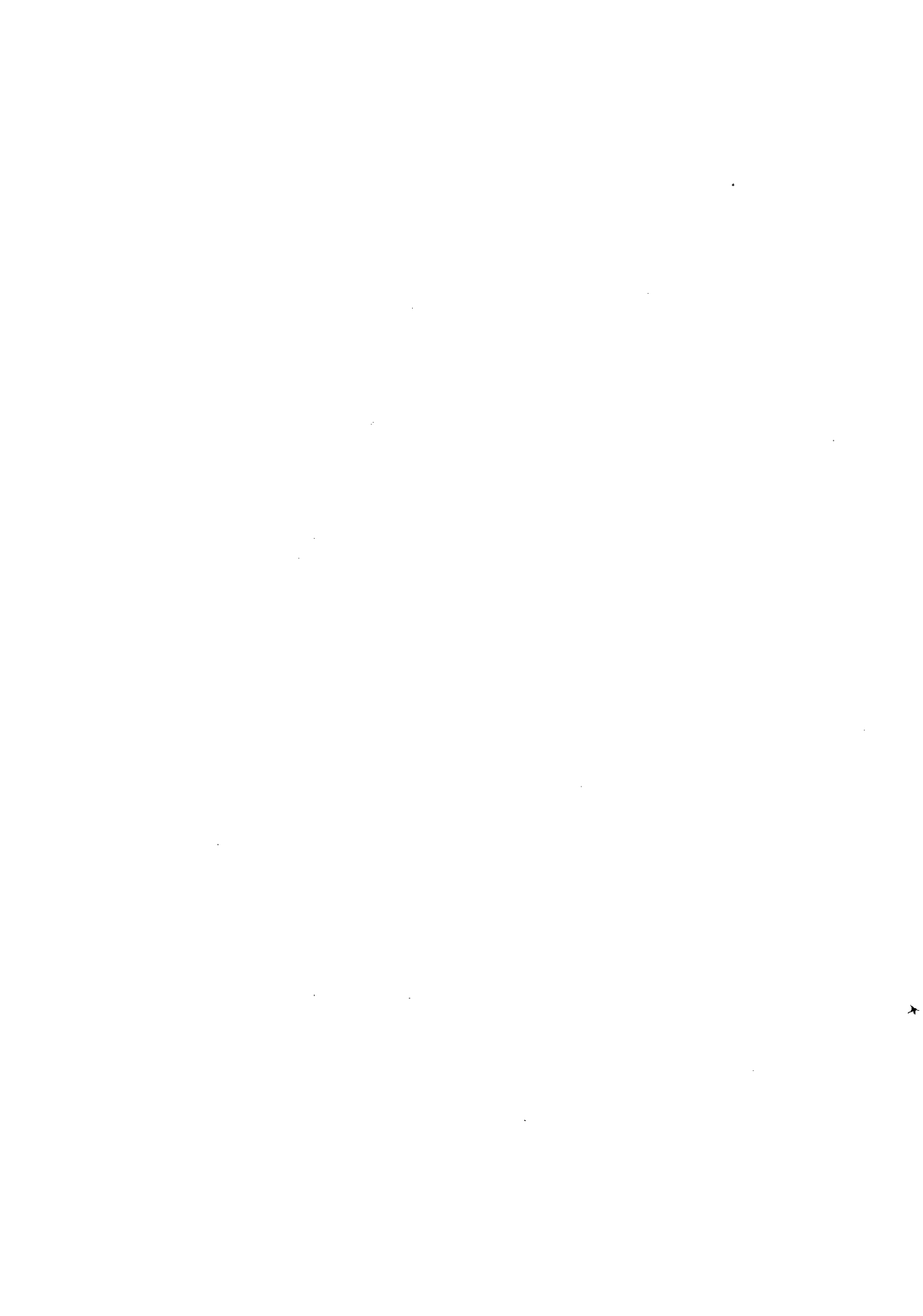
北韓은 이와 같이 그들의 對南政策을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는 機會가 존재하며, 이러한 機會를 霧散시킬 수 있는 外的 要因은 蘇聯과 中國에 의한 韓國의 認定과 유엔加入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韓·蘇간의 國交樹立은 비교적 단기간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北韓의 立場에서는 中國의 對韓接近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中國은 가까운 시일내에 韓國과의 國交樹立을 北韓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은 그들의 對南赤化戰略을 추진함에 있어서 最小限 中國의 反對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것이다.

IV. 맺 는 말

南北韓간의 平和定着과 信賴構築에는 시간이 요할 것이며 따라서 忍耐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北韓에 대해 우리의 基本政策을 明白히 하고 모든 對北協商에 있어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정책은 앞에서 제시한 6段階措置를 포함시킴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韓·美聯合體制는 향후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라도 對北協商을 뒷받침함에 있어서 조금도 약화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北韓에게 協商壓力을 끊임없이 가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中國과의 關係正常化에 많은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그의 우리사회 내부의 약점을 제거하고 北韓社會를 개방하는 노력이 倍加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對北協商에 있어서 短期的 所得을 얻기 위하여 기본원칙을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 時間은 분명히 우리 편에 있으며, 外的 與件의 變化가 의외로 빠르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北韓이 우리가 주도하는 南北韓協商에 진지하게 응해 올 날도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2. 南北聯合의 制度的·實踐的 課題

金明基 (明知大 教授)

目 次

I. 序 論	157
II.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과 南北韓의 法的 地位	158
III. 南北聯合의 制度的 課題	163
IV. 南北聯合의 實踐的 課題	176
V. 結 論	181



I. 序 論

우리 政府가 1982년에 제의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은 당시까지의 統一政策을 綜合·體系化한 것이었으나, 이는 統一憲法을 制定할 “民族統一協議會議”의 構成方法에 관한 언급이 없고 또 統一憲法을 制定할 때까지의 中間過程의 說明이 未洽하다는 指摘을 받아 왔다.

第6共和國이 出帆한 이후 對內的으로는 社會 諸分野에서의 民主化와 함께 統一論議가 活性化되었고, 對外的으로는 東西和解와 共產圈의 改革·開放 등에 의해 世界秩序는 새로운 推移·變化를 맞게 되었다. 이는 우리의 統一政策 推進에 有利한 與件을 造成해 주었고, 한편 韓半島의 周邊情勢도 統一問題에 대한 우리의 能動的인 對處를 要求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政府는 이러한 統一與件의 變化에 따라 國民의 意思와 熱望을 받아들여 北韓을 敵對視 내지 非難視하는 態度를 벗어나 統一을 指向한 民族共同體의 一員으로 包容해 나가려는 基本的 立場에서 1989년 9월 11일 오늘의 與件에 부합되는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提議하기에 이르렀다.

이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自主·平和·民主라는 統一原則을 設定하고, 過渡的 統一體制로서 統一國家가 實現될 때까지의 中間過程인 “南北聯合”(The Korean Commonwealth)을 형성하고, 이를 위해 “民族共同體憲章”을 制定하는 것을 그 主要 內容으로 하고 있다.

本 研究는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 表示된 民族共同體인 “南北聯合”을 法的 側面에서 어떻게 制度化하고 또 이를 實現化할 것인가와, 그에 따라 提起되는 諸問題를 提示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南北韓의 國際法上 地位를 考察해 보고, 이를 基礎로 하여 “南北聯合”의 制度的 課題를 檢討해 보고, 그의 實踐的 課題에 대해 論及하기로 한다.

II.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과 南北韓의 法的 地位

1. 南北聯合 構成 以前의 南北韓의 地位

分斷前의 韓國은 1910년의 “韓日合邦條約”에 의한 日本의 不法強占으로 消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韓日合邦條約”이 國際法上 無效라는 理論과 韓國이 存續한다는 國際的 宣言의 實際를 통해 確認될 수 있고, 또 舊韓國의 正統性은 大韓民國이 承繼한 것이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의 大韓民國 政府의 樹立은 日本으로부터 分離 獨立한 新生國이 아니며, 1948년 12월 12일의 國際聯合總會에 의한 承認은 “國家의 承認”(recognition of state)이 아니라 韓半島에 唯一한 合法政府의 承認, 즉 “政府의 承認”(recognition of government)인 것이다. 따라서 大韓民國은 舊韓國과 法的 同一性을 가진 國家이며, 大韓民國 政府는 韓國의 唯一한 合法政府이고 따라서 北韓政權은 不法政府인 것이다.

그러면 不法政府인 北韓의 實體는 무엇인가?

1950년 6월 25일 北韓의 南侵에 대해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는 同日 北韓으로부터의 大韓民國(Republic of Korea)에 대한 武力的 攻擊은 平和의 破壞를 이루는 行爲라고 決定하고, “北韓當局”(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에 대해 그의 兵力을 38度線까지 撤收할 것을 要求하는 決議를 採擇했다. 이 決議에서 “北韓當局”이라 한 것은 大韓民國(南韓)을 國家로 보고 北韓은 “地方的 事實上 政府”(de facto local government)로서 “叛徒團體”(insurgency) 또는 “交戰團體”(belligerency)로 본 것이다. 交戰團體는 戰爭에 관한 條約을 締結할 수 있으므로 1953년 7월 17일의 “休戰協定”의 締結로 北韓이 國家로 承認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1972년 “南北共同聲明”에 의해 大韓民國이 北韓을 國家로 承認한 것이 아니며, 이는 同聲明 후 1972년 12월 17일에 公布된 第4共和國 憲法 제3조에서 종전과 같이 韓半島 全域을 大韓民國의 領土로 본다는 規定에 의해 明白히 表示되었다.

1973년 6월 23일의 “平和統一政策宣言”에서 相互內政不干涉(제2항), 國際聯合同時加入(제5항) 등의 提議는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疑問을 가질 수도 있게 했다. 그러나 同 宣言은 그 自體에 다음과 같이 宣明함으로써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을 明示的으로 表示했다.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 관계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 둡니다.

1982년 1월 22일의 “南北基本關係暫定協定”의 締結提議에 의해서도 北韓이 國家로 承認된 것은 아니다. 同 提議 第1項에 “互惠平等의 原則”을 宣明하고 있으나 이 提議를 北韓이 受諾하고 “南北基本關係暫定協定”을 締結하기 前까지 北韓은 國家가 아님이 明白하며, 同 協定을 締結한 후 北韓이 國家의 承認을 받은 것으로 되는가는 別途의 檢討를 要한다.

1988년 7월 7일의 “7·7宣言”에는 다음과 같은 表現이 있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하나의 共同體라는 認識을 바탕으로 對決의 關係를 지양해야 합니다. 北韓이 책임있는 成員으로 國際社會에 기여하고, 그것이 北한 社會의 開放과 發展을 촉진하게 되기를 希望합니다.

國際社會에서 南北은 相互間에 서로의 위치를 認定하고 民族全體의 利益을 爲해 協力해야 합니다.

위 宣言 中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라는 表現은 大韓民國이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할 수도 있으나 同 宣言 제3항에는 “南北間 交易의 門戶를 開放하고 南北間 交易을 民族內部交易으로 간주한다”고 表示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는 것이 아님을 明白히 알 수 있다.

2. 南北聯合 構成 以後의 南北韓의 地位

1989년 9월 11일 大統領이 國會 特別演說을 통해 表示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제의는 北韓을 國家로 承認한 것인가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同 提議에는 다음과 같이 北韓을 認定하는 表現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현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提議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라는 意味는 “相互性”과 “同等性”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對外的 意味와 對內的 意味로 나누어, 南北韓의 地位를 “對外的 地位”와 “對內的 地位”로 區分하여 보기로 한다.

가. 對外的 地位

첫째 對外的으로 보면, 즉 南北韓과 第3國과의 關係를 보면 (i)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 함은 大韓民國이 大韓民國을 承認한 國家와의 關係에서 國家

인 것처럼, 北韓도 北韓을承認한 國家와의 관계에서 國家라는 것을 大韓民國도 北韓도 이를 서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解釋될 수 있다. (ii) 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를 大韓民國이 大韓民國은 國家이나 北韓을 “地方的 事實上 政府”로, 北韓도 北韓은 國家이나 大韓民國을 “地方的 事實上 政府”로 각각 인정한다는 뜻으로 解釋될 수 있다.

그러나 (ii)의 해석은 이는 “서로가 서로”라 함은 同等性を 포함하는 通常的 意味의 解釋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이런 意味로 解釋한다면 위 提議는 아무런 意義도 없는 것으로 되고 만다.

그러므로 對外的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 함은 大韓民國은 北韓이 對外的으로 國家라는 事實을 인정하고, 北韓도 大韓民國이 對外的으로 國家라는 事實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解釋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라는 “相互性”과 “同等性”에 合致된 解釋으로 본다.

나. 對內的 地位

둘째 對內的으로 보면, 즉 “南北聯合”構成體인 南北韓 相互間에 보면 (i)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 함은 大韓民國이 國家인 것처럼 北韓도 國家라는 것을 大韓民國과 北韓이 인정한다는 뜻으로 解釋될 수 있다. (ii) 그리고 大韓民國은 國家이나 北韓은 “地方的 事實上 政府”라는 것을 大韓民國이 인정하고, 北韓은 國家이나 大韓民國은 “地方的 事實上 政府”라는 것을 北韓이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iii)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北韓을 民族共同體인 “南北聯合”의 한 構成員이라는 것을 認定하고, 北韓도 大韓民國을 民族共同體인 “南北聯合”의 한 構成體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解釋이다.

(i) (ii) (iii)의 解釋 중 (i)의 解釋은 “서로가 서로”라는 “相互性”과 “同等性”에 合致되는 해석이나 이는 결국 南北이 相互國家承認을 하는 것으로 되어 分斷을 法的으로 承認하는 것, 즉 “分斷의 合法化”로 統一의 目標에 反하는 것이 된다.

(ii)는 “서로가 서로”라는 “相互性”에는 合致하나 “同等性”의 意味에 反하는 해석이고 또 이러한 해석은 위 提議의 意義를 잃게 한다.

(iii)은 “서로가 서로”라는 “相互性”과 “同等性”의 意味를 살린 解釋이고 南北 聯合은 “잠정적으로 국가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라는 政府의 立場에 부합되는 해석이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의 뜻을 對外的으로는 위 (i)의 解釋을 따르고 對內的으로는 위 (iii)의 解釋을 따를 때, 결국 大韓民國은 對外的으로 北韓을 “國家”로 承認하는 것이고 對內的으로는 北韓을 “民族共同體인 南北聯合의 한 構成體”로 承認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對內的으로 北韓의 地位는 “民族共同體인 南北聯合의 構成體”로 될 뿐 國家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南北韓의 地位는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北韓이 受諾하여 “民族共同體憲章”에 南北이 合意하여 “南北聯合”이 發足된 이후의 地位이며,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提議 自體에 의해 당연히 認定되는 地位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民族共同體憲章”에 南과 北이 合意하기 前까지의 北韓의 地位는 大韓民國의 立場에서 볼 때 交戰團體로서의 “地方的 事實上 政府”의 地位에 아무런 變動이 없는 것이다.

Ⅲ. 南北聯合의 制度的 課題

1. 制度的 課題의 意義

“南北聯合”의 制度的 課題란 觀點에 따라 여러가지 意味로 사용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民族共同體인 “南北聯合”을 어떻게 制度化할 것이냐의 問題를 보기로 한다. 그런 의미로 볼 때 “南北聯合”의 制度的 課題란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어떻게 規定化하느냐의 課題 즉, “民族共同體憲章”의 制定問題를 뜻하게 된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制度的 課題의 내용은 “民族共同體憲章”의 性格·名稱·內容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制度的 課題의 內容을 “民族共同體憲章”의 性格·名稱·內容 등으로 區分하여 보기로 한다.

2. 制度的 課題의 內容

가. 民族共同體憲章의 性格

(1) 憲章의 法的 拘束性

“南北聯合”의 法的 基礎인 “民族共同體憲章”은 法的 拘束력이 있는 合意인지 아니면 法的 拘束력이 없는 政策의 宣言에 불과한 것인지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 표시된 것으로는 不明確하다. 다만, 그 해설에서 “내적 특수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약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설명으로 보아 法的 拘束력이 있는 合意인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國際法 主體間의 政策의 決定·推進過程을 보면 먼저 法的 拘束力이 없는 “政策의 宣言”을 하고, 그 뒤에 그 後續措置로서 法的 拘束力이 있는 “條約”을 締結해 나가는 것이 通例이다. 그러한 예의 하나로 “政策의 宣言”인 1943년의 “Cairo宣言”(Cairo Declaration)과 1945년의 “Potsdam宣言”(Potsdam Declaration)에 뒤이어 그 後續措置로서 法的 拘束力이 있는 “條約”으로 1951년의 “對日平和條約”(Peace Treaty with Japan)과 1956년의 “蘇日共同宣言”(Soviet-Japanese Joint Declaration)이 뒤따른 것을 들 수 있다.

法的 拘束力이 없는 政策의 宣言의 명칭은 1941년의 “大西洋憲章”(Atlantic Charter), 1954년의 “Potomac憲章”(Potomac Charter)처럼 “憲章”인 경우도 있고, 1943년의 “Cairo宣言”, 1945년의 “Potsdam宣言”, 1948년의 “세계인권宣言”(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처럼 “宣言”인 경우도 있다. “政策의 宣言”에 뒤이어 이의 施行으로 행하여지는 法的 拘束力이 있는 合意의 명칭도 일정하지 아니하다. 1856년의 “Paris宣言”(Paris Declaration), 1869년의 “聖 Petersburg 宣言”(St. Petersburg Declaration), 1909년의 “London宣言”(London Declaration), 1956년의 “蘇日共同宣言”(Soviet-Japanese Joint Declaration)등은 “宣言”의 명칭을 가진 條約이며, 1945년의 “國際聯合憲章”(Charter of the U.N.), 1945년의 “UNESCO憲章”(Constitution of the UNESCO), 1946년의 “世界保健機構憲章”(Constitution of the WHO), 1948년의 “Bogota憲章”(Bogota Charter), 1961년의 “유럽社會憲章”(European Social Charter), 1963년의 “아프리카 單一機構憲章”(Charter of the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1964년의 “萬國郵便聯合憲章”(Constitution of the UPU)등은 “憲章”의 이름을 가진 條約이다.

따라서 어떤 “憲章”이 그 名稱만으로 보아 “政策의 宣言”인지 아니면 “法的

拘束력이 있는 合意”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政策의 宣言”인지 아니면 “法的 拘束력이 있는 合意”인지의 구별은 당사자의 “條約締結意思”(animus contrahendi)의 有無에 따라 定해진다. 이 “條約締結意思”는 당사자의 主觀的인 것이므로 이의 有無를 客觀的으로 判別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개 宣言 또는 合意의 “內容”이 權利·義務를 設定하는 것이 아닌 경우, 그 “形式”이 條文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條約締結意思”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南北聯合”의 結成基礎인 “民族共同體憲章”은 “政策의 宣言”인지 “法的 拘束력이 있는 合意”인지를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憲章의 後續措置로서 條約을 별도로 締結하지 아니할 것이라면, 이 憲章을 法的 拘束력이 있는 合意로 하려는 條約締結意思가 있다면 그러한 “內容”과 “形式”을 따라야 할 것이다. 요컨대, “民族共同體憲章”의 草案을 作成한 경우 “法的 拘束력이 있는 合意”로 客觀的으로 認定될 수 있도록 權利·義務를 규정하는 “內容”과 條文의 “形式”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2) 憲章의 條約性

“南北聯合”을 結成하는 基礎인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 의하면 “통일을 촉진할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현장에 따라”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서 이 憲章이 條約인지 아닌지가 不明確하다. 다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기본해설자료”에 의하면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조약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임”이라 表示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民族共同體憲章”은 條約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條約은 國家와 國家간에만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國家 이외의 國際法

의 主體간에도 체결되는 것인 바, 民族共同體의 構成體인 南北韓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國際法上 國家는 아니나 “地方的 事實上 政府”(de facto local government) 또는 “中央的 法律上 政府”(de jure central government)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들 政府는 條約을 체결할 國際法上 能力을 갖는다.

둘째, “民族共同體憲章”을 國際法上 特殊한 것이라고 하지만 民族共同體 構成體간의 合意는 그 構成體인 南韓의 國內法上 特殊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北韓의 國內法上 特殊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南北韓의 國內法을 超越하는 “民族共同體法”이 없으므로 南北聯合의 基礎인 “民族共同體憲章”은 결국 國際法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세째, 南北共同體의 構成體인 南北韓의 頂上間의 合意는 결코 南韓 또는 北韓의 憲法·法律·命令·規則·自治規則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南韓 또는 北韓의 “公法上 契約” 또는 “私法上 契約”일 수도 없으므로 그것은 條約인 것이다.

네째, “南北聯合”의 基礎인 “民族共同體憲章”의 憲法的 根據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이를 條約으로 보아야 하며, 또 이를 조약으로 볼 경우에만 憲法 제6조 제1항의 “憲法節次에 따라 締結公布된 條約 …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民族共同體憲章”은 國內的 效力이 인정될 수 있다.

요컨대, “民族共同體憲章”은 民族共同體의 構成體인 南北韓을 공동으로 규율하는 “民族共同體法”이 없으므로 그것은 南北韓을 각기 一方만을 규율하는 南韓의 國內法 또는 北韓의 國內法에 근거할 수 없으며, 南北韓을 공동으로 규율하는 법인 國際法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民族共同體憲章”은 條約인 것이다.

(3) 憲章의 法律性

“南北聯合”의 基礎인 “民族共同體憲章”은 民族共同體의 構成體인 南北韓의 각기의 憲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이며, 결코 그것은 南北韓의 憲法을 超越하는 것이 아니므로 “民族共同體憲章”의 國內的 效力은 法律과 同位的 效力을 갖는 것이며 결코 超憲法的인 것이 될 수 없다.

“民族共同體憲章”은 條約에 준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憲法 제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해 “國內法과 同一한 效力”이 있는 것이며 條約은 國內法 중 法律과 同一한 效力이 있으므로(通說) “民族共同體憲章”은 國內法律과 同一한 效力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憲法에 위배되는 “民族共同體憲章”의 규정은 “上位法 優先의 原則”에 따라 無效로 되며, 또 “民族共同體憲章”에 위배되는 既存의 法律은 “新法優先의 原則”에 따라 無效인 것이다.

요컨대 “民族共同體憲章”을 채택할 경우, 그 內容이 憲法에 위배되지 않도록 留意하고 또 계속해서 效力의 存續을 요하는 既存 法律에 저촉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과제가 있다.

나. 民族共同體憲章의 名稱

(1) 民族共同體 “憲章”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 의하면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憲章에 따라”(下線筆者)라고 表示되어 있다. 1972년의 “東西獨基本條約”은 “基本條約”으로, 1982년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의한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에는 “暫定協定”으로 각각 표시되어 있다. “國家와 國家간에 체결되는 條約”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條約”, “協定”등의 용어를 忌避하고 “憲章”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이에는 暫定性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暫定性을 표시하도

특 고려해야 할 것이다.

“憲章”이란 용어는 그것이 國際法上 條約이면서 동시에 그 條約에 의거 設立되는 組織이 法人格을 가진 機構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1945년의 “世界保健機構憲章”, 1948년의 “Bogota憲章”, 1963년의 “아프리카 單一機構憲章” 등은 모두 각각 그 組織의 法人格을 創設하는 條約이다. 民族共同體인 “南北聯合”의 構成體인 南北韓은 각기 法人格을 가지지만 民族共同體인 “南北聯合” 그 自體는 독립된 法人格을 가진 組織이 아니므로 “憲章”이란 용어는 이 點에서 적절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東西獨基本條約”은 同 條約에 의해 東西獨으로 이루어지는 組織體의 法人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暫定性을 표시하기 위해 “憲章”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條約”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요컨대 “民族共同體憲章”의 暫定性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憲章”보다 “條約” 또는 “協定”이라는 명칭이 보다 적절하며, 民族共同體인 “南北聯合”의 構成體간의 특수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條約” 또는 “協定”보다 “合意書”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民族共同體憲章” 초안 작성시 그 名稱을 “暫定合意書” 또는 “暫定憲章”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과제가 있다.

(2) “民族共同體”憲章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는 “民族共同體”憲章으로 표시되어 있다. “民族共同體”는 社會學的 概念이며 “憲章”은 法學的 概念이다. 그리고 이 憲章에 의하여 民族共同體가 “南北聯合”을 形成하게 되므로 社會學的 概念인 “民族共同體”를 法學的 概念인 “南北聯合”으로 置換하여 “南北共同體憲章”으로 표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憲章”이란 용어까지를 고려하면 “民族共同體憲章” 초안 작성시 “南北聯合暫定憲章” 또는 “南北聯合暫定合意書”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民族共同體憲章”의 명칭을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도 檢討를 요하는 과제의 하나이다.

다. 民族共同體憲章의 內容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南北聯合”의 基礎인 憲章의 內容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 현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의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內容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平和와 統一을 위한 基本方案

“民族共同體憲章”에는 平和와 統一을 위한 基本原則을 설정하고 이 원칙에 따른 제방안을 平和와 統一로 구분하여 規定해야 할 것이다.

平和와 統一을 위한 基本原則은 1972년 7월 4일의 “南北共同聲明”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바 있는 自主·平和·民族大團結의 3대원칙을 규정하면 될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平和와 統一을 위한 이 基本原則에 따라 平和를 위한 基本方案과 統一을 위한 基本方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平和를 위한 基本方案으로 (i)休戰體制의 平和體制로의 代替, (ii)軍備縮小, (iii)兵力減縮, (iv)核武器撤去 (v)外國軍撤收 등에 관해 北韓이 수락할

수 있는 限界線을 設定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統一을 위한 基本方案으로 (i) “南北評議會”를 구성하고, (ii)이 “南北評議會”에서 統一憲法을 기초하고, (iii)이에 따라 總選舉를 실시하여, (iv)統一政府·統一國會를 수립하는 방안을 規定해야 할 것이다. 이는 連席會議 方式으로 聯邦制의 실현방법을 협의하자는 北韓의 基本方案과 다르므로 이 基本方案을 規定하는 것은 어려운 課題 중의 하나이다.

(2) 相互不可侵에 관한 事項

“南北聯合”의 構成體인 南北이 상호 현재의 領域을 尊重하고 이를 侵犯하지 아니한다는 規定을 두어야 한다.

여기 相互不可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과제는 (i)境界線이 國境이 아니라는 것을 明示할 것인가, (ii)南北의 境界線을 38度線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休戰協定上 軍事分界線으로 할 것인가, (iii)海上境界線을 설정할 것인가 이를 하지 않을 것인가, (iv)侵略의 定義를 規定할 것인가 아니면 一般 國際法上 定義를 準用할 것인가, (v)不可侵을 第三國으로부터 保障받는 규정을 둘 것인가 이를 두지 않을 것인가 등이다.

(3) 南北聯合의 機構

聯邦國家의 中央統治機構는 單一國家의 統治機構와 같이 立法機關으로서의 議會, 行政機關으로서의 政府, 司法機關으로서의 法院으로 構成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러나 國家聯合의 統治機構는 國家聯合의 議會 즉, “聯邦議會”(Diet)로 構成되고 國家聯合의 行政機關과 司法機關은 設置하지 아니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특히 聯邦國家의 경우는 聯邦憲法을 解釋하기 위해 聯邦法院을 設置하는

것이 一般的이며, 이 聯邦法院의 憲法解釋은 聯邦構成國을 拘束한다. 그러나 國家聯合의 경우는 聯邦憲法이 없으므로 이를 解釋하기 위한 國家聯合의 法院을 두지 않는 것이 一般的이다. 1781년의 “聯合規約”(The Article of Confederation)에 의해 召集된 美國 國家聯合議會, 1803년부터 召集된 Swiss國家聯合議會, 1958년의 統治條約에 의하여 召集된 Arab國家聯合의 最高會議(Supreme Council)은 國家聯合議會의 代表的인 例이다.

民族共同體인 “南北聯合”을 형성한 후 統治機構는 聯邦國家의 統治機構보다 國家聯合의 統治機構의 모형을 따라야 한다면 民族共同體議會만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議會에 해당하는 “南北評議會”이외에 “南北頂上會議”, “南北閣僚會議”, “共同事務處”를 설치한 것은 國家聯合의 通例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 이는 異例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民族共同體憲章”의 채택에 의해 民族共同體인 “南北聯合”이 형성되는 것이므로 民族共同體議會의 설치만으로 족할 것이다. “民族共同體憲章”의 채택으로 民族共同體인 “南北聯合”이 형성되었는데도 民族共同體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諸機構를 두는 것은 모순이다. 이를 모순이 아닌 것으로 보려면 결국 “民族共同體憲章”으로 “南北聯合”이라는 民族共同體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過渡的 共同體가 형성되는데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이 이러한 여러 機構를 둔 것은 유럽共同體의 機構를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유럽共同體는 “委員會”(Commission), “理事會”(Council), “유럽議會”(European Parliament), “司法裁判所”(Court of Justice)로 구성되어 있다. “委員會”는 委員國의 合意로 선출하는 13명의 執行委員으로 구성되는 執行機關이다. “理事會”는 委員國의 閣僚級으로 구성되어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非常任機關이다. “유럽議會”는 회원국이 인구비례에 따라 直接

·普通 選舉에 의해 선출하는 4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諮問的·統制的 機關으로 立法權은 없다. “司法裁判所”는 회원국에 의해 선출되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裁判機關이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南北聯合”의 機構로 “南北頂上會議”, “南北閣僚會議”, “南北評議會”, “共同事務處”, “連絡代表”를 설치하도록 하고, “南北閣僚會議”가 중심기관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南北聯合”의 특수한 國家聯合의 性格을 고려하고, “南北評議會”가 民族을 相對的으로 잘 代表하는 다수의 委員으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할 때 “南北評議會”가 意思決定機關으로서 중심기관이 되어야 할 것인가, “南北閣僚會議”는 “南北評議會”의 議決事項을 집행하는 執行機關이 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가) 南北頂上會議

最高決定機構로서 “南北頂上會議”를 制度化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유럽 共同體”의 경우 “理事會”는 1973년 12월 10일 파리정상회담에서 1년에 3번씩 外相을 동반한 頂上會談의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東西獨의 경우 1970년 3월 9일 브란트 西獨首相이 東獨을 방문하여 스토프 首相과 제1차 頂上會談을 가진 후 1970년 5월 21일 西獨에서 제2차 頂上會談이 개최되어 1972년 12월 21일 “東西獨基本條約”이 체결될 수 있었다.

“民族共同體憲章”의 초안작성시 (i)남북정상회의의 “召集方法”을 定期的으로 할 것인가, 필요시 一方의 要請으로 할 것인가, (ii)“召集場所”를 平和區域內로 할 것인가, 서울과 평양으로 할 것인가, (iii)이러한 上記사항을 “民族共同體憲章”에 規定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合意書로 規定하도록 할 것인가의 課題가 있다.

(나) 南北閣僚會議

(i) 南北閣僚會議의 “構成人員數”를 10명 내외의 각료로 하되, 구체적인 인원수를 고정시킬 것인가 또는 소집시마다 南北 쌍방이 合意하여 정할 것인가, (ii) “會議의 召集”을 定期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한 一方의 意思 또는 雙方의 合意로 정할 것인가, (iii) “會議의 場所”를 “平和區域”으로 고정할 것인가, 서울과 평양을 왕복하도록 할 것인가, (iv) “會議의 形式”을 圓卓式으로 할 것인가, 對座式으로 할 것인가, (v) “議長”을 共同議長制로 할 것인가, 남북한 輪番制로 할 것인가, (vi) “議決方法”을 南北韓의 각료의 구별없이 多數決로 할 것인가, 南北韓의 각료의 전원합의로 할 것인가, (vii) 이들 上記 여러 사항을 “民族共同體憲章”에 規定할 것인가, 별도 合意書에 규정하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viii) 남북각료회의의 “職務範圍”를 包括的·一般的으로 規定할 것인가, 또는 個別的·具體的으로 列舉할 것인가, (ix) “民族共同體憲章”에 규정할 것인가, 別途의 合意書에서 규정하도록 할 것인가를 민족공동체헌장 초안작성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南北閣僚會議”와 “南北評議會”의 權限關係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憲章草案 작성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南北評議會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다.

南北評議會는 民族共同體인 “南北聯合”의 議決機關이어야 하므로 民族의 意思를 代表할 수 있는 방법으로 選出·構成되어야 하고 南北間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政策을 樹立하는 權能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事項을 어떻게 規定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i) 議員을 職能을 대표하는 의원과 地域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것인가, (ii) 의원의 選定方法을 의원의 民族代表性을 강조하기 위해 南北이 共同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 (iii) 議長·副議長의 선출을 民族代表性을 강조하기 위해 南北이 共同으로 선정할 것인가, (iv) 議長·副議長은 南北이 각각 1인씩으로 할 것인가, (v) 議長·副議長은 南北이 輪番制로 할 것인가, (vi) 議決事項을 包括的·一般的으로 規定할 것인가 具體的·個別的으로 列舉할 것인가, (vii) 議決方法은 南北韓의 議員의 구별없이 多數決로 할 것인가, (viii) 議決定足數는 議決事項의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할 것인가, (ix) 上記 諸事項을 모두 별도 合意書로 정할 것인가 등이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는 南北評議會가 南北閣僚會議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로 되어 있는 것은 修正을 요하는 점이라고 본다. 南北閣僚會議는 執行機關이고, 南北評議會는 意思決定機關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機關의 構成原理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 共同事務處, 常駐連絡代表

共同事務處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i) 共同事務處의 構成을 南北으로 區分할 것인가, (ii) 共同事務處의 管理와 運營方法을 어떻게 할 것인가, (iii) 共同事務處의 職員의 法的地位를 어떻게 할 것인가, (iv) 共同事務處와 常駐連絡代表部와의 關係를 어떻게 할 것인가, (v) 常駐代表部의 施設과 常駐代表의 特權과 免除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vi) 이들 사항중 어떤 것을 별도 合意書로 정할 것인가 등이다.

(4) 內政不干涉·國際聯合憲章 尊重 등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는 제의된 바 없으나, 1982년의 “民族和合 民主 統一方案”에는 內政不干涉, 각기 既 締結한 條約의 效力에 關係 規定하고 있다. 民族共同體憲章에도 이에 關係 規定할 것인가는 檢討를 要하는 과제이다.

또한 1972년의 “東西獨基本條約”은 國際聯合憲章을 尊重한다는 規定을 두고 있다. 民族共同體憲章에도 이에 關係 規定해야 할 것인가도 檢討를 要하는 課題이다.

IV. 南北聯合의 實踐的 課題

1. 實踐的 課題의 意義

“南北聯合”의 實踐的 課題란 관찰의 立場에 따라 여러가지로 그 뜻을 새길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어떻게 現實化하느냐의 課題로 보기로 한다. 이는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어떠한 方法으로 實踐에 옮기느냐의 課題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動的인 側面에서 機能的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이 實踐的 課題를 “民族共同體憲章”의 實踐 내지 運營의 課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이하 “民族共同體憲章”을 채택하기 전과 그 후로 구분하여 敍述하기로 한다.

2. 實踐的 課題의 內容

가. 民族共同體憲章의 採擇 以前

(1) 民族共同體憲章 採擇을 위한 會談의 提議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이 推進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北韓으로 하여금 이 方案에 찬동하여 이에 參與하도록 誘導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頂上會談의 개최를 제의하기에 앞서 여러가지 形態의 會談과 그의 實務者 會談의 開催를 提議해야 할 것이다. 이들 提議를 北韓이 一蹴해도 반복해서 다시 提議해야 할 忍耐가 要求된다.

경우에 따라 秘密接觸을 통해서 北韓으로 하여금 “民族共同體憲章”을 채택

하는데 同意하도록 努力해야 할 것인가도 檢討해야 할 과제이다. 이 課題의 決定에는 1972년 7월 4일의 “南北共同聲明”이 秘密接觸에 의해 이룩될 수 있었다는 經驗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第三國에 대한 外交

북한이 “南北聯合”을 形成하기 위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 贊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부터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 대한 理解와 支持를 획득하기 위한 제반 外交力量을 다 해야 할 것이다. 특히 蘇聯·中國·東歐諸國으로 부터의 理解와 支持는 北韓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自主統一과 調和될 수 있느냐를 檢討해야 할 基本的인 課題를 제기시킨다.

(3) 信賴回復과 敵對感 解消의 努力 表示

北韓이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 贊同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南北이 相互 信賴를 回復하고 敵對感을 解消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南韓이 먼저 北韓에 대해 信賴를 回復하고 敵對感을 解消하기 위해 努力하는 뜻을 표시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 信賴回復과 敵對感 解消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南北聯合 形成후에 平和協定の 締結, 軍備制限, 兵力減縮 등의 제문제에 관해 北韓과 協議할 用意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는 實務者會談 또는 頂上會談 提議시마다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는 實踐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學者와 專門家의 意見을 모아 신중히 검토하여 表示하여야 할 것이다.

(4) 民族共同體憲章 草案의 準備

北韓이 “南北聯合”을 形成하기 위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 찬동하여 어떤 形態의 것이든 會談에 應해 올 경우를 대비하여 “民族共同體憲章”의 草案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北韓이 우리의 “民族共同體憲章”초안에 대히 修正을 提議해오면 이를 충분히 討議 受容하되 그 限界를 미리 설정하여 協商에 對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限界를 設定해야 할 과제가 있게 된다.

나. 民族共同體憲章의 採擇 以後

(1) 信賴回復과 敵對感 解消의 實踐

“民族共同體憲章”을 채택한 후에는 신뢰회복과 적대감의 해소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가) 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代替

戰爭狀態에서 “南北共同體”의 形成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현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해야 한다. 따라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이 休戰體制를 平和體制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南北關係의 큰 發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國際聯合軍의 韓國駐屯의 根據를 喪失케 하여 결국 國際聯合軍의 撤收의 結果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i)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할 것인가, (ii) 이에 對備하여 새로운 國際聯合平和維持軍 또는 기타의 國際監視軍 등을 도입할 것인가는 검토를 要하는 과제이다. (iii) 또한 平和協定을 체결할 경우 平和協定의 當事者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중대한 과제이다. 平和協定은 南北을 當事者로 체결해야 함이 自主的인 民族의 要求이다. 그러나 休戰協定 제60항과 제62항의 규정, 1953년 8월 28일의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 제711호, 1954년 6월 15일 16

個國 共同宣言, 國際聯合軍司令官의 國軍에 대한 作戰指揮權의 行使 등은 이를 制約하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軍備制限, 兵力減縮과 美軍撤收

軍備制限, 兵力減縮과 美軍撤收는 南北間의 信賴回復과 敵對感 解消를 前提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또 軍備制限, 兵力減縮과 美軍撤收는 南北間의 信賴回復과 敵對感 解消의 結果를 가져온다. (i) 軍備制限과 兵力減縮은 國際的 監視制度의 도입을 전제로만 가능한 것이므로 어떠한 監視方法을 도입할 것인가, (ii) 國際的 監視制度의 도입은 自主統一의 原則에 反하므로 이와 어떻게 調和點을 찾을 것인가, (iii) 軍備制限과 兵力減縮의 限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iv) 韓美相互防衛條約 제4조에 의해 美國은 駐兵權이 있으므로 美軍撤收는 이 規定과 어떻게 調和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러가지 문제가 解決을 要하는 課題로 제기된다.

(다) 平和區域의 設定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非武裝地帶내에 適定區域을 平和區域으로 設定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는 “南北聯合”의 構成體인 南北間의 信賴를 回復하고 敵對感을 解消하는 方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平和區域을 非武裝地帶에 設定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法的 問題가 있다.

(i) 休戰協定上 非武裝地帶에의 出入은 兩側 軍司令官의 許可를 받아야만 가능하므로 平和區域의 設定에는 兩側 司領官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ii) 平和區域안에 適用되는 法은 어떤 法이며 裁判管轄權은 어디에 귀속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iii) 平和區域이 治外法權地域으로 庇護權을 갖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2) 統一憲法草案의 準備

“民族共同體憲章”을 채택한 후 우리측 統一憲法草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통일헌법초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다음 두가지라고 본다.

(가) 大韓民國政府의 正統性 維持

統一憲法草案은 大韓民國政府의 正統性을 維持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大韓民國憲法을 否定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統一된 韓國도 정통성이 있는 大韓民國이어야 하므로 南北이 統合하여 新生國으로 되는 統一은 憲法上 허용될 수 없으므로 統一憲法 草案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부딪히게 된다.

(나) 民主的 基本秩序의 維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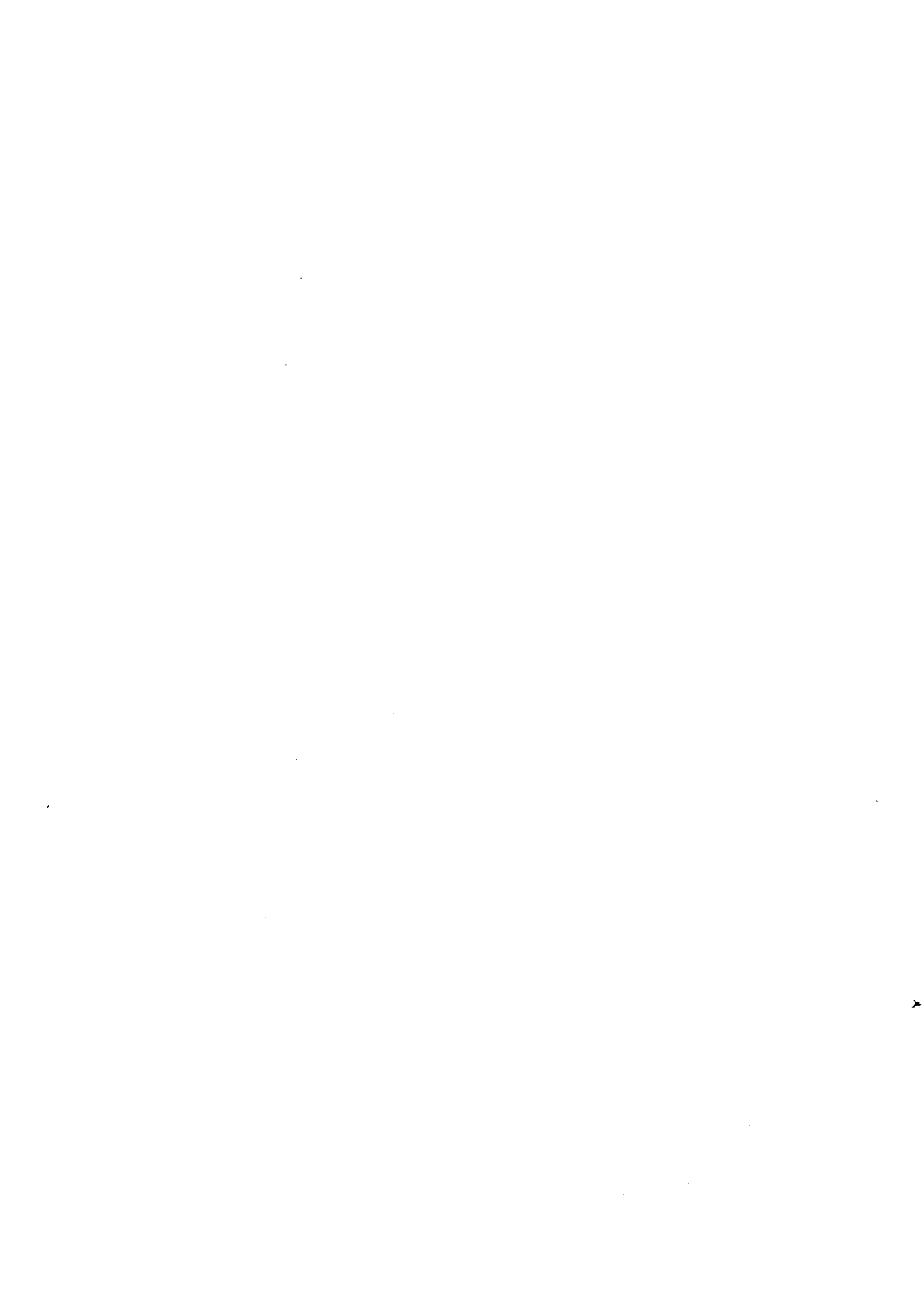
統一憲法 草案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므로(憲法 제4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社會主義 내지 共產主義的 基本秩序에 一部 또는 全部 讓步하는 統一國家는 우리 憲法上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北韓이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統一國家를 원하지 아니하는 한 統一은 不可能한 것으로 되고 만다. 따라서 우리 憲法의 暫定性을 인정하는 改正이 要求된다.

V. 結 論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이 過渡體制로서 “南北聯合”을 提示하고 過渡機構로서 “南北頂上會議”, “南北閣僚會議”, “南北評議會”를 設置한 것은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에 비해 큰 進展을 본 것으로 높이 評價된다.

그러나 “南北聯合”의 制度化 즉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制度化에는 “民族共同體憲章”의 法的 性格을 어떻게 볼 것이며, 過渡機構의 性格·構成方法·權限分配 등에 관해서도 研究·檢討해야 할 많은 課題가 있다. 또한 “南北聯合”의 實踐 즉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實踐에도 北韓의 同意를 얻어야 하는 基本的 課題이외에도 南北韓의 信賴回復과 敵對感 解消을 위한 平和協定締結·軍備縮小·兵力減縮·軍事撤收 등 解決해야 할 難題가 가로 놓여 있다. 그리고 統一憲法草案은 大韓民國 憲法上 統一韓國은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維持하고 民主的 基本秩序에 立脚한 것이어야 하므로, 北韓이 그의 正統性을 포기하고 民主的 基本秩序를 受容하지 않는 限 “統一憲法”으로 採擇되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므로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課題가 難題 중 難題로 남아 있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事實上的 分斷을 容認하면서 法的 分斷을 忌避하기 위해 法域 外延에 “南北聯合”이라 불리우는 한민족공동체라는 概念을 創出했으나 그의 實體는 法的으로 어떻게 品質되어야 할 것인지 研究課題로 남아 있다. 統一의 正道는 理論의 論理的 構成에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統一의 障礙要因을 하나 하나 除去해 나가는 民族的 合意와 그 實踐속에 있는 것이다.



3. 統一憲法草案에 관한 試論

張明奉 (國民大 教授)

目 次

I. 序 言	185
II. 統一國家의 未來像과 統一憲法의 制定方向	187
III. 統一憲法의 理念	189
IV. 統一憲法의 基本秩序	193
V. 統一憲法의 基本原理	195
VI. 統一憲法의 構成	196
VII. 結 論	202



I. 序 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완전한 統一國家에 이르는 中間過程으로서 南北韓의 共存共榮, 民族社會의 同質化, 民族共同生活圈을 형성하는 過渡的 統一體制인 「南北聯合」을 결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統一方案에 의한 統一國家의 樹立節次를 보면, 「南北聯合」의 代議機構인 「南北評議會」에서 統一憲法草案을 마련하여 이것을 民主的인 方法과 節次를 거쳐 統一憲法으로 確定·公布하고, 이 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南北韓 전지역에 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구성함으로써 하나로 통일된 民族國家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 統一方案에서 밝히고 있는 統一國家의 未來像은, 南北韓 民族成員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民族共同體로서 각자의 自由·人權·幸福이 보장되는 民主國家이다. 그리고 統一國家形態는 單一國家(unitary state)로서 民主共和國이며, 統一國會는 兩院制를 채택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처럼 統一憲法 制定을 통하여 統一을 이룩하는 것은 平和的 統一을 위한 가장 規範的인 方法이 된다. 그러나 統一憲法은 南北韓의 政治的 統一을 전제로 하여 南北韓간의 이데올로기적·體制的 接近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만큼 일정한 體制接近의 과정을 통한 상호접근 노력이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制定作業은 至難한 일인 것이다.

아무튼 南北韓이 각기 理念과 體制가 다른 憲法을 가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統一憲法案의 內容을 대별하면, 첫째로 現行 憲法의 自由民主主義的 理念과 制度에 기초하면서 여기에 약간의 修正을 가하는 方

法, 둘째로 기본적으로 現行 憲法에 기초하면서도 北韓의 憲法과 統一案을 고려하여 自由民主主義憲法과 社會主義憲法을 혼합·절충하는 方法, 셋째로 北韓의 憲法과 統一案에 입각한 聯邦國家에 기초하는 方法이다. 이중에서 첫번째의 방안이 南北韓간의 統一憲法 協商過程에서 1次的으로 제시될 性格의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統一憲法 草案에 관한 骨格 構想은 現行 憲法에 기초하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된 統一國家의 未來像을 염두에 두어 마련된 것이다. 이것은 시간적인 면에서도 이런 性格의 統一憲法 草案의 준비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II. 統一國家의 未來像과 統一憲法의 制定方向

統一國家의 未來像은 自由·人權·幸福이 보장되는 民主國家라고 새 統一方案에서 선언되고 있음을 전제하여 볼 때, 自由와 平等이 조화되는 高度 福祉國家 建設은 統一國家의 目標가 될 것이다. 따라서 統一憲法의 制定方向은 한마디로 그러한 目標指向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 共產社會主義에서는 平等概念의 중시로 經濟的·實質的 平等에 重點을 둔 福祉國家의 概念이 강조되고, 반면에 自由民主主義國家에서는 政治的·形式的 平等에 重點을 둔 自由概念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兩者의 關係에서 보아 統一國家의 未來目標는 脫共產主義·脫自由民主主義의 선언, 즉 脫兩極體制의 선언이라 할 수 있는 自由와 平等이 조화되는 高度 福祉國家 建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蘇聯 및 東歐社會主義國家가 지향하는 體制模型은 北歐型 先進福祉國家, 특히 스웨덴을 들고 있다. 스웨덴은 실제로 自由·福祉는 물론 平等의 실현에 있어서 어느 社會主義國家보다 앞서며, 그 生産體系는 資本主義的이나 分配體系는 社會主義的이고, 기본적인 政治過程은 自由民主主義的이나 社會經濟政策은 보다 社會民主主義的이다. 따라서 스웨덴은 自由民主主義와 社會主義가 결합·접근하는 福祉主義的 社會民主主義國家로서 그 모델이 되고 있다.

현재의 東歐社會主義의 體制變革은 장기적으로 보아 南北韓關係에 좋은 영향이 미치리라 예상되고, 現代에 있어서 實質的 平等과 福祉를 지향하는 民主政治는 반드시 自由民主主義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를 볼 때, 民主社會主義로의 改革은 自由·人權·幸福의 보장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

를 추구하는 統一國家의 未來像에 적합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人間의 尊嚴과 價値가 最大化로 保障되는 福祉國家의 建設은 統一國家의 課題가 되며, 그 未來像으로 北歐 先進福祉國家로서 自由·福祉와 함께 平等에 있어서 理想的 發展을 이루고 있다는 스웨덴이 그 模型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未來의 統一國家像과 관련하여 새 統一方案에서는 單一 民主共和國으로 國家形態가 제시됨에 따라 統一憲法의 理念으로는 民族主義, 民主主義, 自由主義, 平等主義, 人間主義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統一憲法의 基本原理로는 國民主權主義, 基本權尊重主義, 權力分立主義, 福祉國家主義, 文化國家主義, 法治主義, 國際平和主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統一憲法의 基本秩序를 政治的, 經濟的, 社會·文化的, 國際的인 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Ⅲ. 統一憲法の 理念

1. 民族主義

南北韓은 單一民族으로서의 歷史的 傳統을 바탕으로 民族再結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當爲的 觀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統一과 연결될 수 있는 南北韓간의 共通分母이다. 따라서 統一은 民族의 지상과제이며 韓國民族主義의 궁극목표가 된다. 우리 民族은 人種的 單一성과 文化的 一致性으로 歷史的 實體임과 동시에 政治的 組職의 단위라야 한다. 곧 單一民族國家의 형성이 우선적인 價値가 되어야 한다. 南北分斷狀況下에서는 韓民族의 완전한 民族自決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統一의 완성으로 民族의 自主性を 확립하여야 한다.

民族分斷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民族國家로의 統一을 추구하는 우리의 경우 民族主義는 憲法の 불가결한 基本理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民族主義는 대내적으로 소수 극단적인 民族主義가 아닌 國家의 다양한 利害關係를 포괄적으로 조정하여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政治的·經濟的으로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民主的 民族主義여야 한다. 統一國家는 궁극적으로 韓國의 民族主義가 國內政治的인 완성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統一憲法은 分斷民族史의 종식과 새로운 民族統一國家의 建設을 선언하여야 한다.

2. 民主主義

民主主義는 多義的 概念이나 東歐的 民主主義와 西歐的 民主主義로 대별할 수 있다. 이 後者를 自由民主主義라고 일컫는다. 현대에 이르러 自由民主主義

는 自由와 形式的 平等에 치우침으로써 國民의 실질적 平等과 福祉의 要素가 결핍되어 經濟分配의 矛盾 등 폐단을 초래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民主 社會主義 내지 社會民主主義가 등장하였다. 社會民主主義는 自由·平等·福祉를 그 理念으로 하고, 複數政黨制를 기반으로 한 議會民主主義를 신봉하며, 수단 및 목적에 있어서 民主主義와 불가분의 관계를 확신하고, 가능한 한 經濟的 平等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共產主義와 대립된다.

우리 憲法の 解釋에 있어서도 現行 憲法上의 民主的 基本秩序는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와 社會民主的 基本秩序의 總合概念으로 自由와 平等, 福祉의 요소가 함께 들어 있는 것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社會民主主義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民主主義는, 自由民主主義는 물론 社會民主主義를 포괄하는 上位概念으로, 統一國家의 政治的 理念은 自由民主主義 뿐만 아니라 社會民主主義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최근의 헝가리·폴란드를 비롯한 東歐社會主義國家의 變化는 우리에게 理念과 體制에 대한 省察과 함께 統一憲法 論議에 있어 示唆하는 바가 크다. 그 중 헝가리의 변화는 東歐改革의 集大成이자 다른 次元으로의 體制變革을 위한 試金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헝가리는 社會主義勞動者黨(共產黨)이 스스로 共產主義를 포기하고 民主社會主義政黨(헝가리 社會黨)으로 변신한데 이어 改憲案을 통과시켜 共產黨 1黨獨裁體制를 종식하고 多黨制에 기초한 議會民主主義를 채택함으로써 政治的 多元主義를 표방함과 동시에 國號도 종래의 「헝가리人民共和國」에서 「헝가리共和國」으로 변경하였다. 폴란드도 共產黨과 社會主義의 破産을 선언하고 유럽식 社會主義政黨의 창설을 예정하고, 프롤레타리아獨裁와 民主集中制의 마르크스-레닌主義와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거부하는 대신에 진정한 議會民主制와 表現의 自由, 人權尊重의 社會定着을 주장하

였다. 東獨에 있어서도 複數政黨制의 도입, 自由選舉의 실시, 言論의 自由 등의 근본적 체제변혁 요구로 政治的 多元主義에 입각한 西方의 政治的 제도와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헝가리를 위시한 東歐社會主義國家들의 脫理念的 改革의 불결은 民主化 要求와 經濟危機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改革은 프롤레타리아階級獨裁 脫皮, 多黨制에 바탕을 둔 議會民主主義, 混合經濟體制 등을 근간으로한 民主社會主義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3. 自由主義

南韓은 自由主義 原理에 입각하고 있으나, 北韓에서는 自由主義를 階級鬭爭 중심으로 理解하여 集團的 劃一性이나 體制的 教條性에 대한 부당한 個人自由의 강조이며 絶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危險思想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련의 改革, 헝가리의 民主社會主義로의 변신, 폴란드의 非共產政權의 등장, 東獨의 베를린장벽 철거로 이어지는 東歐社會主義國家들의 變化는 기본적으로 스탈린主義와의 청산을 의미하며, 理念的 劃一化와 一黨獨裁體制의 強制力에 대한 自由의 擴大라는 점에서 自由야말로 人間이 추구하는 불변의 가치이며 歷史의 원동력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自由主義에 도전했던 파시즘과 共產主義가 그 타당성과 설득력을 상실하여 自由의 觀念이 최종 승리한 것임을 의미한다. 오늘날 東歐共產國家들의 變化는 人間이 自由롭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충족되는 國家建設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4. 平等主義

平等思想은 現代的 의미에서 平均的 正義의 實現에 국한되지 않고, 配分的 正義의 理念에 근거하는 實質的 平等이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즉, 現實의 社會生活에서의 구체적인 不平等을 해소시킴으로써 모든 인간의 均등한 인간다운 生活을 보장하는 것으로 經濟的・社會的・實質的 平等을 요청하는 것이다. 統一憲法은 모든 領域에서 각인의 機會를 均등히 하고, 國民生活의 均등한 향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統一國家에서는 貧者와 富者의 차이는 인정되나 이에 바탕한 階級이 인정되어서는 안되며, 差別과 階級없는 社會가 이루어지는 平等主義가 統一憲法의 理念이 되어야 한다.

5. 人間主義

人間主義는 人間을 개인으로서 존중하고 權利主體로 취급하며, 人間의 價値를 무엇보다 우선시킨다. 무릇 人間은 自主的이고 理性的인 人格體로 취급되어야 한다. 人間主義는 個人主義에 입각하여 人間價値의 우선이란 면에서 全體主義와 利己主義를 배격한다.

共產主義社會에서는 階級獨裁를 위하여 個人은 무시되고 集團主義에 기초한 共同生活이 강요되어 개인과 가족의 私生活은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統一國家에서는, 國家와 憲法이 수단적 지위에서 人間의 尊嚴性和 價値에 봉사함으로써 그 機能을 다한다는 점에서 보다 人間中心의 國家觀・憲法觀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人間主義를 統一憲法의 理念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IV. 統一憲法の 基本秩序

1. 政治的 基本秩序

統一憲法에서의 政治的 基本秩序는 단적으로 政治的 多元主義에 기초하여야 한다. 따라서 北韓에서와 같은 1黨支配體制를 배제하고 複數政黨制에 바탕한 議會民主主義가 확립되어야 한다.

오늘날 소련에서도 複數政黨制의 실시를 示唆하고 있으며, 東歐社會主義國家들은 모든 權力이 國民意思에서 나오고 自由選舉로 표시되는 多黨制에 기초한 議會民主主義制度의 채택으로 政治的 多元主義를 指向하고 있다.

2. 經濟的 基本秩序

經濟秩序는 自由市場經濟秩序를 기초로 하고 社會主義經濟體制의 장점을 가미하여 社會正義 실현과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지향한다. 統一國家는 自立的 民族經濟의 확립을 理念으로 하여 政治的 自由化, 經濟的 平等化, 社會的 多元化를 기반으로 하는 民主福祉國家體制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經濟體制는 混合經濟體制로서 私有財產制度를 근간으로 하면서 國·公有制를 도입하는 所有形態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늘날 資本主義經濟體制는 計劃經濟를 도입·활용하고, 社會主義經濟體制는 市場經濟原理를 받아들임으로써 兩體制간의 收斂化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근자에 헝가리, 폴란드 등의 市場經濟原理의 도입과 소련에서의 약간의 生産手段의 所有認定, 農民에게 賃借農地의 상속허용 등에서도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3. 社會・文化的 基本秩序

統一國家는 長期間의 分斷으로 인한 社會・文化的 異質性을 극복하고 同質性을 회복함으로써 단일한 社會・文化共同體를 이룩하여야 한다. 民族的 傳統에 입각한 명실상부한 統一國家의 완성은 民族의 社會的 連帶意識의 고양과 文化的 傳統의 繼承・發展을 통하여 이룩된다.

4. 國際的 基本秩序

오늘날 國際秩序는 脫理念的 경향과 대결을 止揚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統一國家는 自主的 民族國家로서 理念的 偏向性에서 탈피하여 어떠한 군사블럭에도 가입하지 않는 中立的인 外交路線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統一國家의 對外關係는 自主的 對外政策의 基本原則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統一憲法은 國際平和主義를 基本原理의 하나로 삼는다.

V. 統一憲法の 基本原理

憲法은 일정한 價値體系의 표현이다. 憲法은 각기 그 특유의 理念과 價値秩序를 그 內容으로 한다. 다시 말해 憲法은 歷史的 發展段階에 相應하는 理念과 價値를 그 內容으로 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불멸의 理念 내지 價値는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尊重이다.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尊重은 모든 民主憲法의 궁극적 理念이며 價値이다. 統一憲法에 있어서도 최고·궁극의 價値는 결국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尊重이어야 한다. 統一憲法의 基本原理도 이러한 최고의 理念과 價値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統一憲法의 基本原理로서는, ①國民主權主義, ②基本權尊重主義, ③權力分立主義, ④福祉國家主義, ⑤文化國家主義, ⑥法治主義, ⑦國際平和主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VI. 統一憲法の 構成

1. 前文과 總綱

北韓憲法에는 前文이 없으나, 憲法에 前文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統一憲法도 前文에서 統一憲法制定의 歷史的 意味와 그 制定의 目的, 憲法制定權者, 憲法の 指導理念 내지 基本原理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總綱에 있어서는, 北韓憲法도 이에 해당되는 정치·경제·문화에 관한 총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總綱에는 國號 및 國家形態, 國民主權主義, 國民要件法定主義, 領土, 國家의 基本理念, 對內外政策의 基本原則, 國際法尊重主義, 複數政黨制度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國家形態은 民主共和國으로 國民主權主義에 기초한다. 領土는 現行憲法の 領土條項이 統一憲法에서는 規範的 意味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對外政策은 自主性에 입각하고, 國家統治組織의 基本原理로 北韓憲法上的 이른바 「民主主義 中央集權制」에 대립되는 權力分立主義를 명시한다. 政黨制度에 있어서는 1黨制를 배격하고 複數政黨制度를 보장하여야 한다. 심지어 共產黨이라 하더라도 그 綱領과 活動에 있어서 議會主義와 複數政黨制에 입각하여 政治的 多元主義를 확고히 옹호한다면 그 存立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 國民의 基本權

近代 立憲主義憲法の 基本理念이 國民의 基本權 保障에 있고, 진정한 自由는 生存으로부터의 공포와 위협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면 生存權과 自由權은 상호 補完關係에 있으며, 이 兩者는 人間의 尊嚴과 價

價의 尊重이라는 憲法理念의 觀點에서 調和되고 合一되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國家가 高度 福祉國家建設을 목표로 하는만큼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존중하고 國民의 人間다운 生活을 보장하기 위하여 統一憲法은 自由權的 基本權의 充實한 보장과 더불어 生存權的 基本權의 철저한 보장에 유념해야 한다.

北韓은 대표적인 人權條約인 「國際人權規約」중 A規約(經濟的·社會的·文化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과 B規約(市民的·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에 1981年 가입하였고, 南韓도 여기에 가입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統一憲法에 基本權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대체로 自由權的 基本權은 B規約을, 生存權的 基本權은 A規約을 準據로 하여 규정하면 될 것이다.

3. 統治構造

(1) 政府形態

統一國家의 政府形態는 統一후의 時代的·政治的 요청을 충족시켜야 하는 制度여야 한다.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많을 것이나, 會議制的 統治構造에 입각한 共產主義國家의 형태는 立法府가 절대우월하여 立法府를 지배하는 政黨의 절대독재로 인한 國民의 基本權制限, 國家權力의 남용 등의 폐단으로 채택할 수 없다. 더욱이 北韓의 國家主席制에 의한 1人獨裁政權의 형태는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統一國家의 政府形態로는 議院內閣制 또는 大統領制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大統領制는 다음의 問題點들로 인하여 적합치 않다. 그 問題點들 이란, ①異質的인 兩體制의 統一이라는 면에서 大統領의 主導權에 대한 他方의 制度自體에 대한 거부, ②選舉方法에 있어서 直選制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充분한 國民意思 反影의 난점, ③大統領의 組閣權 行使로 인한 편파적인 政府

構成의 우려, ④北韓입장에서 大統領制에 대한 이질적인 制度로서의 거부 가능성, ⑤大統領制가 獨裁를 초래한 新大統領制로 변모된 점 등이다.

그리하여 議院內閣制의 本質的 特徵을 감안하여 볼 때, 民主主義의 확립, 異質的 兩極體制의 융화, 國民의 충분한 의사반영, 責任政治의 구현 등의 統一國家의 요청을 충족시키는 것은 바로 議院內閣制라고 할 수 있다. 다만, 議院內閣制가 가지는 短點을 고려하여, 西獨基本法上의 建設的 不信任制를 도입하여 統制된 議院內閣制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國 會

統一國會는 國民의 代議機關, 立法機關, 國政統制機關으로서의 憲法上 地位와 權限을 가진다. 統一國會는 上院과 下院의 兩院制를 채택한다. 國會는 兩院制가 가지는 일반적 장점을 그대로 受容할 수 있으며, 下院은 國民의 直接選舉에 의해 선출된 議員으로 구성되고, 上院은 全國區選出議員과 地方選舉區選出議員 및 在外國民代表로 구성된다. 兩院의 關係에 있어서 國民全體를 대표하는 下院이 上院보다 우월한 權限을 갖도록 하여 國政에 國民意思가 잘 반영되도록 한다.

國會는 政府에 대하여 不信任權, 國政監査 및 調查權, 國務總理・國務委員의 國會出席・答辯要求權 등을 통하여 政府를 牽制할 수 있다. 그러나 建設的 不信任制의 채택으로 國務總理 後任者를 選出한 경우에만 政府에 대한 不信任決議를 할 수 있다.

(3) 大統領과 政府

統一國家의 大統領은 형식적인 國家元首이며 對內外的으로 國家를 대표하는 地位를 가지는 國政에 초연한 존재이다. 그러나 國家의 政治的 危機時에 憲法

守護者로서 調節的·中和的 機能을 발휘한다.

政府는 行政府의 실질적인 執行機關으로서의 地位를 가지며, 行政權은 國務總理를 首班으로 하는 國務院에 속한다. 國務院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구성되며, 그 存立基礎가 國會의 信任에 있으므로 下院에 대하여 連帶責任을 진다. 國務總理制는 議院內閣制의 本質的 요소이며, 國務總理는 院內多數黨의 黨首로서 國會에서 직접 選出된다.

建設的 不信任制의 도입으로 後任 國務總理가 選出된 때에는 大統領의 國會解散權은 즉시 소멸되고 國務院에 대한 不信任이 표명된 것으로 되어 內閣은 總辭職하여야 한다.

(4) 法 院

法院은 司法機關으로서 중립적인 第3의 權力을 지니고 國民의 基本權保障機關으로서의 地位를 가진다. 法院은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조직된다. 그리고 裁判獨立의 原則을 내용으로 한 司法權의 獨立이 보장되어야 한다. 法院은 權力分立原理의 실현, 法秩序의 안정적 유지, 國民의 基本權 保障에 기여하여야 한다.

(5) 憲法裁判所

憲法裁判所는 독립된 自主的인 憲法機關으로서 憲法裁判을 통하여 憲法秩序를 보장하는 憲法保障機關이다. 憲法裁判所制度는 효과적인 權力統制를 위하여 憲法의 規範的 效力을 높이고 政治生活을 憲法規範의 테두리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西獨,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우리의 現行憲法과 共產圈國家인 유고 등은 이 制度를 채택하고 있고, 東歐에서 과감한 政治改革를 단행한 헝가리도 이 制度를 새로이 채택하였다.

(6) 其他機關

1) 選舉管理委員會

選舉의 公正한 관리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한, 憲法上의 合議制獨立機關이며 必須機關인 選舉管理委員會를 둔다.

2) 審議會議

統一國家의 經濟·社會의 開發과 國民福祉, 傳統文化의 繼承·民族文化의 暢達, 科學技術의 向上, 教育制度의 確立을 위하여 經濟·社會·文化·科學·教育審議會議를 國務總理 所屬下에 둔다.

(7) 地方自治

地方自治制는 民主政治의 뿌리로서 世界적인 경향이며, 中央集權主義를 배격하는 것이다. 地方自治의 실시로 住民의 뜻에 따른 行政은 물론 地域간의 均衡적인 발전을 꾀한다.

4. 附 則

附則에서는 統一憲法의 制定·施行過程 및 統一國家의 經過規定을 두게 됨으로써 重要性을 더하게 된다. 먼저 統一憲法의 制定·施行過程을 요약하면, 「南北評議會」를 統一憲法案의 作成 및 그 施行準備를 위한 中樞機關으로 설정한 「南北評議會法」을 제정한다. 이 法에 따라 「南北評議會」에서 統一憲法案을 審議·作成한 다음에 南北韓政府가 統一憲法案에 대한 國民投票를 실시하여 統一憲法을 확정한다. 확정된 統一憲法은 「南北評議會」에서 公布하며, 「南北韓評議會」에서 統一憲法施行을 위한 基本法律의 제정과 기타 준비작업 등을 하고 國會議員選舉實施에 관한 事項과 統一憲法의 發效·施行日을 정한다.

그 밖에 附則에서는 國籍, 南北離散家族의 관계, 統一國家의 財産承認, 統一前의 民事上・刑事上 法的 問題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특히 南北韓의 所有形態의 차이로 인한 北韓住民의 財産權 補充의 필요성으로 國・公有 財産讓與의 特別규정을 둔다. 그리고 公務員의 地位, 新設機關의 경과조치, 舊法令의 效力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南北韓이 맺고 있던 條約의 承繼問題는 統一國家가 對外的으로 新國家의 創設임을 전제로 國際法 一般原則에 입각하기로 한다. 南北韓의 債權・債務는 統一國家가 承繼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國旗, 國章, 國歌등에 관하여는 「南北評議會」에서 정하는 것을 채택하도록 한다.

附則에서 정하는 經過措置나 規定등은 統一國家樹立의 民主的 節次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VII. 結 語

그동안 南北韓간에 統一에 관한 많은 論議와 그에 대한 方案들이 모색되어 왔지만, 南北相爭을 겪은 韓半島에서 가까운 장래에 統一을 이루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統一憲法制定에 관한 論議에 있어서도 역시 統一國家의 國號, 政治理念 및 體制, 對內外政策의 基本方向, 政府形態, 權力構造등에 관한 切實한 의견대립이 예상되고, 統一憲法論議 자체가 어찌면 理想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의 實現을 위한 노력은 늦출 수가 없다. 統一憲法制定論議 자체가 統一實現의 한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지고, 그 進전과정의 끝 民族成員 전체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統一論議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北韓이 그 對象으로 存在하고 있음을 전제할 때, 統一憲法制定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각기 體制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南韓의 自由原理와 北韓의 平等原理의 統合概念위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統一國家의 理想的 社會像으로 고도의 福祉國家建設을 설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統一憲法の 骨格을 마련해 본 것이다.

새 統一方案에서도 統一憲法이 民主的 方法과 節次를 거쳐 확정·공포된다고 천명하고 있는만큼, 統一憲法の 制定方法이나 그 內容에 관해서는 충분하고 넓은 意見收斂過程을 거쳐 國民的 合意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한 方法으로 國會에 統一憲法에 관한 審議機構를 두어 여기에서 統一憲法에 관한 國民的 合意를 도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討 論 內 容

司會：金 惠(外國語大)

討論：高性俊(濟州大)

金光植(新民主共和黨)

金洛中(民族統一促進會)

金南植(平和研究院)

金達述(南北對話事務局)

金恒元(濟州大)

朴雄熙(國土統一院)

白樂曙(民主正義黨)

徐極性(南北對話事務局)

申鉉奇(統一民主黨)

梁 建(漢陽大)

梁榮植(統一研修院)

李達坤(서울大)

李相煥(平和民主黨)

李長熙(外國語大)

崔 榮(外交安保研究院)

河英善(서울大)

金惠(司會) : 討論의 順序는 역시 政黨이나 社會團體에서 오신 분들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다음으로 좀 더 客觀的인 입장에서 學界나 研究所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諒解해주시기 바랍니다.

政黨, 社會團體로부터 오신 분 중에 역시 政黨보다는 民族이 앞서니까 民族統一 促進會의 金洛中 先生께서 제일 먼저 討論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洛中 : 저는 사실 두번째 發表해주신 金明基 教授님의 主題發表와 관련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討論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時間이 별로 많지 않는 것으로 봐서 오후로 미루기로 하고 처음에 發表하신 吳寬治 教授님의 發表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吳教授님의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실제로 그런 表現도 있습니다만 北韓의 對南政策은 분단 이래에 變함이 없다하는 말씀이 強調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內容은 결국 힘에 의한 赤化統一이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共產主義者들이든지 社會主義者들이든지 또는 自由主義者들이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理念이 窮極的으로 勝利한다는 信念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그 信念을 버리기를 期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勝利한다고 생각을 하고 勝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北側사람들의 信念이 안 바뀐다는 점에 있어서 나는 同意를 합니다.

그러나 소위 戰略 戰術이라는 觀點에서 보면 이것이 상당히 變化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對南 戰術 내지는 統一戰略이라는 것은 소위 3大 革命力量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디에 강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變化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大 革命力量이란 北쪽의 力量, 國際的인 力量, 南쪽의 力量을 말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는 北쪽의 力量을 주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南쪽이나 國際的인 力量을 부차적인 力量으로 생각했던 편입니다. 그 뒤로 基本 目標의 變化는 기대할 수 없지만 차차 戰略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戰略의 變化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戰略의 變化가 1950년대에는 北쪽에 있는 무력을 가지고 戰線을 밀어서 統一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 뒤에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戰線을 밀 수는 없을 바에는 北쪽에서 기른 무장력-계털라 투입이라든가 하는-을 투입해서 해방시킬 수는 없겠느냐, 그런 쪽으로 戰略이 옮겨다가 近來에 와가지고서는 그 3大 革命力量중에서 南쪽 내부의 자체모순으로인한 내부 붕괴, 내부의 역량이 결국 가장 중요한 革命力量으로 보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北쪽의 戰略 變化에 대응하는 우리들 자신의 對應 戰略을 開發해야 된다는 觀點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1950年 이래로 變化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더 새로운 무기, 더 많은 무기만 사와 戰力을 增強하고 그런 方法만으로 대응한다면 상대방이 노리는 허점을 우리는 補完하지 못하는 結果가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더 상대방이 우리의 약점이, 체제 내의 이터저러한 矛盾·갈등의 심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南쪽 내부에서의 변혁의 가능성, 이쪽에 戰略의 主要 目標를 設定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새로운 신형 비행기를 사오는 것 보다는 우리의 갈등, 모순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쪽에서 작업이나 관심이나 모든 것이 대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戰略의 變化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따르는 대응 태도의 變化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좀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平和定着段階의 設定에 관해서입니다만, 대체

로 南韓에서도 늘 하는 것이 기능적 접근 理論에서 一般的 신뢰구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상 進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 단계적 조치의 순서인데 1번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것도 보면 순서가 차라리 2번과 3번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면서 1번과 5번이 그 기간에는 가능한 것이 선택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번과 3번이 진행되면서 1번과 5번은 선택적으로 그 기간에도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4번의 軍事信賴構築이나 6번이 진행됨에 따라서 1번이나 5번의 經濟的 또는 一般 信賴構築 관계가 조금 더 진전되고 그렇게 해서 窮極的으로는 6번 軍備縮小에 관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순위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2번, 3번을 함께 생각하고 또 1번, 4번을 2번 3번과 選別的으로 동시 진행을 하면서 4번이 가능하게 되는 단계에 와서 5번이나 1번에 보다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드디어는 6번으로 가는 것, 이런 方法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선생님의 發表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金 惠 :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政黨으로 들어가서 慣例的으로 의석수에 따라서 한다니까 관례에 따르는 것이 말썽이 없을 것 같습니다.

白樂曙 : 제가 소속은 民主正義黨에 있습니다만 民主正義黨을 대표해서 여기에서 發言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記錄을 위해서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吳寬治 박사께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신뢰구축에서 一般的인 信賴, 政治的 信賴, 軍事的 信賴, 이렇게 말씀

을 하셨는데 신뢰라는 것은 同一한 것이 아닙니까? 이쪽 상대방을 믿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킨다는 기대감을 가지면 신뢰가 되는 것인데 一般的 信賴다, 政治的 信賴다, 軍事的 信賴다라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신뢰구축의 구체적인 조치가 一般的의냐, 政治的인 것이냐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싶고 신뢰의 성격을 一般的이다, 軍事的이다, 政治的이다 하게 되면 이것이 조금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고 단계론이 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데 필자는 우선순위가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면서도 軍事的인 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政治的 신뢰가 우선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軍事的인 신뢰 조치나 研究한 것을 보니까, 9페이지와 11페이지를 보면 5가지 열거한 것 중에서 몇가지를 빼놓고는 그것이 합의만 된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 政府도 과거에 그 비슷한 제안들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軍事的인 信賴措置를 하기 위해서 무슨 중요한 政治的인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단계론을 고집하게 될 때 물론 學術的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해도 괜찮습니다만 이런 우선순위에의 집착은 결국 政策에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최근에 와서야 政治·軍事문제를 南北間의 현안으로 다루기로 하였는데 어떤 면에서는 마지 못해 한 것이고, 回避하지 않겠다 하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사문제를 다루지 않고 실질적으로 신뢰문제가 해결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南北韓間의 중간 장치로서 비슷한 概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民族共同體憲章이라든가, 暫定協定

이라든가, 平和協定, 不可侵協定 등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 民族共同體 憲章의 성격에 대해서는 金明基 教授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자께서는 통일원에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시다만,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政府 방안에서 나오는 民族共同體憲章이라는 것이 政府의 의도로는 條約입니까, 宣言的인 憲章입니까? 우선 政府측 의견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金明基 教授님께서 해석하신 것에 대해서 討議를 해야 되니까, 대통령께서 發表하실 때 어떤 뜻으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金 惠 : 예, 감사합니다.

백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平和民主黨의 李相煥 선생 말씀해 주십시오.

李相煥 : 우리 黨에서는 통일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범국민적 통일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民族統一汎國民協議會議」를 구성하고 이 기구가 작성한 국민적인 최종 統一方案을 國民投票에 의해서 최종 선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일찌기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소견입니다만 각 당의 통일방안을 國民投票로 결정하는 方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통일원에서 주최한 심포지움에 참석해 보니 政府에서 마련한 통일방안이 범국민적 통일방안으로 確定되었다는 默示的 가정아래 討論의 범위를 政府의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보완하는데 국한시킨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이 점이 저로서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또한 본인이 약간의 당혹감을 느끼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앞서 두분 선생님의 지적도 있었지만 오늘 主題發表를 하신 선생

님들도 政府의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인도 政府의 통일방안에 관하여 궁금증이 많은데 이러한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오히려 政府당국자인 統一院의 통일정책담당자에게 질문하고 그분께서 답변해 주는 형식으로 이 심포지움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급적 우리 당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배운다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내용분석의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사항을 發表者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吳寬治 선생님이 發表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물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의 發表內容중 바람직한 「평화정착 단계별 조치」가 政府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과 어떠한 연계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論文의 9쪽 “3. 정치적 신뢰구축단계”를 설명하시면서 南北韓 상호 현실인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北韓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것을 의미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세번째는, 군축단계의 내용과 관련하여 駐韓美軍 문제는 國際的 安全保障 體制 構築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되었으므로 南北韓 군축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앞으로 있을 군축협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捨象하는 것이며, 더욱이 韓美相互防衛條約과 같은 맥락에서 처리되어야만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로서 北韓이 蘇聯 및 中共과 締結한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에 의거한 군사지원문제를 북한이 우리

가 희망하는 駐韓美軍 철수문제의 처리방식과 연계시켜 동일한 처리를 하자고 주장하면 군축협상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우리 政府가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항은 南北韓 平和定着과 信賴造成을 위한 조치에는 南北韓 交流問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교류문제는 남북한 평화정착과 신뢰조성에 별다른 의미가 없음을 의미하는데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 몇가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오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發表하신 金明基 教授님의 '南北聯合의 制度的 實踐的 課題'와 관련하여 제가 받은 전체적인 인상은 北韓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제 아래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이 상정하고 있는 구체적 실천사항을 推進하려다 보니까 南北韓關係의 성격과 당국자간에 체결할 憲章의 성격 규명에 난해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政府가 北韓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政權的인 차원 또는 政府의 정통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으나 金教授님은 北韓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서 과연 統一에 관한 南北韓 協商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教授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은 論文 22쪽부터 시작되는 내용으로서 民族共同體 憲章 채택 이후에 처리할 문제들로서 제시된 사항의 성격을 보면, 저의 생각으로선 현재의 南北韓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民族共同體 憲章 채택 이후에 처리할 사항으로 제시된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처리되어야만 실질적인 南北統一 協商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教授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니다.

마지막으로 張明奉교수님이 發表하신 ‘統一憲法草案에 관한 試論’과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張教授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統一憲法制定은 상당히 요원한 성격을 지닌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그 실현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統一憲法이 상정하고 있는 모델로서 스웨덴의 福祉主義的 社會民主主義國家를 제시하고 있는데 요즘 學界에서 論議되고 있는 社會構成體論에 입각한 한국 사회성격에 관한 論爭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 사회체제의 성격 규명과 概念定義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구조적 모순을 감안하면 北歐의 국가 사회체제로 우리의 국가사회체제가 변화하기 위한 전제조건·변화과정에 대한 언급도 發表內容에 포함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 憲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통일민주당의 申鉉奇 선생님 討論해주시겠습니까?

申鉉奇 : 저는 오늘 여기 세 분 發表하신 분들을 상대로 질문하는 형식이 아니라 정당의 입장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보다 총론적인 問題 提起를 하는 쪽에서 얘기를 展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구라파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동구라파 변화가 물론 그 社會 자체내의 矛盾과 갈등의 해소를 위한 발전적인 양상이라고 보지만 기실에는 南韓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했던 올림픽, 分斷國家의, 어떤 면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회라고 생각했던 南韓의 발전상을 그 사람들이 화면으로 보면서 느꼈던 어떤 政治的인 갈등 심리적 구조, 또 우리가 85년부터 즐기치게 전개해왔던 民主化운동, 그것은 우리가 歷

史的으로 보더라도 다 잘 아시겠지만 3.1운동 이후에 5.4운동에 대한 영향, 인도의 독립운동에 대한 영향 이런 것과 건강부회에서 제가 解釋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사실이 그들의 心理的 갈등 터전들을 만들어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많이 看過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7.4南北共同聲明이라는 것이 南北關係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을 연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東西獨의 基本條約도 72년 12월 21일의 일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약간은 빨랐지요, 다음으로 현실적 세계에서 가장 평화적 통일로 접근해 가고 있는 예가 남북 예멘의 경우인데, 그 사람들은 북쪽은 正統 回教國으로서 친서방국가이지요. 남쪽은 맑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국가이고, 이 두 국가가 72년 11월부터 소위 통합 운동의 노력에 합의해 가면서 82년 1월에 소위 통일헌법에 대한 초안에 합의를 했고 얼마전 보도를 보니까 國家聯合 형태로 발전을 했다 하는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72년도에 南北韓 共同聲明을 發表하는 그 이후에 우리의 政治史가 단절과 굴절, 혼란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계사에서 가장 귀중하면서도 평화스런 방식으로 고통없이 분단국문제를 해결해내고 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내는 어떤 世界史的인 의미를 우리가 창출해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근20년이 흐른 이제와서 겨우 남북한 문제를 좀 정리하고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로서는 깊게 反省해야 되고 더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몰라서 못해 온 것이 아니라란 것을 똑똑히 자각하여야 합니다.

통일방안에 관한 여러가지 이론적 모델이랄까, 논리적인 문제제기랄까,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문제는 統一理論에 관한 문제점을 어떻게 정리해내고 조합해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행히 학자 출신의 統一院長官이 오셔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하여 이 정도라도 정리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肯定的으로 評價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政府가 발표한 새 통일방안을 저 개인의 경우로 보면 저는 통일방안에 대해 대단히 불만족 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내어 놓고 이것이 무슨 최종적인 民族共同體 통일방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사실 상당한 懷疑를 갖습니다. 이것은 절름발이 통일방안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온전한 國家聯合 체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聯邦制를 하자고 하는 성격도 아니고 정리가 좀 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오늘의 우리 政治狀況을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 두리몽실해져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번에 獨逸의 변화를 보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원용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콜 총리의 통일방안은 제1단계는 東獨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제2단계는 國家聯合 형태의 구조에서 협력을 增進한 다음에 제3단계에서 완전한 聯邦制 또는 연합 질서하의 재통일을 달성한다는 基調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 우리의 경우를 전주어서 보면 지금 統一院에서 내어 놓은 소위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확실히 보완되어야 되고 많은 討議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통일 문제에 본질적 접근을 원한다면 조금 더 公開的으

로 이런 보완의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政府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실제적으로 南北 交流의 增幅이랄까,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미미한 상황하에서는 더 큰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것입니다. 다음 政府, 국민의 총의에 의해서 들어서는 民主政府에다가 소위 國家聯合이나 어떤 聯邦制 구조랄까 이런 정도는 맡겨 두란 말입니다. 모두 내가 하겠다 내가 다 할려고 하니깐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저는 절대로 우리가 기능적인 접근 방법을 신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段階論的인 방식이 분명히 設定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 信賴構築, 交流增幅, 그 다음에 평화구조정착,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不可侵宣言, 平和協定締結, 그 다음에 國家聯合이나 聯邦制段階, 그 다음에 소위 민족적인 궁극적 통일을 위해서 예를 들면 영세 중립화통일까지가 목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4대국 보장을 얘기하지만 4대국 보장이 예를 들어서 무슨 協定の 形式的 부분에 도장을 찍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추상적으로 보장하라, 보장하라 해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영세 중립국 정도의 형태가 그런 의미에서 4개국이 보장을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4대국이 선언적으로 무슨 약속이나 하는 정도 가지고 과연 韓半島의 궁극적인 평화 보장을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보면 이 政府가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임기가 이제 3년 남은 동안에 소위 南北韓의 평화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문제, 平和協定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매달려야 합니다. 頂上會談도 그냥 들어서 만나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민앞에서 과거의 반공교육과는 완전히 상치되는 상황과 언행들을 하는데 이런 것도 不可侵條約, 平和協定, 평화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만나겠다는 전제조건을 분명히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에게 혼란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통일 방안에 있어서도 저는 분명히 쿨 총리가 했던 獨逸의 段階論的 부분을 원용해서 보다 충실히 보완을 해가지고 信賴構築의 단계, 平和構築을 위한 단계에서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金洛中 선배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3단계 7개년계획인가 하는 그런 유형의 目標을 설정하여 다음 정권으로 하여금 國家聯合 그 이후에 國家聯邦制로 간다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우리 民主黨에서 國家聯合 통일방안을 만들 때 그 당시 朴寬用 委員長을 중심으로 統一特委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정권이 나 정당도 통일방안을 어설피게 내놓으려고 하면 차라리 없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聯邦制 아니면 통일이 안되는 것 처럼 떠들어 가지고 이것 아니면 받아 들일수 없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까지도 다른 방안을 내어 놓고 상충을 시켜 놓으면 이것은 없는 것보다 못하고 오히려 反統一의 일지도 모른다, 그럴 밖에야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당의 현실성때문에 이 정도라도 발전이다, 이 정도라도 내어 놓자 하고 합의해서 발표하였습시다만, 그 자체가 절대 충분하다고 저희는 강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일방안도 明示的이고 구체적인 代案들을 제시함으로써 완벽성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1단계 信賴構築 부분에 관해서는 共和黨 쪽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강조하고 있고, 또 국가연합 형태로 봐서는 民主黨쪽에서 제기한 문제니까 그것도 수용할 수 있을테고 또 共和國 聯邦制를 주장하는 平民黨쪽에서도 聯邦制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또 在

野의 입장에서 봐서도 영세중립화 문제까지도 거론하므로써 在野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꼭 단계를 明示하지는 않지만 그런 4가지의 단계론적인 것들이 包括的으로 제시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야만 국내외적인 분란없이 수용되고 통일에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싶습니다.

金 惠 :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주셨는데 統一院 보고 욕심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申선생님께서도 욕심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영세중립국까지 청사전을 다 내어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웃음)

다음으로 新民主共和黨의 金光植先生님 말씀해주십시오.

金光植 : 저의 질의에 앞서 오늘 이와 같이 야당측을 포함한 4당 전문위원들이 統一院이 주최하는 심포지움에 참석하기는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전향적인 변화라 생각되며 앞으로 계속하여 統一院은 이러한 각종 통일 문제 관련 討論會에 政黨의 전문위원, 특히 野黨들의 전문위원들을 참석케 하여 통일 논의의 국민적 합의 모색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적 합의와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면 지난번 國會에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관해서 기존 사회일각에서는 분단 고착화방안이라 하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統一院이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세련미가 부족했었다고 생각합니다. 與小野大 정국을 고려할 때 國會의 결의를 통해 발표하였다면 더욱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분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북한에 대규모 經濟協力과 정치적 信賴性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뜻선생님의 언급에서 經濟協力 자체가 오히려 북한의 체제강화를 가져오지 않겠나

고 하셨습니다.

북한의 對南戰略, 즉 南朝鮮 解放戰略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駐韓 美軍 철수 주장등 일련의 軍備縮小 주장이 위장평화 戰術이라고 본인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방연구원에 계신 분으로써 과연 이러한 위장평화말고도 경제파탄 위기에서 오는 軍備縮小의 필요성은 북한 내부에 전혀 없는 것인지, 오직 한반도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유코자 하는데 있는 것인지, 軍備縮小 제의에 관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金明基教授님께서서는 信賴回復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노력을 표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도 동감하고 있으며 저의 共和黨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렇듯이 통일논의 이전에 갈등과 불신을 회복할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구체적인 방법으로 무엇들이 있는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共和黨에서도 예를 들어 동서독 경우와 같이 우선적으로 통신, 체신등을 비롯한 交流協定, 通商協定들을 체결, 남북한 인적·물적 왕래를 실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張明奉교수님께서서는 자유화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共產主義의 타당성이 설득력을 상실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중인 東歐圈의 변화를 공산주의 자체 내부의 모순에 의한 붕괴현상인지, 아니면 현 집권층에서도 표현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내지 서구 자유주의의 승리인지, 아니면 그들 자체 내의 수정 내지 개혁인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는 해석에 따라 힘의 논리, 승리의 논리로 볼 수도 있고, 共存論理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세분 말씀하신 내용중에는 공통적으로, 통일은 당분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으며 아까 金明基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즉 민족 문제로서의 통일도 좋지만 차라리 우리에게 통일은 요원한 길

이며 그 보다는 앞서서 현실 인정을 하고 차라리 南北韓間에 공존체제에서 어떤 異質性을 극복하여야 하고 우선 이산가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북한간의 왕래마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대하여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더 요원한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短期的인 입장에서 남북한의 관계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논의가 현재 좀 더 자세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申鉉奇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信賴回復 관계, 그 다음에 國家聯合 관계, 나중에 와서 우리의 통일도 聯邦制를 할 것이냐 아니면 單邦制로 할 것이냐 그런 모든 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우선순위가 없는 가운데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통일국가 형태를 논하기 앞서 신뢰회복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상대가 있는 쌍방의 문제로서 우리의 의도만을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과연 북한을 어떻게 관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예로서 북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남쪽에서는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등 여러 문제가 있게지만 과연 타임 테이블에 있어서 논의의 순서가 지금 어디에 치중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 惠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濟州大에 계신 高性俊 教授님과 金恒元 教授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高性俊 : 학생들과 얘기를 하다가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는 뭇선생님께서 발표하신중에 하나 질문으로 그것이 군사적 신뢰조치에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팀스피리트 規模를 조금 줄여간다거나 이러한 어떤

북한과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군사적인 신뢰조치의 일부분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안되는 부분을 먼저 던져 가는 그것은 어떨까, 그런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金恒元 : 저는 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일문제보다도 더 급한 것이 우리 남한 내의 갈등문제라든가 이러한 통일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勞使問題라든가, 住宅問題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과감한 정책적인 개혁을 하고 뒷받침이 없다면 오히려 북한이 남한을 변혁시키려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이용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土地公概念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점이 빨리처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金 憲 : 다음으로 平和研究院의 金南植 先生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植 : 한 가지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관치 선생님께서 국제적 안전보장체제구축단계에 있어서 현재 체결되고 있는 북한과 中·蘇와의 防衛條約, 軍事同盟과 우리와 韓美相互防衛條約문제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두고 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수렴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없애고 한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美·日·中·蘇라는 이 4개국 속에 日本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문제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북한에서의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과 우리의 한민족공동

체 통일방안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을 수렴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 共存體制를 가져야 된다, 그 공존이라는 것은 통일지향적인 共存體制를 가져야 된다, 거기에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과 우리 민족연합단체에서 여러가지 취해지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과 절충해서 어떠한 제3의 형태 같은 내용을 가능성이 없는가? 그런 것을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張明奉 교수께서는 이 統一憲法이 우리나라와 북한을 의식하고 만든 것이 사실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북한과는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인상을 주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수렴해야만 되겠는가 그런 측면을 조금 더 묻고 싶습니다.

金 憲 : 다음은 한양대학의 梁建 教授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梁 建 : 먼저 金明基 선생님 發表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國際法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南北韓 관계의 법적 문제를 기존의 國際法의 틀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國際法이라고 하는 것은 分斷國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새로운 현실을 설명하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또 말하자면 南北韓간의 協定締結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國際法 문제는 남북한간이 새로운 國際法을 하나 만들어 간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북한간의 관계를 內的인 特殊關係라고 표현을 하는데 獨逸 사람들 설명을 우리가 모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적 特殊關係라고 하는 것

이 기존 國際法으로 보면 모순 되는 얘기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입니다.

또 이 남북한 간의 共同體 憲章의 문제도 이것이 條約이나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새로운 형태의 조약, 즉 국가와 국가간의 條約이 아닌 내적 特殊關係에 있는 어떤 國際法上的 어떤 단위내의 새로운 형태의 條約,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기본적인 문제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張明奉 선생님 발표와 관련해서 統一憲法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워낙 미래의 얘기이고 구름잡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고 아주 현실적인 급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북한의 統一方案은 聯邦制이기 때문에 체제문제에 관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이 없지요. 남쪽이 어떤 체제든 그냥 체제를 존중하면서 聯邦制를 하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체제문제에 관한 한 그 사람들은 정책적인 부담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聯邦制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도 단일 국가체제로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단일 국가체제가 어떤 내용의 단일 국가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되는 負擔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문제일 수 밖에 없는데, 또 하나 이 문제가 미묘해지는 것은 金南植 선생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우리 현 체제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 체제를 전제로 한 試案을 내놓을 것 같으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金 應 :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그 다음에 그 協商問題에 조예가 깊은 李達坤선생께서 말씀해주세요.

李達坤 : 저는 우선 張明奉 선생님의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우리가 통일논의를 해가는데 있어서 巨視的 觀點에서 본다면 지금과 같은 토론은 하나의 의견수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중요한 것이 내부 협상 문제인데, 지금 정계에서 黨, 그 다음에 在野까지 합치면 5개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학계에서도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政府의 案이라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하나의 안(single text)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논의가 수년을 아니면 수십년을 흘러갈 때 하나의 큰 보다 좋은 안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한 10年이나 20年동안 이런 문제를 논의해가지고 그 뒤에 어떠한 안이, 즉 대부분의 국민이 정말로 합의하는 안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할 때 統一憲法의 기초가 되리라 봅니다.

지금 張明奉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런 것이 하나의 예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戰略은 거기서부터 꺼꾸로 나와야 될 것이예요. 한걸음 한걸음 뒤로 오면서 구체적으로 통일직전의 해에는 무엇을 하고 5년전에는 뭘 하고 10년전에는 무엇을 하고 지금 현재에는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식의 戰略開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저는 백워드 매핑(Backward Mapping)이라고 합니다. 後步政策이라고 뒤로 걸어나오면서 만드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張明奉 선생님께서는 그 조금 위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金선생님께서 하신 것은 그런 案 중의 하나로서의 政府의 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吳 박사님은 현재의 敵對的인 구조에 대처하는 戰略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南北韓 사회의 政治體制 속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군사적인 속성이 강하여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敵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協調的 敵對者 관계로 유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논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단 파악을 하고 덧붙이고 싶은 것은 시간적인 차원이 고려된 통일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뚝박사님 말씀하신 軍縮의 단계와도 연결되는데, 단계나 시간차원이 거의 없는 안이 나오고 있으니 정책의 계속성 문제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조금전 討論하신 내용 중에서 政權마다 統一案이 다르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한 政權에서 한 統一案이 나올 때 완전한 案이 나와 버린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시간적으로 다음 정권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북한안은 중간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협상하는데 있어서 이 계속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 물리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번째는 一貫性인데 지금 軍事問題하고 政治問題하고 經濟問題하고 다른 社會·文化問題가 있겠습니까마는 이 정책들간의 一貫性을 유지하는 것은 국내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구조는 완전히 우리가 西歐資本主義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大企業의 경제력 집중이나 사회적 갈등과 같은 현상을 안고 있으면서 軍事的인 것하고 社會文化的인 것하고 一貫性을 어떻게 유지해 가지고 북한하고 단일주의 형태든 아니면 國家聯合 형태든 어떤 통일안을 협상할 수 있겠는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金 惠 :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대학의 李長熙 教授께서 討論해주시시오.

李長熙 : 저는 세분 선생님의 발표와 관련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저의 2가지 기본사각을 우선 말씀드리고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統一政策은 南北韓關係를 종래의 敵對關係에서 7·4共同聲明, 6.23선언 이후로는 선의의 경쟁자관계, 그리고 88년 7·7선언 이후로는 동반자관계 이렇게 3단계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부응하는 남북한관계의 法·制度的 여건은 아직도 冷戰論理에 못 벗어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둘째, 종전의 남북대화와 바로 얼마전 남북 고향방문단 실패과정을 볼 때, 이제 남북한 공히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은 지금까지 名分싸움만 해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남북한 모두 민족의 이익을 생각해서 세계사적 대흐름에 순응하여 名分보다는 실리위주로 민족문제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즉, 앞으로 남북접촉은 信條倫理보다는 責任倫理에 기초해야 됩니다.

이 두가지 前提를 깔고 세분 선생님의 페이지 대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선 吳寬治 선생님의 발표문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국제적 안전보장을 통한 信賴構築입니다. 왜냐하면 남북한 관계, 특히 통일문제에서 가장 큰 난관은 相互不信입니다. 남북한간에 이 깊은不信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쌍방간보다는 다자간 차원에서 이를 담보하는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통일문제가 국내적 政治氣流에 동요됨이 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통일여건조성을 위해 평화를 多者間 次元에서 제도화시켜 준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吳선생님 페이지 전체에 흐르고 있는 論調가(조금 실례가 됩시다마는) 아직도 냉전논리에 입각한 면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駐韓美軍問題를 매우 禁忌視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제야말로

우리도 이 문제를 무조건 기피하는 단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최소한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政策意志 표명은 우리의 대외적인 통일여건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分斷問題에 관한 많은 國際會議에 참석하면서 너희 나라는 통일을 하겠다면서 아직도 國家保安法에 북한을 反國家團體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무슨 民族統一을 하겠다고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통일정책의 기본시각을 조금 바꿀 때가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金明基선생님이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남북연합의 제도적, 실천적 과제라는 어려운 주제를 매우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구체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느낀 것은 김박사님 논문에서 대한민국 정통성과 관련하여 1948년 12월 12일 UN결의 195(III)의 유일한 합법정부(an only lawful government)를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의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김박사님도 알지마는 그렇게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의의 영어 원문을 볼 때 정부측의 김학준박사도 이를 한반도에서 唯一 合法政府라는 해석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UN결의 195(III)는 남한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의 법적 근거라기 보다는 최소한도 북한보다는 UN에 의해 더많은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근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앞으로 우리의 통일논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자들이 좀 분명하게 해주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새통일 방안의 특성은 통일로 향하는 중간단계인 「남북연합」을 둔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南北聯合」의 법적 기초인 그 현장의 내용을 무엇

으로 담느냐는 「南北聯合」의 성격의 핵심입니다. 해설자료에 의하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유럽공동체(EC)의 통합방식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남북연합헌장」의 내용도 EC를 많이 모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통일방안이 EC의 통합처럼 경제적 통합을 통해 정치적 통합으로 향하는 통합방식을 따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EC의 機構와 EC의 법적 성격까지 모방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C란 超國家法(Supernational Law)에 기초하며, 따라서 그 기구의 법령은 직접적으로 구성국가의 국민과 기업을 구속하고, EC法은 구성국가의 국내법과 충돌시에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통일 방안이 EC기구와 유사한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을 수용할 때는 우리 통일 모델에 맞게 적절히 수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張明奉선생님 논문 7페이지를 보면, 통일헌법의 이념이 자유민주질 서상의 도식적인 이념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北韓이 얼마나 수용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傳統思想에서 남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 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張明奉교수님 논문 19페이지에 <남북이 맺고 있던 조약의 승계문제는 통일국가가 대외적으로 新國家 창설임을 전제로 국제법 일반원칙에 입각하기로 한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통일국가가 <新國家>라고 했을 경우 국제법상 조약승계는 舊國家가 以前에 국제법상 지고 있던 모든 조약상의 권리·의무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그 다음 문구의 <남북한 채권·채무는 통일국가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서술과 상호 모순되는 것입니다. 또 새 통일국가를 新國家라고 할 경우 새삼 국제사회로부터 국가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는 임시정부, 大韓帝國으로 연결되는 한국의 法統承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페이지 13에서 統一憲法의 기본원리로서 〈福祉國家主義〉를 들고 있는데, 왜 이것을 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론상 복지국가(Welfare State)와 사회국가(Social State)는 엄격히 구별되며,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는 서독과 같은 사회국가보다 더 많은 분배정책을 국가의 개입하에 집행합니다. 사회국가원리는 우리 헌법, 서독기본법이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주의〉보다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는 것이 남북한 정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현실성있어 보입니다. 추측컨데 이러한 것도 우리가 통일문제논의에서 〈사회〉 〈조선〉 〈연방제〉 〈고려〉 〈인민〉이라는 말에 지나친 편견을 갖는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새통일헌법제정시부터 이러한 편견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金 惠 :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崔榮교수님.

崔 榮 :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다 좋으신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대부분 발표가 됐고 그래서 저는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에 연결시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게 政策課題 문제 이니까 얼핏 생각나는 것은 한두가지인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순방하고 계시지만 西獨에서 인권 문제때문에 조금 서먹한 그러한 순간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테랑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실질적인 軍縮을 하시겠다 하는 것이 뉴우스에 방금 나왔고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발표하신 세분,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다 나오신 것을 제가 연관을 시키면서 아울러 오후의 종합토론을 위해 한 두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는 우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갈

이 걱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후의 토의에서는 좀 더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 같습니다. 뚝박사님의 이러한 단계설정의 對象이 북한이고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장 政治軍事會談을 하자고 나오고 있는 처지고 또 실질상의 안전보장 원칙을 제의했는데 우리로서는 이유야 여하튼간에 아직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신뢰성 문제가 일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 자체보다도 가장 먼저 앞서 제의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곧 90년대에서 맞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해가지고 예컨대 한국의 포괄적인 안전보장원칙 그런 것을 차제에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곧 表明하시든가 아니면 내년에 들어가서 곧 하는 방향으로 할 때에 뚝박사님을 비롯해서 河교수님 그리고 여기 오늘 오신 명석한 두뇌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들고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人權問題는 역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7·7선언하고 公安政局이라는 것이 그 이유야 여하튼 간에 하나의 구도를 볼 때 안 맞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는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으며 이제 곧 90년대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국가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아는데 그것을 歐羅巴式인, 미국식인 합리주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생기며 결국 스테레오타입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후에는 구체적으로 좋은 의견이 나와가지고 전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 페이지 참 좋았구요. 특히 국제법에 대해서는 門外漢이기 때문에 김교수님, 장교수님 논문은 공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金 應 : 감사합니다. 서울대학의 河英善교수님.

河英善 : 시간이 없으니깐 뭣박사님 것만 우선 잠깐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 신뢰조성이나 軍備統制 내지 軍縮問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비교적 최근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 습니다. 따라서 최근까지의 이 문제에 관한 초보적인 논의를 제1기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 또는 政策立案이 제2기로 접어들어야 될 시기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우리가 오늘 討議의 주제가 돼야 될까 하는 맥락에 따라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세가지 정도가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첫번째는 軍備縮小의 문제는 기존의 우리 국내에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만 가지고는 잘 안 풀릴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령 뭣박사님은 굳이 분류한다면 비교적 보수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계신데 이 경우에 조만간에 세가지 측면에서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첫번째는 국제 체제적인 차원에서, 지금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가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인 차원의 페레스트로이카까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련만의 의미가 아니라 세계 질서 전반에 걸쳐서 군사적 기반의 재조정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두번째는 북한의 변화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金洛中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50년대의 분석의 단계는 일단 넘어서야 한다고 하는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번째 국내 부분들에 있어서도 뭣박사님이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는 층이 일부가 아니라 상당 다수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상당히 전진적인 자세로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변혁적인 시야에서 이 문제를 보는 쪽도 동시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군축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논술체제가 국제적, 국내적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을 획득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각각 다른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단계가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왕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軍縮問題는 비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한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오박사님의 글은 보수적 시각의 軍縮 입장을 비교적 잘 요약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기된 것만으로는 제가 얘기한 세차원의 설득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걸음마를 더 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더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글에서 거의 생략되어 있는 것의 하나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체제를 설정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국내체제적 개혁과 같은 부분적인 지적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국제체제, 남북한 분단체제, 그리고 국내체제의 변화의 수순을 어떻게 택해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미뤄 나갈 때 남한간의 구체적인 평화와 통일에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金 憲 : 감사합니다. 좋은 문제를 제기해준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후에는 이미 제기된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활발한 토론이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일단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午 後 討 論〉

金 惠 : 몇개로 範疇化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問題提起가 오전 토론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는 우선 주제발표자 세분께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시고 그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발언순서를 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들,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분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자유롭게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발표자의 답변은 발표하신 순서의 역순으로 張明奉교수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張明奉 : 먼저 저의 페이퍼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共和黨 金光植선생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제 페이퍼의 9페이지에 나와 있는 統一理念으로서 제시했던 자유주의의 설명 가운데 “자유주의에 도전했던 과거의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타당성과 설득력을 상실하여 자유의 관념이 최종 승리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요즘 東歐共產諸國의 政治改革과 관련해서 이틀테면 공산주의 파멸 그리하여 자본주의 승리로 보는 관점이나 이러한 질문요지 같습니다.

저의 견해는 그런 관점에서 서있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東歐共產諸國이 변화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어떤 파멸이 아니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즉, 새로운 사회주의를 모색하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人間的 얼굴을 한 社會主義’(socialism

with human face)를 지향하는 그러한 변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일전 고르바초프도 푸라우다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지적했고, 그보다 훨씬 앞서 68년 체코의 두브체크가 ‘프라하의 봄’을 연출할 때 제시했던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란 인간을 존중하는, 인간중심적인, 보다 민주화된 사회주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東歐의 변혁은 그러한 사회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라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회주의의 내용이 뭐냐, 즉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내용이 뭐냐 할 때, 제 생각으로는 ①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基本權을 保障하는 체제, ②공산당 1黨 체제를 증식하고 多黨制에 바탕을 둔 의회 민주주의제도의 도입, ③시장경제체제 요소를 가미한 經濟體制의 채택 등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資本主義 승리라고 우리측에서 평가하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쪽에서의 資本主義도 물론 변했고 앞으로도 변화하겠고, 마찬가지로 저쪽 社會主義도 이제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즉, 보다 민주화된, 보다 인간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주의로 변해가는 발전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金南植선생께서 이 統一憲法 草案 骨格과 관련해서, 이것이 물론 앞으로 통일한국의 헌법을 구상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현재 우리가 나가야 될 어떤 방향, 어떤 指標를 설정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북한의 체제를 수렴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는 질문 같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한 것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統一國家를 꼭 전제하지 않고라도 資本主義 體制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어떤 발전의 모델이 무엇인가, 발전의 모델이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그런 시각에서도 살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서 이제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고도 民主福祉社會의 건설을 들었으며, 이것은 꼭 통일국가를 전제하지 않고라도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고, 북한의 체제란 것도 앞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리라 봅니다.

지금 동구의 변화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 다만 시기적으로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지만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경우 북한이 변화하는 방향은 어떠하며,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이냐에 대하여 말한다면, 결국 오늘날 東歐에서 진행되는 변화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것이 곧 역사의 방향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렇게 볼 경우 결국은 제가 제시한 이런 統一國家의 미래의 모습과 합치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은 최근에 발표된 글에서 示唆하는 바를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政黨論의 권위자인 모리스 뒤베르제가 르몽드지에 기고한 글에서, 원문은 보지 못하고 동아일보에 그 요지가 났지만, 그 글에서 뒤베르제는 앞으로의 사회주의 모델, 변해가는 이런 모델과 관련하여 제3의 사회주의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산주의에 의해서 창조된 國家生産制나 사회민주주의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國家保護制 이후 제3의 사회주의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國家推進制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東歐와 西歐는 현재 하나의 목표로 집중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 인터내셔널에서 분열됨으로서 그 좌파는 공

산당으로 되어 社會民主主義하고 노선이 대립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회주의 大分裂이 지금 사라져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뒤베르제는 결국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일원적 사회주의로 가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르바초프는 현재 어떠한 모델이런 걸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고르바초프가 이같은 상황에서 소련에 적용될 하나의 모델을 이끌어 낸다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한층 더 쉽게 추진되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봤습니다.

결국 뒤베르제는 西歐社會主義 정당들이 원대한 시야를 갖게 된다면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서 東歐社會主義와의 논쟁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뒤베르제가 제3의 사회주의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볼 적에, 우리가 앞으로의 理念, 體制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국가의 미래의 모습, 미래상을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梁建교수께서 지적한 것처럼, 헌법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보면 현실감이 떨어진 主題 같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 비록 오랜 일이 될지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까지 늦춰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梁教授께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남북한간에 이념과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연방제를 채택한다면 북한의 경우는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만큼 체제문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단일국가를 제시했으므로 새통일방안에서 거기에 입각하여 본격적인 통일헌법 초안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체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쪽 체제를 너무 수렴하다 보면 이쪽 체제는 부정이 되고 그리하여 자기 모순에 빠질 우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梁教授님께서 지적했습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방안, 정부의 새통일방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은 어떠한 국가형태, 국가 모습으로 통일되느냐 하는 것은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마는 최종적인 국가형태가 뭐냐 하는 것은 聯邦制건, 單邦制건, 즉 Federal System이나 Unitary System이나 하는 것은 유보를 해두는 것이 좋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국 통일헌법 制定과정에서 국가형태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政治體制, 政治理念, 對內外 政策의 基本方向, 政府形態 등의 문제들은 통일헌법 制定 논의과정에서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 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일국가의 형태마저 단일국가로 못을 박음으로써 북한의 聯邦制하고 적어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도록 되었어요. 통일국가 수립과정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국가형태에 관한 선택의 문제도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통일의 주체인 민족성원 전체의 결정에 맡겨야 될 문제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새 통일방안에서는 單一國家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새 통일방안에 입각해서 統一憲法 초안 골격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연구는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연구는 憲法學者들이 앞으로 해야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李長熙교수께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7페이지 이하에 통일이념

에 대해서 한마디로 고리타분한 얘기를 전개했다는 지적받고, 또 發想의 전환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지적같은데, 논문을 쓰면서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에서 썼습니다.

우리 체제가 아니고 북한의 체제까지도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보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체제로 저쪽도 변해가야 할 것이라는 역사의 흐름과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統一理念도 제시했어요.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政治面에서 民主主義, 自由主義라든가 그밖에 平等主義, 人間主義 등은 현재 우리 체제에서만 아니고 앞으로 統一國家가 됐을 때도 이것은 우리가 채택해야 될 이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그리 고리타분한 내용은 아닙니다. 용어 자체는 전통적인 보수적 명칭 같지만 그 내용 자체는 새로운 면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교수께서는 왜 우리의 전통적 사상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 아마 발상의 전환을 못했다, 이런 지적 같아요. 전통적 사상, 이를테면 우리가 유교적인 관념에 입각한 傳統思想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5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사상이라고 할지 모릅니다마는, 예컨대 흔히 쓰는 말로 弘益人間의 이념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일이념으로 제시한다면 抽象的이고 觀念的인, 非科學的인 이념을 통일헌법의 이념으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李長熙교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李長熙교수께서 19페이지의 통일헌법의 부칙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문제인데, 통일국가가 대외적으로 新國家의 창설임을 전제로 국제법의 一般原則에 입각하기로 한다는 이 부분에 관한 의문같습니다. 이것에 대해

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검토를 문제이고, 여기서 제가 제시한 것은 하나의 試論일 뿐입니다. 그래서 '試論'이란 것을 특별히 붙였어요. 이것은 통일헌법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성격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새 통일방안에서도 나왔 습니다마는, 하나의 새로운 단일 민족국가의 건설이(a new nation state building)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의 민족국가의 건설, 즉 未來指向的인 歷史創造의 과정에서 남북간의 통일로 이루어져야 할 새로운 민주국가의 건설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새로운 국가의 창설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正統性 問題, 唯一合法性 問題, 大韓帝國과의 關係등 법적인 관점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관점은 새로운 민족국가의 건설, 즉 미래지향적 역사창조 과정에서 우리가 이룩해야 될 국가, 새로운 국가의 창설로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저의 소박한 생각이라 그렇게 받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金 應 :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분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답변시간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金明基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明基 : 金洛中선생님은 저한테 별 특별한 질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白樂暻선생께서 민족공동체헌장과 暫定協定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우선 듣고 토의하자고 하셨으므로 이에 관해서서는 주최측의

답변이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李相煥선생님께서 저에게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통일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李相煥선생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 憲法 제3조에 걸려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憲法에 위배되는 것으로 된다는 점입니다.

또 제4조에 의해서도 북한을 국가로서 승인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헌법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법적 측면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개정이 선행되고 그 뒤에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平和協定을 체결해야만 순리적으로 통일문제를 풀어나 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평소생각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저의 페이지 22페이지에서 실천과제를 현장채택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눈 것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채택이후의 것을 채택 이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셨는데, 이렇게 두개로 나눈 것은 민족공동체현장을 일단 만들고 그 뒤에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만일 제가 편의상 구분한 이후의 것을 이전에 다른 것과 같이 다룬다고 하면 민족공동체 현장자체는 채택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별을 해 본 것입니다. 憲章 채택 이후의 문제들은 우리측이나 북한측이나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그렇게 봤는데 이는 상대적인 구별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남북간의 합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채택 이전의 것과 채택이후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구별의 한계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구별을 해봤습니다.

다음 申鉉奇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특별한 질문은 없으셨습니다.

金光植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은 신뢰구축과 적대감 해소 노력의 표시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23페이지에서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래서부터 7째줄을 보시면 平和協定을 체결하고 軍備를 통제하고 병력을 감축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敵對感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당면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다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저를 左傾視하고 또 이를 터부시하는 것같은 인상을 받아왔습니다. 이 문제가 선결문제로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뒤에 吳寬治 博士께서 설명할 부분으로 軍事問題가 우선 해결되고 그 뒤에 政治經濟問題가 해결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서 제 생각은 吳 박사님 의견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군사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적대감이 해소되고, 적대감이 해소되어야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풀려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金光植 선생님이 통틀어서 저와 吳寬治 박사님 그리고 張 박사님 전체에 대해서 물은 질문의 하나가 통일은 요원한 것이므로 平和定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平和定着을 하고 그 토대위에서 통일이 모색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南植 선생님께서 아주 중요한 또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高麗聯邦制 통일방안을 절충한 것, 그러니까 兩方案이 공통점도 있으니 그것도 이것도 아닌 제3형태의 통일방안은 없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받아 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國家聯合은 그것은 조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聯邦國家는 헌법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의하고 있는 南北聯合은 실질적으로 國家聯合인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南北聯合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전에 5共末期에 통일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정부기관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통일방안을 만들라고 해서 그때 제가 제시한 것은 이런 구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의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과 북한이 제의한 高麗聯邦制 통일방안을 절충하는 방안으로 어떤 방안이 있겠는가, 우리 정부가 暫定協定을 체결하자라고 했고 그 暫定協定은 일종의 조약이니까 국가연합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그 조약속에서 聯邦制를 수용하자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제의하는 聯邦制 그대로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國家聯合을 수용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통일헌법도 나오게 되고 기타 여러가지가 나오니까 일단은 중간단계로서 高麗聯邦制 통일방안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절충안으로서 잠정협정속에 국가연합을 흡수하는 그런 것을 제시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金南植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제3의 통일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절충안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새로 제의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던 高麗聯邦制 통일방안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절충안에 있어서 국가연합이 실현될 수 있느냐고 하는 점에 관해서는 시간을 요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聯邦制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Federation이든 Confederation이든간에 공동의 敵이 있어야 되고 공동의 경제적인 利益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敵은 가상적인 것이고 또 무너져 갑니다마는 中國과 蘇聯이고 이들은 북한에게는 적이 아니라 우방입니다.

또 미국은 우리에게 우방이지만 북한에게는 적입니다. 이렇게 남북한의 공동의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聯邦制는 Federation이든 Confederation이든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의 적이 생길 때까지 제가 생각했던 제3안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저의 構想이었습니다. 충분한 답이 金南植선생님께 대해서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되어서 뒤로 넘어 가겠습니다.

梁建교수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내적 특수관계인 우리 민족의 통일방안에서 현장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기존의 國際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접근을 시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이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독일의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줄로 알고 우리의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결국은 법으로 分斷國의 모든 문제를 정리한다고 보면 그 법은 國內法이 아니면 國際法, 國際法도 아니면 世界法 그 중의 어느 하나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족공동체현장을 國際法도 아니고 國內法도 아니고 그럼 뭐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반을 했을 때 制裁節次가 뒤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제법이라면 국제법상 국제재판소에서 구체절차를 따르고, 國內法이라면 국내재판소에서 그 구체절차를 따라야 되겠는데 그것이 없다면 사실 법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겪습니다. 그런대로 종전의 체제대로 법을 國際法과 國內法으로 나눠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얼마전에 우리 國際法學會에서 헝가리와 같이 공동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토르자라는 헝가리 사람이 와서 발표하고 많은 질문에 답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산국가간의 국제법이 있고, 자본주의 국가간의 국제법이 있고,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국가간에 국제법이 있다라는 것이 공산국가의 토킵교수에 의해 제외되는 國際法 논리였는데 헝가리 사람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었

습니다. 國際法이 하나지 어떻게 공산국가 국제법이 있고 무슨 또 다른 국제법이 있느냐, 그런 가상은 이제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헝가리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만일 우리가 分斷國 국제법이라는 것을 하나 만든다면 즉, 그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가상에 흐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李長熙교수님이 질문하신 正統性 문제에서 唯一合法性 문제인데, 1948년 12월 12일에 國際聯合 총회의 결의 제195호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합법정부로 인정을 받은 것에 관해서 결의문의 내용상 약간 그 해석의 엇갈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 유엔에 의해서였고, 유엔에 의해서 6.25동란에서 지켜져 왔다는 이런 체제속에서 본다면 唯一合法政府로 인정을 받은 것은, 全韓國의 유일합법정부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와서 변형해가지고 남한만의 유일한 합법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우리 國益에 反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全韓國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해석에는 법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두번째 李長熙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유럽공동체적인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이에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統一院의 案이, 統一院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해설을 볼 것 같으면 유럽공동체현장의 모형을 딴 것인데 저는 그것은 못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李長熙교수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司 會 :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吳寬治박사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吳寬治 : 金洛中선생님 말씀하신 북한의 전략에 변화가 있었지 않느냐에 대

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包括的인 平和方案을 제의한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은 對南顛覆戰略 또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더 중점을 두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저의 표현이 일방적으로 武力쪽에 조금 편향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신뢰구축 조치의 순서를 바꾸고 1과 5를 나중에 하고 또는 2와 3을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信賴構築措置 또는 平和協定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순서이고 그러나 그것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 좀 융통성있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白樂曙선생님의 신뢰구축단계의 분류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신뢰구축조치는 남북한이 지향하는 목표를 일치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한간에 그러한 목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남북한간의 상호현실을 인정한다든지 交叉承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 우리로서는 확인수단입니다. 그런 확인도 없고 지향하는 목표가 없이 수단에만 매달리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남북한간의 군축 또는 군사적인 신뢰구축에서 상호 DMZ에서 60Km씩 병력을 후방으로 이동시키자고 하는 경우 북한은 DMZ에서 평양까지 187Km거리이고 우리는 훨씬 더 가까운 40Km이므로 우리는 부대를 평택밑에다 갖다 놓고 북한은 황주밑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는 民間經濟, 輸送때문에 평택과 서울사이는 도대체 군을 급속히 이동할 여력이 없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정치적 신뢰가 없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신뢰가 원칙적으로는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닐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많은 논의가 북한의 大衆催眠에 우리가 많이 걸려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저는 개인적인 불만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신뢰구축으로 북한의 목표를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사문제의 취급없이는 남북한 신뢰문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군사문제를 취급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런 면에서 白선생님과 똑 같습니다.

李相煥선생님께서서는 한민족공동체 추진과 신뢰구축단계간의 연관이 무엇이라고 물으셨는데 한민족공동체 추진체는 큰 틀이고 그것에 조금 일부 세분화된 것을 저는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金明基선생님께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朝蘇防衛條約에 대해서는 어떻느냐, 그것은 우리가 韓美防衛條約을 가지고 있듯이 당분간 朝蘇防衛條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光植선생님께서서는 북한 군비축소가 진정한 의미에서 나온 제의냐, 즉 경제적인 문제 해결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질문인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만 믿기에는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평화방안을 보면 미군철수 주장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도 미군철수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데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그런 것을 제안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高性俊선생께서는 팀스피리트 규모를 축소해서 제의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북한은 절대로 이것만으로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호의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對備態勢 발전에 틴스피리트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양보를 하면서도 북한으로부터는 아무런 양보도 끄집어 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저는 현명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南植선생께서 朝蘇, 朝中友好條約 그 문제를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본이 꼭 美·日·中·蘇 동북아 평화협회의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2천년대 이후에 일본이 東北亞에 있어서 역할을 증대할 것인데, 그러한 일본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한반도 평화보장 또는 안전문제에 참여를 안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방으로서 일본의 對北政策에 어떤 틀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일본의 참여가 저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李長熙교수님께서 駐韓美軍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는 駐韓美軍이 있음으로써 對北協商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북한의 주장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駐韓美軍의 철수 또는 감축을 아무런 反對給付도 없이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힘과 회유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측 요구를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응당한 태도변화를 가져와서 주한미군존재의 필요가 없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재검토할 문제지, 현시점에서 그렇게 북한의 요구를 受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統一에 앞서 平和保障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平和保障을 위한 핵심은 駐韓美軍, 韓美聯合體制라는 것을 우리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崔榮교수님께서 신뢰구축단계 설정이 90년대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북한이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안했으니 우리도 어떤 대응방안을 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훨씬 더 훌륭한 좋은 平和保障 方案을 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에 가서도 신뢰구축단계 설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對 北關係協商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河英善선생님께서서는 국제체제변화, 북한 내부분제, 또 국내차원의 측면에서 우리가 政治·軍事問題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으면 난관에 부딪치기 쉽다 하는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政治·軍事協商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고 이를 적극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 惠 : 감사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토론에 대한 답변과정에서도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차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없이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하도록 하십시오. 아주 자유롭게 난상토론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멘트 안한 분들은 統一院 쪽에서 오신 분들인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꼭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統一院에 몸담고 있는 계신 분으로 자기 견해를 밝혀주시고 최종적으로 崔文鉉室長께서 종합적으로 정부의 입장에 관한 몇가지 결론적인 답변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極性 : 발표하신 세 교수님은 평소에 저희 統一院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연구에도 참여해서 좋은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研究結果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과 지향하는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통일헌법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문제가 제기됐고 또 답변도 잘 하셨습니다만 일단 통일헌법 자체가 未來指向的이며, 멀리 잡아서 준비하는 것이라는데, 또 그 자체가 통일실현 노력의 일환이라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입장을 같이 하고 동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통일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먼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그렇게 한 것과 같이 「남북평의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족통일협의회의」라든지 여기에서 統一憲法案을 기초하자고 일단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남북평의회」가 구성되면 결과적으로 남북은 각기 양쪽의 統一憲法案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바대로 요원한 시간을 멀리 잡아 두고 헌법을 연구한 것이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며, 남과 북이 같이 토론 협의해야 할 協商用의 헌법안이 당장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미래지향의 헌법안을 내놓고 협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에도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도적으로 어떠한 단계를 설정을 했다가 다시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聯邦國家건 單邦國家건간에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헌법안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상적인 것만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제시한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미래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미래상에 맞춰서 협상용 헌법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평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내놓을 수 있

는 그런 헌법초안이 필요할 텐데, 오늘 발표한 내용이외의 다른 안을 만일 구상 해본다면 과연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있으실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張教授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싶습니다.

동시에 통일국가까지 가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고쳐놓거나 또는 東西獨基本法과 같이 통일시 까지 적용되는 가장 이상적인 헌법을 먼저 마련해 놓고 북한이 이에 따라 올 수 있는 데까지 따라 오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후에 남북이 통일이 되는데 따른 여건이 여러가지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가미하고 추가해서 헌법을 보완하여 통일헌법을 만드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金明基박사님께서 남북연합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體制聯合인 듯 했는데 나중에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南北聯合으로 애매하게 된 것 같다고 했는데 이 경우 연합의 성격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하고, 저희 장관님이 말하는 것하고 또 統一院 公式立場이라고 표명하는 것이 다른 듯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南北調節委員會와 같은 남북이 각기 자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일 지향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協商과 調整의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 업무의 범위와 성격을 비롯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憲章을 발표하는 이런 과도체제가 아닌 어떤 조절기구로서의 그런 것을 두는 입장을 의미하고 있는 듯한데, 그렇다면 이것은 當局間 協商, 國會會談, 그 다음에 經濟會談, 이런 남북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협상을 통해 합의의 본다면 그 합의 자체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지만, 이들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면 憲章性格으로(물론 憲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지도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남북한의 合意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총체적인 合意로서 憲章을 합의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憲章으로 바로 合意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개별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부분별로 남북간의 문제를 풀어 나가서 그것이 더 발전하면 總體的으로 합의를 보고, 그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기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럴 경우, 결국은 이번 발표된 南北聯合이라는 것의 모호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라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와 함께 南北聯合 자체가 과도체제가 아닌 과도적인 성격의 하나의 機構인 이상, 이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면에서 제가 문제를 한번 제기해봅니다.

金 憲 : 감사합니다. 金洛中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金洛中 : 지금 徐極性 선생님이 말씀한 것하고 연결이 되고 또 오전에 제가 질문을 못했는데 金明基 교수님의 발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事案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南北聯合의 성격 또 민족공동체 현장의 성격이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현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발표되고 있는 그 내용은 두개의 국가적 실체간의 雙務的 協議機構 정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민족공동체 현장이라는 것도 결국 실질적인 두개 국가간의 共同宣言 내지 合議書 같은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쌍방국회 의원들로 구성된 쌍무적인 협의기구인 남북평의회에서 합의해 가지고 하자, 뭐 그런 정도로 내

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이해하는 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까 金明基 교수님의 발표속에서도 모호하게 넘어 간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점입니다.

平民黨에서 주장하는 것도 Confederation의 성격을 가졌고 民主黨에서 주장하는 것도 Confederation의 성격을 가졌는데 또 과거에 李洪九長官이 體制聯合의 쪽을 얘기할 때도 Confederation이라고 이해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金明基교수님의 발표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째서 정부가 이번에 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Confederation이라는 것을 수렴할 수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수렴했다라면 남한측 野黨들의 統一政策을 수렴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超黨的 統一政策도 가능한데 무엇 때문에 그 Confederation적인 국가연합을 회피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통일원측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Confederation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라면 북한측의 의사도 수렴하는 것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측에서 지난 번에 문익환목사가 갔을 적에 점차적인 단계적인 연방제도 가능하다고 말함으로써 실질상 金大中씨의 平民黨이나 金泳三씨의 民主黨에서 얘기하는 그 Confederation을 단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했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쪽의 그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수렴하는 입장이 됨으로써 북쪽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민에 대해서 설득하기도 좋은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이 무서워서 남북 쌍방이 군사 외교권을 따로 보유하는 Confederation 조치를 배제해야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원측에서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우선 金明基 교수님의 의견을 구하고 통일원측에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남북연합의 성격을 만약에 Confederation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는 안 되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南北聯合은 하나의 느슨한 結合體인 聯合國家 또는 法人格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민족공동체 헌장을 민족적 연합국가의 헌법적 규범에 가까운 조약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민족공동체 헌장이 남북쌍방의 헌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남북 쌍방의 헌법보다도 상위의 어떤 조약을 가지는 것으로써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1연방국가는 아니고 1연합국가하에 있는 두개의 政府 내지는 두 體制라는 것을 받아 들인다면 무엇이 어려운 것인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南北聯合이라는 것에다가 그런 Confederation적인 성격을 두고 또 거기다 어떤 法人格을 인정하고 민족공동체 헌장에다 민족적 규범으로서 말하자면 남북쌍방의 헌법을 넘는 高位法規範의 성격을 부여하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그런 성격으로 Confederation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한민족공동체 헌장이 남북쌍방의 헌법절차를 거쳐 가지고 보다 상위의 어떤 民族的 規範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면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Commonwealth라고 하든지 Confederation이라고 하든지 이견 상관 없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코리안 컨페더레이션(Korean Confederation) 또는 코리안 커먼웰스(Korean Commonwealth)가 단일하게 유엔에 가입하고 단일하게 가입한 국가의 국기나 국가를 가지는 정도에 불과한 실질상으로 두 정부가 다 존재하

는 그러면서 獨自의 民族聯合議會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民族聯合議會는 의사를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되 현재의 남북평의회 같은 쌍무적인 것이 아니고 다수결로 결정하되 그 회의에서는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는 사항은 남북쌍방 지방들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民族聯合議會의 의원의 신분을 남북쌍방의 국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코리안 컨페더레이션(Korean Confederation)의 시민으로서 自然人으로서 가족과 함께 平和市에 머무를 수도 있고 남북 어느 쪽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민족연합의회 의원들은 민족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북쪽의 눈치, 남쪽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자기 의사를 발표함으로써 2/3에 의한 민족적인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平和市의 경우 平和市의 領土權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 平和市의 領土權은 현재의 平和市案에서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영토 북쪽의 영토인 상태에서 그저 같이 쓴다는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한데 그 영토를 독립적인 自由市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독립적인 自由市에다 自治權을 부여하고 그 자치권에 의해서 그 속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또 남북쌍방의 대의원이 되어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민족적인 입장에서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어떤 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가능성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自由市의 평화보장의 문제, 치안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自由市의 독립성과 自由市의 평화와 질서유지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國際平和統一保障軍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國際平和統一保障軍 같은 걸 만든다면 그 平和市 즉 自由市로서의 平和市의 치안과 유지를 담당하고 남북

간의 충들을 완화하는 역할도 하면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美·蘇·日·中 이 4개국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의 청년들 중에서 병력을 모집하고 그 장교들은 4대국의 장교나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제3국의 장병을 고용하면 됩니다. 비용은 남북쌍방이 동액으로 국방비에서 공동 부담하면 그 자유시의 치안과 또 남북간의 평화를 담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國際的 平和統一保障軍도 실질상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장차 平和統一保障軍을 외국에 있는 교포들 청년으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에 있는 청년들이 남북의 국적을 떠나서 자유시의 시민으로 되면서 확대되어 나간다고 보면 연합국가의 단계를 거쳐서 다시 말하면 Korean Confederation의 단계를 거쳐서 장차는 Korean Federation의 단계로 넘어갈 경우 그것은 상당히 강력한 독립적인 하나의 힘으로써 성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思考하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전향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일원측의 의견, 그리고 우리 김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인데 張明奉교수님에게 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운동을 하는데 있어 통일헌법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통일을 원하고 통일운동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비전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의 제시는 이 통일헌법 속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經濟學을 했기 때문에 經濟學을 한 관점에서 선생님이 쓴 통일헌법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통일민족국가의 경제체제가 뭐냐 이렇게 검토

를 해봤습니다. 논문에 나타난 걸로 보서는 混合經濟 體制라고 하면서 私有財產制度를 근간으로 하면서 國公所有制를 도입하는 소유형태로 보고계십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북한의 소유형태의 차이로 인한 북한주민의 財產權 보충의 필요성으로 國公有財產 공유의 특별규정을 둔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所有權制度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걸 좀 분명히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통일헌법의 이념속에 平等主義를 썼는데 그 평등주의란 것이 서구라와 국가들에서 말하는 民主社會主義를 수용하는 것인지 아닌지 만약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라면 民主社會主義라는 표현은 왜 피해야만 됐는지 이것이 두번째 질문입니다.

세번째 이 통일헌법에 따르면 북측 주민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민주주의를 줘야 되고, 複數政黨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통일헌법의 試案에 의할 것 같으면 남한측에서 해야 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의 제도와 체제의 변화 없이도 그냥 곧장 되는 것 같은데 과연 남한측에서는 이 통일헌법을 위해서 自己 修正해야 될 어떤 부분이 없느냐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적에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財閥經濟 체제에 대해서는 私有權 존중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아무런 변화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金 憲: 지금 金 洛中 선생님이 제의하신 문제는 워낙 근원적이고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발표하신 분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꼭 統一院이 최종적인 답변을 미리부터 제시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첨가하고 싶

은 분이 계시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제가 받는 인상은 소위 國家聯合 형태를 왜 솔직하게 수용하지 못하느냐 만약 이 연합이라는 것이 國家聯合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성있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구태여 자꾸 숨기느냐, 그 배경이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인데 소위 國家聯合을 수용하자는 것까지는 制度와 理念의 차이를 용인하는 형태의 통일을 성취하자는 얘기이기때문에 현상황으로 봐서 상당히 현실성있는 얘기인데 그 뒤에 平和市에 시민을 따로 둔다든가 거기에서 군대를 뽑아 공동체적인 새로운 군대 조직의 형성 가능성을 모색한다든가 또는 平和保障軍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표시한 점이라든가 평화보장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金洛中선생님의 전반부는 극히 현실적이고 후반부는 극히 이상적인 그래서 우리가 평화통일이라는 자체가 평화라는 것은 현상유지이고 통일이라는 것을 현상타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paradoxical한데가 있습니다만 조금 엇갈리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관련된 견해를 많이 표명해주십시오.

崔文鉉: 이것이 學術會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統一院의 입장을 말한다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학술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이 개진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답변이 아니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白樂曙위원하고 金洛中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결국 하나입니다.

두분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연방제나 국가연합이나 조약이나, 협정이나 이것을 왜 분명히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南北聯合이라는 것을 헌법적 측면에서 또 국제법적 측면에서 여러 분 학자들을 모시고 많은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張明奉교수님도 계시고, 金明基교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결론은 애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聯合을 했다 그러면 더 큰 논란이 있고 聯邦으로 했더라면 현재 더 폭발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통일문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접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東西獨의 基本條約이 조약이나 협정이나 또는 민족내부간의 어떤 합의나 일반 합의나 이것도 논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동서독은 각기 이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의 이중성이 여기에서도 발견되는데 국제적으로 보면은 남과 북이 100개 이상의 나라와 國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남북관계만이 조정이 안되었지 이미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국제적인 승인을 받고 있어요. 하나 하나는 국제법적 존재로 승인을 받은거죠.

그런데 남북간에는 뭐냐 이것은 역시 연합국가간의 국가와 국가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外交關係는 아니다. 이 점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은 연방도 아닌 국가연합도 아니고 어떤 잠정적이 남북간의 共存概念으로 일단 두어야지 이걸 분명히 하면 논쟁이 더 커지고 憲法論爭, 國是論爭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이 그냥 애매하게 놔두자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제가 상당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金洛中선생께서 聯合議會의 운영, 平和市 건설, 平和軍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이 平和市를 제3의 정치단위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새 통일방안의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金 惠 : 崔文鉉 실장님께서 金洛中 선생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서로 알아듣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새 統一院 입장은 되도록이면 너무 명확치 않은 것이 좋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장관 얘기하는 방식하고 실장 얘기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한 견해를 들어보려면 역시 정부안에 있지 않는 金明基 교수님의 견해를 들으면 좋은 얘기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기왕 발표 하셨으니까 제기된 문제에 대한 김교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金明基 : 金洛中 선생님이 제기하신 첫번째 문제는 統一院에서 담한 걸로 됐고, 두번째 문제중에 國家聯合으로 해석할 수 없느냐 그리고 民族共同體 憲章을 조약으로 볼 수 없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여기 페이지에서 순수한 법적 입장에서는 조약일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政府當局에서는 애매하게 조약이 아닌 걸로 보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가지 그 조약을 Confederation의 憲法으로 볼 수 없느냐 라는 점에 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Confederation의 기초는 條約이고 Cofederation의 기초는 憲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onfederation의 기초인 조약을 만들고 다시 일보 전진해서 Federation으로 나가려면 그때 헌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 조약 즉 남북공동체 현장을 바로 헌법으로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공동체 현장을 만들고 그 현장에 의해서 통일 헌법을 만들면서 그것이 컨퍼더레이션의 헌법이 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민족공동체 현장 그 자체는 조약의 성격을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은 될 수 없겠습니다.

두번째로 단일 국호로 유엔에 가입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이셨는데 역시 Confederation으로 본다면 그 構成體는 대외적으로 개별국가들이고 뭉쳐서 하나의 代表權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일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法論理上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세번째로 平和市의 건설에 관해 좋은 착안을 해주셨는데, 4強의 장교가 사령관이 되거나 4強의 병력으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특히 平和市를 管轄하는 방안은 4強에 의한 방법, 유엔에 의한 平和維持軍에 의한 방법, 또 하나는 아세아의 中小國에 의한 방법, 대개 이 세가지 방법이 구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4강에 의한 방법은 남북간의 충돌을 완충하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고 平和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 장차 우리의 통일에 또 다른 장애요소가 되고 그것이 自主的인 통일에 방해요소가 되는 것이 분명하고 남북간의 관계의 休戰協定이 복잡하게 체결돼 가지고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4強에 의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유엔에 의한 방법이 유엔 平和維持軍을 새로 파견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도 平和維持軍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4強의 병력으로 구성하는 방안, 韓國動亂에 참전했던 국가들로 1954년에 제네바 政治會談에 참여했던 국가들로 구성하는 방안, 또 아세아 中小國으로 구성하는 방안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는데, 부르킹스 연구소의 주장인 아세아 중소국으로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차 남북이 통일하려고 할 때 쉽게 통일하고 이들을 내 보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대로 그 平和市 혹은 非武裝地帶를 管轄하는데는 그 정도 병력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세아 중소국 군대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는 것이 부르킹스연구소의 견해입니다. 저 개인도 그 쪽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4強的 장교들로 구성이 됐을 때 中立性을 보장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4強的 병력을 유입하여 平和市를 만드는 것은 남북관계를 법적으로 복잡한 것을 피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것으로 되기 쉽다고 봅니다. 우리 남북 두 당사자간에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는데 제3국을 다시 불러 들인다면 오히려 그 해결을 위해서 또 복잡한 남북간의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 남북 당사자간에 의해서만 平和市를 건설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金 惠 : 감사합니다.

白樂曙 : 아까 崔文鉉 실장님의 답변은 그것으로 그치고 단지 제가 그것을 提起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吳寬治 선생님의 논문에서도 나오는 얘기이며 또 남북한의 실제 통일방안에도 단계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平和定着問題입니다. 즉 남북간의 불안정한 체제를 공고한 平和體制로 전향한다 하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고 또한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平和體制를 구축한다 하는데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정책개발의 진전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吳寬治 선생님의 논문에 보면 정치적인 신뢰의 구축단계의 1, 2, 3, 4중에서 1,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체결, 2, 평화 및 불가침 협정체결, 이렇게 비슷한 개념이 중복, 열거되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協定도 체결하고 平和協定도 체결하고 不可侵協定도 체결하자는 말씀이신지, 다 한다면 열거된 순서대

로 하는 것인지 이 셋중에 하나를 하면 족하다는 것인지 이것이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協定の 내용이 잘 돼 있으면, 즉 거기에 불가침협정의 내용이 포함되고 또 평화협정의 내용이 포함된다면 그 명칭이 불가침협정으로 돼 있지 않고 또 平和條約이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는가, 즉 그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좀 더 구체적인, 실천적인 과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정착을 한다면 휴전협정을 그대로 두고서 남북한 당사자간에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휴전협정의 내용을 잠정협정 또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는데 移入시켜 가지고 대치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統一院에서는 앞으로 통일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作戰權問題등 여러가지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실천가능한 選擇代案의 도출과 이들 대안의 利害得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金 惠: 이제 좀 정리가 돼 나가는 것 같습니다.

南北聯合 문제는 金明基교수의 답변을 끝으로 대강 그 정도로 해두고 이제 平和的 定着과 構築 즉, 平和造成 문제인데, 白樂曙선생께서 이 문제를 제기해주셨습니다.

李達坤: 저는 신뢰구축과 관련돼 가지고 제3자 활용에 관해서 질문 두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커먼웰스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는 구주, EC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제3자를 어떻게 활용하는냐 하는것을 보면 EC에는 관련관료가 약 13,000여명이 됩니다.

EC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5년동안 일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279

개 法을 통과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50개 정도 통과시켰습니다. 약 만여명이 12개 나라의 개별적인 利害關係에 구애됨이 없이 하나의 마음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機制가 되어서 상당히 統攝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平和市를 신설하는 등 여러가지 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은 그것이 제3자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인다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地理的으로 한쪽에 유치를 한다면 軍을 유치를 하든 다른 僑胞人材를 유치를 하든, 상당히 위험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方案중의 하나가 海外僑胞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僑民政策을 활용해 가지고 이들이 제3자의 역할을 해주도록, 어떻게 앞으로 돌파구를 찾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시켜서 지금 구체적 신뢰구축에 있어서 中립국 감시위원회도 또 하나의 제3자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폴란드하고도 관계가 개선 되고 있고 체코와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으니 옛날의 편향된 생각을 떠나서 우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는 없겠는지 그 이야기를 오박사님께서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같습니다마는 統一政策을 조절하는 메카니즘이 이래가지고 통일을 위한 실천적 정책을 지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선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많은 갈등이 지금 기존의 관료조직으로는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통일정책을, 統一院의 성격은 상당히 다릅니다만, 제가 알기에 기존의 官僚組織, 豫算體系, 人事 여기에 그대로 넣어 가지고 여기서 무슨 돌파구가 정말로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깁니다. 장관을 임

용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장관과 꼭 마찬가지로 할 때 우리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것도 또 얼마나 추진시킬 수 있겠는가 싶습니다.

金 惠: 첫번째 문제하고,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분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뒤로 미루고 平和定着이나 信賴造成하고 관련해 金達述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達述: 평화정착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토론과 오후토론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특히 平民黨의 李相煥선생님 또 民主黨의 申鉉奇선생님, 共和黨의 金光植선생님등이 평화문제를 제기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學界에서도 주한미군문제, 말하자면 평화정착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평화정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協定이나 또는 條約과 같은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평화에 관한 의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방어능력, 자기의 국토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지, 이런 것이 보다 더 핵심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自主國防 즉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자주국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평화정착이라는 테마속에서도 논의조차 잘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좀 부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自主國防에 관한 문제는 駐韓美軍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駐韓美軍 문제는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간에 동서간의 새로운 데탕트 현상으로 언젠가 撤收問題가 대두될 것을 예상해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이 있

고 또 하나는 對北關係 즉, 남북관계 개선이란 측면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대화가 주춤거리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저는 이 자주국방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토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代案으로서 제 생각은 우선, 자주국방의 개념은 1:1의 싸움 또는 북한 단독의 남침에 대한 방어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먼저 성립이 되고, 그후 북한이 제3자와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올 때에는 우리의 기존 韓·美安保體制를 발동하는 등 集團安全保障의 개념으로 방어한다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난 60년대나 70년대에 북한이 여러가지 도발을 해왔을 때 우리가 미국과 한·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의 군사적 보호하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으로서 많은 서러움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21사태때 북한의 무장계릴라 부대가 우리 대통령 관저를 기습했는데도 미국쪽은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프에블로號를 석방하는 데만 치중을 했고 대한민국대통령의 권위라든가 이것은 거의 묵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에 대해서 계릴라를 지원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자기는 치면서 우리가 북한을 친다고 할 때 미국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自主權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미국과는 상당한 협조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이에는 이로”라는 구호로 계릴라에 대한 보복을 서슴없이 감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저는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자체가 상당히 깊이있게 논의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에 관한 문제는 현재

의 남북관계 뿐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고 난 다음에도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武裝中立路線, 아까 金明基교수님, 張明奉교수님께서 中立的 外交路線을 전개할 수 있는 힘의 배경 즉, 國際平和主義하고 관련해서 힘의 배경에 대한 말씀이 제셨습니다마는 통일된 이후에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자주적 방위 능력은 확실히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곧 남북간의 平和定着이라는 테마의 핵심이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는 문제 즉, 미군철수에 대비해서 어떻게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는가, 국민의 稅金負擔은 얼마나 늘여야 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없이, 條約에 의존하다든가 남북한의 협의 사항에만 의존하다든가, 또는 제3자에게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공염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평화정착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할 때에는 우리가 자주국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자주국방을 할 때에는 우리 국민이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될 것인가하는 이런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앞으로 각 政黨間에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또 學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깊이있게 연구되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 憲 : 감사합니다.

河英善 : 한반도의 평화체제하고 연관된 얘기가 되겠는데 오전에 시간이 짧아서 縮略을 해서 얘기를 한 관계로 커뮤니케이션에 혼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뫼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지금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保守主義 또는 現實主義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이나 또는 변혁적인 방법이 아닌 제3의 방법, 제 표현으로 하자면 보다 개혁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90년대에 맞이하게 될 세계의 애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째, 國際體制的인 차원에서 딜레마가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만약 신데땅뜨 기간동안에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再編成까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경우에 아마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당한 변화가 東北亞 전체에 닥쳐 올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몇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戰術核武器 부분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구라파 차원에서 전술핵과 재래식 무기의 감축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거의 중거리 핵무기 폐기협정이 구라파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지역까지 포괄되었던 것처럼 단거리 핵무기 폐기협정도 아시아지역까지 미·소간에 원칙적으로 합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군사훈련의 경우에 구라파 차원에서 팀스피리트와 유사한 훈련들이 구라파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되는데 그쪽에서는 합의되어 있는 신뢰 구축방안에 따라 사전통보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미·소가 동북아에서 하는 군사훈련들인 파섹(PACEX)이든지 팀스피리트도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駐韓美軍問題도 우리는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의 맥락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보지만 미국은 전 세계적 차원의 군사적인 再編成의 일부분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진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 우

리는 우리 나름의 이해속에서 한반도의 平和統一 또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나름의 명확한 입장을 설정하고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텀스피리트 같은 경우에 물론 한·미간의 문제가므로 우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것을 일단 한반도 내지 한반도 주변의 군사훈련에 관한 것에 대한 여러가지 제 문제를 논의하자고 북한에게 제안할 수는 없는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戰術核의 경우에도 戰術核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밝힐 수 없는 애로를 미국정부나 우리 정부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統一院式의 애매한 표현으로 무기체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戰術核 자체가 일단 抑止的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공격용 무기체제에 대한 抑止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방의 무기를 억제할 수 밖에 없다고 이쪽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대상자체를 또하나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駐韓美軍撤收도 이것은 어쩌면 미국내 문제인지 모르고 어떤 형태로든지 변형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주한미군이 어차피 구조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래 한반도에서의 불행한 군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抑止機能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변화조건을 남북한의 협상의제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러니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주한미군 문제를 남북한 협상의제로 삼는 것이 오히려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더 기여할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제가 국제체제의 변화를 빨리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

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국제체제의 변화를 읽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 같습니다. 政府次元에서는 그것은 어차피 강대국의 문제니까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남북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였습니다.

둘째,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북한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령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이 1988년에 제의한 包括的 平和方案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그것이 북한의 공식 논리인 자주적 평화통일을 강조하고 있지만 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역시 아직까지도 그것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의 한 일환으로서의 包括的 平和方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軍縮案 자체가 이 둘 사이에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명확히 있습니다. 보다 순수한 의미에서 평화를 위한 군축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오히려 평화방안을 설득력있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평화방안의 내용중에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화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활용하는 것이겠죠.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信賴構築方案차원에 관해서 한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信賴構築方案을 정치와 군사로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고 白樂暉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뢰구축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상식적으로 써 봤지만 원래는 재래식 군축 과정의 역사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구라파 자체가 정치 신뢰구축과 군사신뢰구축을 나눠서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도 빌려서 최근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두가지만 구체적인 지적을 하면 정치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다른 단계로 구분하진 말아라 하는 얘기를 제가 기왕에 여러번 했는데 별로 관심들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령 구라파의 예를 보더라도 신뢰구축방안에 관한 헬싱키회의부터 스톡홀름회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더라도 소련과 바르샤바 同盟國이 강조한 것은 정치적 신뢰구축이었고 오히려 미국과 나토同盟國에서 강조했던 것은 군사적 신뢰구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관계에 있어서 또는 조약이 가지고 있는 허망성 때문에, 정치적인 신뢰구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고 양쪽이 서로 갑론을박끝에 그것을 하나로 묶는 과정이 헬싱키회의, 스톡홀름회의, 최근의 유럽재래식 무기회의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가령 南北韓 國會 會談에서 불가침 선언이나 협정과 동시에 군사적 신뢰구축을 하나로써 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얘기되는 軍縮部分에 있어서도 보다 강조돼야 될 것의 하나는 아까 전술핵 무기와의도 연관된 문제이고 또 지금 구라파 진영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소위 공격용 무기체계의 축소인데 우리의 경우에도 이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방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단순히 地上軍 보다는 이 공격용 무기체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소위 말하는 이 비공격용 무기지대에 대한 문제인식이 국방부나 우리 모두에게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 憲 : 감사합니다. 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이 제세요?

李長熙 : 평화정착과 신뢰조성 문제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연결시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우리〈한민족공동체〉안은 여러가지면에서 西獨의 것을 본딴 것입니다. 앞서 여러 선생님이 〈남북연합헌장〉의 〈헌장〉이란 명칭을 두고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남북연합헌장〉은 동서독이 1972년에 체결한 〈동서독 기본관계조약〉과 유사합니다. 동독은 이 基本條約을 分斷條約으로 해석했고, 재통일의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반해 서독은 기본조약을 〈잠정적인 협정〉으로 보고, 이 기본조약이 결코 재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분단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방도, 즉 協力方法(modus vivendi)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기본조약은 어떠한 핵심적인 서독의 입장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약은 중단기적 관점에서는 자유왕래, 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재통일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긴장완화의 수단으로 보입니다. 즉 서독은 이 基本條約을 통해 民族問題의 법적 상태를 과도기적으로 얹어서 민족간의 인간적인 고통을 완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연합헌장〉보다는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이란 명칭이 중단단계인 〈남북연합〉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독의 東獨政策의 핵심은 접촉을 통한 변화입니다. 서독은 이를 物的 交流에 人的 交流의 요구를 연계시켜 달성시켜 나갔습니다. 우리의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서도 상호접촉은 제일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항상 물질 교류에 인적 교류를 연계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은 특정한 요구를 북한에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들든 말든 남한은 계속 어떤 변화요구를 북한측에 함으로써 무의식중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강력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이 이쪽 요구를 걸으려는 강력히 부인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행동에서 이쪽 요구를 많이 의식하여 따를 것입니다.

최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상부로부터의 改革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要求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즉 서독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동독인들이 텔레비전과 꾸준한 인적 교류를 통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自由化, 人間化 그리고 民主化에 의해 의식화된 동독국민들의 강력한 민주화 요구에 <크렌츠>동독서기장이 국가체제 존립을 위해 장벽을 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서독의 예를 우리 경우에 적용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선 알려야 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 상호교류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넓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通行 協定을 북한에 제안했는데, 이는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協定 체결전이라도 인적 교류의 제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적 교류 제도화를 위해 사람의 왕래와 書信·通信의 교류를 안전하게 보장받는 일은 통일여건조성을 위한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이에 어떤 명분을 붙여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이는 통일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남북한 양측은 世界史的 대호를 앞에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으며, 특히 북한은 南北韓 通行協定에 적극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계속 통행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다음 3단계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敵對感情 해소와 民族同質性 회복을 이루고 둘째, 이를 통한 성과를 쌍방간에 문서로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쌍방간에는 아직 불신이 있기 때문에 쌍방 합의의 실현은 남북한의 국내

정치적 기류 때문에 동요가 심해요. 그래서 한반도와 큰 이해 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美·蘇·中·日 4大 強大國의 국제적 협력을 보장받자는 것입니다.

이 4強을 포함한 남북한이 합해 6개국간 東北亞 平和會議과 같은 多者間 평화의 제도화는 남북한 쌍방의 약속을 신뢰성있게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미 東西獨은 1975년 유럽안보회의(헬싱키체제)라는 다자간 차원에서 그들의 민족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여 오늘과 같은 통일의 길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박사님의 多者間 信賴構築提案에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끝으로 吳寬治박사님 답변에 제가 조금 전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언급한 점에 대해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한 간에 서로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軍事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군사적 문제도 무조건 기피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 수렴의 준비기간을 미리 갖는 것이 갑작스런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과감히 조건부로 정치적 의지 표명을 대내외적으로 함으로써 우리의 統一意志가 의혹 받는 일을 拂拭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金 惠 : 崔榮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崔 榮 : 저는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吳寬治박사님이 현재의 包括的 平和保障 原則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河英善교수가 좋은 점을 지적을 했고 조금 전에 金達述선생께서 自主

國防 문제와 앞으로의 평화정착 문제를 연관시켰고 이와 관련해서 李長熙교수가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결국은 북한하고 우리가 協商하고 對話를 나눈다는 입장에서 북한이 政治軍事會談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요. 그것 아니면 안된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벽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돌파구를 열어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토론에 붙인 다음 吳寬治박사께서 답변하시고 이어서 플로어에 공개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주한미군 문제는 吳寬治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천년까지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여기에 남아 있을 성격의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루 아침에 뽑아갈 그런 성질의 것이니까 우리가 第3共和國때 처럼 미국을 血盟이라고 믿고만 있다가 우리가 난처해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며, 두번째 기왕 주한미군 또는 아까 河英善교수님이 말한 전술핵무기 문제를 미국과 협상한다면 이것은 2중, 3중으로 비용대 효과비면에서 더 써먹자 이것이에요.

말하자면 북한하고 군축문제를 제의할 때에도 이것을 우리가 미리 여기서 안을 짜가지고 북한에 투영시켰을 때 우리한테 오는 떡고물(fringe benefit)을 더 확보하자는 그것이고 다음에 세번째는 우리 국내의 합의형성에 있어서 하나의 최대공약수를 확보하면서 우리의 자주국방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힘의 과시에 있어서 최대공약수를 찾는 세가지 포인트에서 지금 우리가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理想主義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전술핵무

기는 이제는 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토마호크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에 배치되어 있는 戰術核武器는 조만간 이전되어 갈 것입니다.

미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갔고 이번에 몰타회담이나 또는 내년 봄에 美·蘇頂上會談에서 중요안건 중의 하나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바다의 軍備統制 (Maritime Arms Control)를 분명히 고르바초프로서는 제기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 美地上軍이 보유하고 있는 戰術核武器 문제는 미국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부담을 안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잘 인지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손을 써야 되는데 그럴려면 우리가 먼저 미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의 전폭적인 양해하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주한미군 문제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구라파에 있어서의 軍備統制와 軍縮問題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공군파트는 미·소의 영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보루가 남북 군축관계 협상을 해가지고 그것이 딜레마에 빠져 더 이상 움직임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FOFA> 전략에 의해서 북한의 후방을 동시에 가격할 수 있는 미 공군이 중요하기 때문에 空軍하고 地上軍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구획을 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 7월에 고르바초프안을 받아 가지고 부시가 공군기에 대한 감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구라파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는 아직은 이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는 차원을 남북의 평화체제를 굳히게 하고 마지막 보장으로서는 북

한이 나중에 응하지 않을 때에 마지막 보루로써 미공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지상군 문제하고 구별시켜야 하며 지상군 문제는 국민에게 이 문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國際秩序的 차원에서의 효과, 북한의 반응이라든가 우리 내부의 합의도출에서 3중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自主國防하고 연결이 되는데 自主國防이라는 것은 현재 이상의 병력수를 늘린다는 것은 남북이 공히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합리적 충분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북한에 제의하고 이를 수락하게 하려면 우리도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自主國防은 앞으로 質的 強化 문제로 가기 때문에, 질적 강화 문제는 고성능 무기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고도의 協商戰術을 미국에 대해서 발휘한다면, 이것을 기업의 논리에 맡겨가지고 하나의 軍產複合體로 전략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는 앞으로 韓·美·日 3國 安保協力 體制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은 미국의 기본정책에 입각해서 앞으로 점점 모습을 드러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90년대에 닥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北方外交 전개와 南北平和定着問題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한 시점에 정부에서 완전히 공식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韓·美·日 3角 安保協력을 우리가 생각한 적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세계에 대해서 공포해 버려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軍產複合體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본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되는 상황이 동북아

에서 전개될 것인데 이것이 우리 한반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스스로가 막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럴려면 역시 對美外交를 충실히 할 수밖에 없어요.

韓·美·日 安保協力 문제와 연결된 것이니까 그것이 네번째 포인트고 이러한 것을 전부 묶어 가지고 우리는 자주국방 문제와 연결시키되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에 대해서 필요이상의 반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우리로서는 백해무익이에요.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 능력은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술이 앞서 있어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실전에 배치하는 문제하고 핵무기 개발 잠정 능력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것을 구별하여 정부가 필요이상으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吳寬治박사님의 힘에 의한 군사력 균형, 힘에 의한 군사문제 해결이라는 이러한 발상은 90년대에 들어 가서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역시 우리 나름대로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金洛中 : 金達述 선생님이 말씀하신 美軍철수 문제와 자주국방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美軍을 포함하여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렇게 가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美軍이 철수를 할 적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군사력으로 강화 시키는 것에 의해서 균형을 되찾자 하는 식의 자주국방 노선으로 나가는 것하고 지금 현재 아직 美軍이 철수하지 않고 앞으로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속에서 美軍이 철수하는 그 병력수준 만큼을 북쪽하고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美軍이 철수하니까 너희의 어떤 것을 낮추라는 식

의 협상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金 惠 :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吳寬治선생님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세계의 변화, 東西關係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 이면서도 이것을 보다 유익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주한미군 문제도 포함이 되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포함이 되고 한데 이것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이 문제에 대한 吳寬治선생님의 견해를 정리를 해주십시오.

吳寬治 :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남북한간의 독자적인 군사력 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90년대말까지는 가능하다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느껴집니다.

단지 소련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련은 友好價格이라는 것으로 MiG-29같은 것을 천만불 이하로 주지 않느냐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印度한테 준 가격이 천만불이거든요. 또 지난 번에 소련 학자들이 왔을 적에 하는 얘기가 友好價格으로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國防費가 북한보다 우리가 많고 또 군사력 증강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우리가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또 북한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서 재래식 장비의 생산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거기다가 私企業體가 아니니까 費用計算이고 뭐고 전부다 무시하고 자기들은 생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불확실성이 없지는 않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천년대초까지는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1:1이라는 뜻이 아니라 북한이 短期速決戰을 할려고 했을 적

에 그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는 있다는 것으로서 그 말은 결코 1:1이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전에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거나 감축을 하게 되면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병산의 일각이고 그 뒤에 바다 물속에 숨어 있는 커다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서태평양, 하와이를 위시해서 서태평양에 배치된 모든 미군의 제1차적인 유사시 임무가 한반도의 지원입니다. 거기다가 軍需支援이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따지면 한 500억불에서 600억불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과거 2-3년 사이 금년까지도 포함해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을 보면 군사력 증강을 감소하는 기색이 없어요. 지금 전방에 배치돼 있는 步兵들을 機械化를 시킨다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攻勢的인 전력인데 이것이 經濟的으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도 실제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우리가 신임을 할 수 없이 행동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인지 실지로 어떤 다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평화방안을 내놓았으면서도 실지 행동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추측컨대 軍縮協商問題 측면에서 國防部가 좀 소극적이다라고 여러 분들께서 느끼는 것이 공통적인 인상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들은 실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하나도 이득이 없고 전혀 북한이 우리의 어떠한 제의에 대해서도 말로는 별소리를 다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가 독자적인 군사력을 가지고서 軍事力 均衡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힘을 가지면 그때는 우리가 좋은 협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것이지 전략적으로 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외에 아까 신뢰구축단계의 구분과 정치적 군사적신뢰구축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치적인 신뢰구축 조치는 남북한간의 합의만 되면 비교적 쉽게 짧은 기간 안에 된다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총칼을 서로 맞대고 있으면서 다른 이야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북한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그러면 저는 코르바초프가 하는 식으로 金日成이 먼저 減軍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군사적인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첫번째 움직임은 북한이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체 하지 않고 오히려 軍備增強을 하면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딜레마가 國防部측에는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司 會 : 梁榮植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梁榮植 : 본 세미나는 역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적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 발표된 내용과 특히 군사적인 신뢰구축 문제등의 군사부문의 발전적 과제를 연결시키는 문제를 더욱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統一方案은 국민앞에, 북한앞에 그리고 세계앞에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국내외에서 분명히 발전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통일방안은 “중간과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군사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룬다” 그리고 “중간과정에서 과도적 통일기구로서 「남북연합」을 둔다”는 내용이 새로운 두가지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나 비중을 놓고 볼 때 交流協力 우선주장이 종래와 같이 강조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인 군사문제는 아직도 소극적이라는 인상을拂拭할 수 없습니다.

군사문제 해결조치와 더불어 교류협력 또는 교류협력과 더불어 군사문제 해결이라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비판을 보면,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문제에 관한 언급은 休戰協定 체제를 平和協定 체제로 바꾼다,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의 통제를 실현한다는 當爲論의 언급밖에 없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정책적인 과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休戰協定을 누가, 어떤 내용으로 바꾸며, 현재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거론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립, 제시해야 됩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은 한국국민이 원하는 한 주한미군은 주둔한다는 정도로 당당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판인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주눅이 든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는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식의 소극성 발언으로 일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군사문제에 소극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거론하는 것은 으레 在野側하고 運動圈 학생들만이 주한미군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자주적인 양 선전을 독점해 왔으며, 최근에 와서야 학자들과 斯界專門家 사이에만 일부 이론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될 뿐이지 막상 정부의 통일방안에서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제시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확연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 것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의 統一 特委 公聽會에서 여야가 공히 지적했던 것이 군사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자 하는 것이 공통분모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한이 명칭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휴전협정을 白樂曙위

원이 지적한 것처럼 ‘不可侵協定’이든 ‘平和協定’이든 또는 ‘南北平和統一協定’으로 개칭하면서 그 내용은 공존과 상호인정, 주권존중, 교류협력, 休戰線의 平和交流線化 문제로 구성되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것을 南北頂上이 우선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頂上이 임명한 특명전권 대표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과제인 것인데, 지금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은 중간조치의 “민족공동체 헌장”을 합의하되 불가침 문제, 통일기본방향, 남북연합기구 구성을 포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순위, 시기의 전후관계등이 명확치 않으며 실현가능성과 현실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南北韓 閣僚會議의 軍事分科 常任委員會가 열리면 거기서 군사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체, 시기성의 개념이 엇갈려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中間 統一機構를 설치하는 것 이전 단계에 교류협력과 아울러서 정치·군사문제를 과감하게 협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정치적 문제의 속성을 지닌다고 봅니다.

적십자회담 자체도 사실상 정치적 損益計算이 깔려있고 실제 전략수립과 회담운영도 정부가 하는 것 아니예요? 모든 것이 정치적인 속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정부는 남북관계에 관한 한 본격적으로 정치·군사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남북한 高位當局者會談을 위한 예비회담을 보면 분명히 북측은 人民武力部 將軍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나왔고 대한민국은 국방부 소속의 현역장군이 나갔다 이것이에요.

휴전 이후 “북한측이 남한의 고위 군당국자와” 직접 대화한 것이 이번이 처

음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停戰委 會談에 나가는 한국군 장성은 발언권이 없으나 남북고위당국자 예비회담에서는 발언권과 실권을 가진 군사당국자들이 동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의 이중적인 대화 전략태세를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하고만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군사협상을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장성과 맞대고 텀스피리트 훈련을 시비하는 것 자체부터가 협상의 대상 문제에 새로운 접근 유형을 기록한 셈입니다.

그렇게 보면 남북한 정부당국이 南北聯合을 하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협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군사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남북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실질적인 보장체제가 수반된다는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전개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정상 회담을 촉구하면서 大統領이 이런 제안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남북 직통전화도 적십자 채널과는 별도로 남북한 최고당국자간의 直通電話를 가설 하자고 제의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한·미간의 협의 결정 사항으로 명백히 밝히고, 남북한간에 실질적으로 軍備統制, 그 다음에 軍備縮小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논리적 입장을 정립·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군축도 있고 자발적인 군축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軍備統制, 그보다 선결조치는 軍備統制를 위한 사전 군사확인 점검조치 및 동결조치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군사문제에 관한 한 북한이 일방통행적으로 또는 독점적으로 心理戰을 전개해 온 것에 썩기를 박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 군축을 위한 단계의 까다로움과 어려움은 실질적으로 남북한 군사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오박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검증이 아니겠어요? 軍備統制로 들어갈려면 현장조사·검증이 라는 엄청난 문제 즉 고슴도치 같은 북한의 요새화된 현장을 파헤치는 정보공개 문제가 나오며, 이 경우 북한이 불리하지 우리가 불리한 것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 통일방안의 중간 과정에 또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通行協定 체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번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전개하는 가운데 북한을 “국가적인 존재”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매우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法的 規定이 애매하다 보니까 어휘까지도 애매하게 구사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政府의 발표에 의하면,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관련, 남북한간에 ‘通行合議書’를 마련하여 왕래를 실현하자고 표명했습니다. 왜 ‘通行協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南北韓 通行合議書’라고 그랬어요?

통행협정이면 협정이고 또 조약이면 조약이지 통행합의서라는 어정쩡한 어휘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남북한이 상호승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행여나 국가승인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우려 때문에 애매한 어휘를 구사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 냅니다. 정부는 통행합의서라고 하는데 신문에는 통행협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런 문제에서 남북한 관계의 법적 정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 제3국과의 관계는 국제법상 主權國家의 관계이지만, 남북한 상호관계는 민족 내의 2개의 特殊國家的 실체인 정부간의 관계라는 입장에 선다면, 굳이 협정이나 조약이란 어휘를 사용 못할 이유가 없으며 “특수국가”라는 개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이유가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西獨의 “部分秩序理論”을 상기하면 될 것입니다. 헌법상 해석의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겠지요.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立憲民主主義國家로 모든 통치행위는 법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민주적인 질서이지 애매한 것은 “통치권의 행사”로 처리한다면 統治權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큼니다.

문목사 사건은 법으로 처리하고 정주영회장의 訪北은 통치권의 행사로 처리하는 편의주의적 조치보다는 명확한 법적 후속조치와 제도화가 필수적입니다. 남북한이 앞으로 불가침 협정이나 基本條約 또는 通行協定을 맺는 것도 통치권의 행사로 논할 수 없으며 분명히 通行協定이라든지 남북한의 기본협정 같은 것이 나오면 국회에 비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남북한 관계의 법적 시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승인하는 것은 국제법상 국가 승인이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主權國家로서 그것은 분명히 自律權을 갖는다 하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부르고 저쪽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 부르는 것은 민족내부의 特殊國家的 실체로서 분명히 대등한 政權間의 협상이요, 대화 주체를 상징하는 것이며,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해설책자에 보면, ‘지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서독의 지붕이론(Dach Theorie)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단국에서 分斷國 特殊法理論을 개발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독일하고 다르다고 자꾸 이리저리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피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상 해설책자 내용을 음미해 보면, 남북한의 중간과정에서 나오는 남북 연합은 대외적으로는 國家聯合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라고 해설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했다고 봅니다.

南北聯合은 국가간의 결합인 “국가연합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해놓으니까 지금 혼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반 국제법상에 없는 분단국형의 특수국가 연합적인 모형”이라고 했으면 어떨까요.

지금 平民黨이나 民主黨이나 在野 쪽에서도 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국가연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호의적으로 좋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왜 하필이면 “國家聯合도 아니다, 또한 聯邦도 아니다”라고 할 필요가 있었는가 재음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단계의 국가형태는 單邦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는데, 장차 이는 북한측의 羊頭狗肉의 연방제방안을 일반 국제법상의 聯邦制의 성격 내용으로 변환할 때에는 單邦과 聯邦을 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적인 남북연합 단계를 거치면 최종단계에 가서는 單邦도 聯邦도 검토될 수 있다고 해야 이것이 협상에도 유리하고 또 실효력도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회를 국민의 여론 수렴을 위한 가장 중요한 中樞機關으로 본다면, 統一對話의 過程을 국회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과 각계 사회단체가 衆口難防式 논의를 하기 보다는 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정부와 국회간에 주기적 또는 필요시 협의, 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室局長級과 국회 常任委員이나 연구소 專門家들간에, 그리고 외무통일위원들과의 모임, 각 정당의 평화통일위원장과 정책위 의장의 모임도 있어야 돼요. 또한 大統領께서도 각당의 黨首들과 오찬 간담회등을 통해 통일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면 딱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또 우리 統一院 입장에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의 월례 토론회라고 그럴까 토론의 광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과제이고, 그 다음에 통일상담실 같은 것을 統一院과 赤十字社에 설치해서 통일문제, 이산가족문제, 남북왕래, 협력문제 등에 관해 국민들이 문의를 하고 안내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金 惠 :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의 어떤 통일된 결론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견해를 노출시키고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임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차원에서도 오늘 우리 회의의 성과는 굉장히 컸다고 평가됩니다.

무엇이 컸느냐? 우선 얘기하는 가운데 여태까지 統一院이나 여기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새로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중대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의 硬直性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軍事問題 같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측의 군사, 정치문제 해결 주장을 수용하기 시작한 것이 별로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아

주 까다로운 軍事問題에 있어서도 차츰 우리가 종래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의 경직성이 흡수되어 간다는 그런 성과를 크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자체가 다른 자리에서는 불가능한 모임을 우리가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각당에 소속해서 政策問題를 연구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학계에 있는 사람들, 각계각층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모색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로 생각합니다.

張明奉 : 제가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오늘 헌법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金明基교수께서 統一憲法 초안과 관련해서 몇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明基교수께서 우리 정통성을 부인하는 헌법은 만들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統一憲法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金明基교수께서 우리 체제를 양보하는 헌법은 또한 만들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통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시각의 차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法解釋을 하는데 있어서, 즉 분단국인 우리 헌법을 해석한다든지 다른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저는 두가지 차원에 입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統一指向的인 차원에 입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民族的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의 헌법가지고도 統一政策의 실제와 늘 모순된다고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법해석론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는 아다시피 제3조에 영토조항을 제헌헌법 때부터 두고 있고, 제4조에 平和統一을 지향한다는 조항을 6共和國憲法에서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은 大統領에게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여했고(제66조 3항), 大統領은 취임선서 할 때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大統領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69조). 우리 헌법이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이념을 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 헌법이 暫定性을 내포한 헌법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金明基교수님은 暫定性을 인정하는 개정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헌법을 해석하는 시각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 그 자체를 헌법이념으로 하고 있고, 또 6공화국의 통일정책의 하나의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은 벌써 暫定性을 인정하고 들어간 헌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영토조항 제3조와 평화통일조항 제4조간의 같은 헌법규범간에도 相衝이 됩니다. 그런 상충되는 규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할 때, 우리가 오늘의 역사적 단계에서 본다면 역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고 민족의 염원이므로 우리의 통일의 이념과 가치의 면에서 평화통일조항이 領土條項에 우선하는 것이요, 즉,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헌법규범의 段階構造論이라고 하는 헌법이론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통일정책의 실제하고, 즉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하고 領土條項이 늘 상충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領土條項은 40여년전에 만들어졌고, 48년 제헌헌법 이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토조항의 오늘날의

의미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면, 그것을 제 생각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선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영토범위를 선언한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냉전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과거처럼 분단을 고착화하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헌법이기에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의 선언적 규정으로 領土條項을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해석이 곤란하다면, 이를테면 일본 헌법 제9조처럼, 일본은 이른바 평화조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9조의 헌법규범의 의미·내용이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많이 달라졌음을 뜻합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의 영토조항의 실질적 의미·내용이 변화했음을 볼 때 그것을 憲法變遷으로 본다면 그런 抵觸問題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요컨대 헌법 개정을 통한 立法論的 해결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법론으로 해결하지 말고 헌법해석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梁 建 : 그런데 지금 張明奉교수님의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법의 3조하고 4조가 相衝이 됩니다.

평화통일하겠다 하는 것하고 북한지역도 한국의 영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순이 되는데 영토조항에 근거한 법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國家保安法입니다.

반면에 평화통일조항에 근거한 법률은 아니고 정책적인 것이 여러가지가 나

와 있어요. 7·7선언, 통일방안, 남북교류협력지침, 그것을 하나의 정책차원에서 4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상 영토조항이 일본 헌법 9조처럼 이미 변질이 됐다라고 해석하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國家保安法이 없어져야 됩니다. 國家保安法이 있는 한은 영토조항은 살아 있는 징표가 됩니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7·7선언에 부합되도록 할려면 그것의 후속조치로서 國家保安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순리거든요. 그래야 통일정책의 일관성과 계속성은 유지하게 되고 적극적 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때문에 통일정책의 추진이 위축되는 것은 그것은 統一指向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해석을 법학자 입장에서는 보다 統一指向的인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통일방안은 내용을 필요가 없죠.

金 惠 : 법해석의 문제는 숙제로 남겨두고 申鉉奇선생님께서 1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申鉉奇 : 헌법 3조, 4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할 주문으로 이 문제를 넘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당시 平民黨하고 民主黨이 갈라서기 전 헌법개정 작업을 할 때 그 당시에 3조, 4조를 어떻게 하느냐, 한시적으로 하느냐, 3조같은 영토조항을 존치하느냐 하는 문제를 3일, 4일을 두고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정치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유보했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학계에서 앞으로 제기를 해주셔야 될 문제일 것 입니다. 政治圈에만 맡겨 놔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東歐의 변화라는 것이 불과 6개월전에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역사적 현상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동구의 변화라는 것을 불과 몇 개월전만해도 예견하지 못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공산주의가 유럽쪽하고는 社會的, 歷史的 背景이 다르다고 하지만, 북한도 어떤 형태로 어떤 변화가 우리가 예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한꺼번에 통일적 문제를 제기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우리가 굳게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쪽에도 앞으로 統一研究所를 만든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統一憲法研究所 그런 식으로 되도록 저희도 건의를 드려서 통일문제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하나하나 착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민족통일의 새지평을 여는 훌륭한 계기가 되도록 다같이 분발합시다.

주관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金 惠 : 감사합니다.

신선생님의 말씀이 좋은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말에 絕處逢生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 사방이 꼭 막혔다고 생각할 때에 구멍이 뚫리거든요. 통일문제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前兆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좋은 연구과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理念과 實踐

1990년 3월 10일 인쇄

1990년 3월 30일 발행

발행 국토통일원 통일정책실
전화 : 720-2147

인쇄 휘문인쇄주식회사
전화 : 734-2523

국통정 90-3-26

〈비매품〉

